



# 적십자 표장 사용 지침

번역발간: 대한적십자사 



I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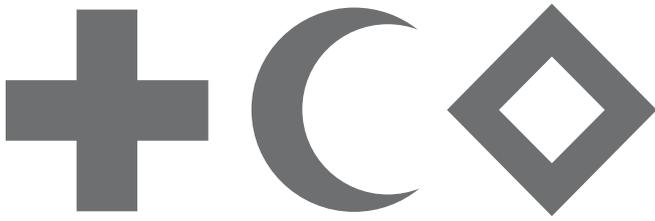
- 번역발간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www.redcross.or.kr/ihl)
- 초판발행 : 2013. 12. 1 (국문본)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 avenue de la Paix  
1202 Geneva, Switzerland  
T + 41 22 734 60 01 F + 41 22 733 20 57  
E-mail: shop@icrc.org icrc.org  
© ICRC

Front cover: Distinctive emblem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적십자 표장 사용 지침



# 목차

<b>서문</b>	<b>8</b>
<b>용어정리</b>	<b>10</b>
<b>서론</b>	<b>14</b>
연구목적과 방법	14
일반원칙과 개념	19
<b>제1부</b>	
<b>표장사용에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b>	<b>29</b>
<b>A. 국가당국에 의한 사용</b>	<b>31</b>
1. 무력충돌 당사국의 군 의무대가 일시적으로 표장을 변경할 수 있는가?	31
2. 국가의 군 의무대가 적십자/적신월 “이중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35
3. 승인된 두 가지 표장을 연합군 참가국들의 군 의무대가 공유하는 장소나 수송수단에 함께 게시할 수 있는가?	38
4. 전투인명구조원(CLS)은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	40
5. 표장사용 권한이 부여된 군 의무요원 및 의무대, 의무차량이 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가?	44
6. 보호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권한은 누가 가지는가? 이와 관련해 각국 적십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51
7. 점령지역에서 표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 점령국의 군 의무대에 의해? - 피점령국의 민간병원(및 그 직원), 민간 의무대, 의무요원 및 의무차량에 의해?	55
8. 민간병원과 의무대는 평시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59
9.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품에 표장을 부착할 수 있는가?	66
10. 국가는 백색바탕 위에 공인된 식별표장이 포함된 국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68

## B. 각국 적십자사에 의한 사용 71

11. 각국 적십자사는 (보호 또는 표시적 사용을 위해)  
임시로 표장을 변경할 수 있는가? 71
12. 각국 적십자사는 “이중표장”(예: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을  
나란히 사용)을 표시 또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74
13. 두 가지 다른 공인표장을 각국 적십자사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장소와 수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가? 78
14. 어떠한 조건에서 각국의 적십자사는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80
15. 각국 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 당국의 명시적 승인 없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87
16. 각국 적십자사 직원(요원)들의 활동 중, 즉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을 위해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91
17. 각국 적십자사 의무요원이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즉 보호표장을 사용할 자격이 있을 때  
이들은 적십자사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94
18. 각국 적십자사는 대형 표시표장(적십자사 로고)을  
사용할 수 있는가? 97
19. 각국 적십자사는 그 직원(요원)이 1949년 제네바제1협약  
제26조의 범위를 벗어난 정부의 대외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할 때 적십자사의 로고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가? 102
20. 적십자사가 UN이나 기타 외부 파트너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을 때 적십자사는 표장/로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105
21. 자국의 영토 내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참여 적십자사의  
표장/적십자사 로고의 사용에 관한 해당 적십자사의  
역할을 무엇인가? 111
22.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구호품에 적십자사 로고(또는 표장)를  
붙일 수 있는가? 117
23. 각국 적십자사는 어떤 상황에서 표장과 국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가? 120

## C. ICRC에 의한 사용 125

24. 어떤 상황에서 ICRC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건하에 ICRC는  
- 모든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 적신월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125
- 25. 적십자사 표장과 ICRC 로고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ICRC 표장과 로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130
- 26. ICRC가 무장보호에 의존할 때는 어떻게 표장을 사용하는가? 133

**D. 다른 주체에 의한 사용 135**

- 27. 국제기구(예: UN,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NATO)가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135
- 28. 무장집단의 의무대가 비국제적 무력충돌 중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140
- 29. 국군의 의무대나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요소 외의 개체, 특히 비정부기관(NGO)이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표시하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143
- 30. 민간군사 및 보안기업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150
- 31. 1949년 제네바제1협약의 제44조 제4단락에 따른 제3자 구급차와 응급처치시설에서의 표장의 사용: 각국 적십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156

**제2부**

**표장 사용에 대한 상업적 및 기타 운영외적 쟁점에 관한 권고사항**

**A. 국가당국에 의한 사용 163**

- 32. 1968년 11월 8일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유엔협약과 해당 협약을 보충하기 위한 1971년 5월 1일 유럽협정은 적십자 표장 사용 규칙과 양립할 수 있는가? 163

**B. 각국 적십자사에 의한 사용 171**

- 33. 대중을 대상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표장 및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가? 171
- 34. 각국 적십자사는 파트너 기업이 배포 및 판매하는 제품이나 광고에 표장 및 각국 적십자사 로고를 표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가? 174
- 35. 각국 적십자사는
  - 파트너 기업의 이름/로고를 적십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가?

- 각국 적십자사는 자사 표장과 로고를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가? 177
- 36. 각국 적십자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그 수익이나  
기금이 각국 적십자사에 사용되는, 각국 적십자사의  
무역회사나 기타 법인이 각국 적십자사의  
표장/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182
- 37. 후원: 스포츠팀/선수 홍보 및/또는 기금모금  
목적에 위해 각국 적십자사의 표장/로고를 어느 정도로  
게시할 수 있는가? 어떤 계약이 가능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187
- 38. 각국 적십자사의 간행물 표지에는 어떤 표장과 로고를  
어떤 방식으로 게시해야 하는가? 192
- 39. 각국 적십자사는 문서서식(레터헤드)에 어떤 표장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194

### **C. ICRC에 의한 사용** 199

- 40.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 관련 간행물에 어떤 표장을  
게시해야 하는가? 199
- 41. ICRC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명칭과 로고,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201

### **D. 다른 주체에 의한 사용** 209

- 42. 이미 각국 적십자사가 공인된 국가에서 “적십자사”,  
“적신월사” 또는 “적수정사”로 등록된 NGO나  
민간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09
- 43. “자발적 기금모금자”는 적십자 표장/각국 적십자사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219

## 제3부

### 표장 오남용 방지와 중단을 위한 권고사항 223

#### **A. 국가의 의무** 225

- 44. 국가는 어떤 법률적, 규제적, 실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25
- 45.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 보급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가? 231

<b>B. 각국 적십자사의 역할</b>	<b>235</b>
46. 표장사용과 관련하여 각국 적십자사의 임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235
<b>C. ICRC의 역할</b>	<b>245</b>
47. 표장사용과 관련하여 ICRC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245
48. ICRC는 주관기관으로 활약할 때 세비아합의서에 따라 표장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맡는가?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51
<b>D. 특수한 사안</b>	<b>255</b>
49.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표장이나 그 명칭에 대한 “모방”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55
50. 인터넷 상에서의 표장과 명칭 오용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259
51. 표장 오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용의 방지/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표장보호 캠페인”의 교훈은?	264

## 서문

백색 바탕에 적십자가 표시된 표장은 지난 150년 가까이 무력충돌 상황에서 병자와 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원조와 보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아 왔다. 오늘날 이 붉은 십자 표지는 붉은 초승달 표지와 함께 인도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시기마다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이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행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평한 활동들까지도 상징하게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적십자 표장에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정체성과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적십자와 적신월 그리고 새로 제정된 적수정 등, 이들 표장이 지닌 목적과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표장의 사용을 규제하고 이들 표장이 언제나 변함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관한 포괄적 개발이 요구되었다.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이를 보완해 1977년과 2005년에 채택한 추가의정서들에 따르면 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신변보호 수단으로 이들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인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역시 신원확인 수단으로 이들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충돌 상황에서 고유한 표장을 통해 부상자와 병자 및 그들에 원조와 구호를 제공하는 요원을 보호하는 일은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모든 교전국은 이들 표장을 보호하는 국제법 규범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 점이 전장에서의 고통을 줄이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보내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날 이들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 체제는 전적으로 IHL에 담겨 있으며, 각국가 및 그 군대는 우선적으로 이를 존중하고 시행할 책임을 지닌다. 이들 표장을 사용할 자격을 갖는 ICRC와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그 활동을 통해 국가가 항상 표장을 적절히 사용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누리는 표장사용 권리에는 표장의 사용과 게시에 있어서 표장의 보호적 가치와 상징적 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도 따른다.

ICRC는 2001년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적십자운동 전략’상의 요청에 따라, 전시든 평시든 국제적십자운동의 표장을 더욱 존중하고 특히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유지,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ICRC는 전세계의 정부 및 군사 전문가, 그리고 각국 적십자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그 연구 성과가 “표장사용과 관련된 운영적, 상업적, 기타 비운영적 사안들에 관한 ICRC의 연구(표장연구)”에 담기게 되었다.

본 표장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다만, IHL 관련협정과 국제적십자운동 관련규정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와 기타 단체 또는 국제적십자운동 내부에서 표장사용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까다로운 문제와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논의하려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표장연구는 2007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되고, 2009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에 최종보고서가 보고되고, 참가대표들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전세계 각국 적십자사에 이 연구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ICRC는 본 연구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뿐 아니라 각 정부당국, 군과 그밖의 무기소지단체, 그리고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관련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값진 도구이자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력충돌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부상자와 병자를 보호하고 전쟁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가는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ICRC는 이 표장연구를 통해 표장사용 관련 규정과 표장의 보호적 의미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ICRC

국제법 및 대외협력국 국장 필립 스포에리

## 용어정리

1907 Hague Regulations	1907 헤이그법	육전 관련 법규 및 관습에 관한 규정 (육전 관련 법과 관습을 다룬 1907년 10월 18일 헤이그 제4협약의 부록).
1991 Emblem Regulations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각국 적십자사의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표장 사용 관련 규칙.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비엔나, 1965)에서 채택되고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부다페스트, 1991)서 개정됨.
2003 Minimum Elements	2003년 최소요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과 외부 활동체휴 단체간의 운영상 합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요건.” 2003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결의 제10호에 첨부됨.
AP I	제1추가의정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1977년 6월 8일 채택.
AP II	제2추가의정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1977년 6월 8일 채택.
AP III	제3추가의정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새로운 고유 표장 도입에 관한 의정서(제3의정서), 2005년 12월 8일 채택.
APs (AP I, AP II and AP III)	추가의정서	제1추가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및 제3추가의정서.
CCTLDs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s)	국가 최상위 도메인	
CLS (Combat Lifesavers)	전투인명구조원	
Commentary on AP I and II	추가의정서 해설	이브 산도즈, 크리스토프 스위나스키, 브루노 짐머만,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6월 8일자 추가의정서 해설>, ICRC, 제네바, 1987.

Commentary on AP III	제3추가 의정서 해설	장 프랑수아 쾨기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새로운 식별표장 도입에 관한 의정서(제3의정서) 해설”, <국제적십자논평>, 제865호, 2007년 3월, pp. 175~207
Commentary on GC I	제1제네바협약 해설	장 픽테(편), <제네바제1협약 해설>, ICRC, 제네바, 1952
Commentary on GC II	제2제네바협약 해설	장 픽테(편), <제네바제2협약 해설>, ICRC, 제네바, 1960
Commentary on GC III	제3제네바협약 해설	장 픽테(편), <제네바제3협약 해설>, ICRC, 제네바, 1960
Commentary on GC IV	제4제네바협약 해설	장 픽테(편), <제네바제4협약 해설>, ICRC, 제네바, 1958
Customary IHL Study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캐롤라인 앨버만, 크누트 도만, 뱀티스트 룰 (기고), 장 마리 행케르츠, 루이즈 도스월트 백 (공저), <관습국제인도법 제1권: 규칙>, 케임브리지대출판부, 케임브리지, 2005
CSG (Corporate Support Group)	기업지원단	
ECHO (European Union's Humanitarian Aid Office)	유럽연합 인도적지원사무국	
GC I	제네바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1협약).
GC II	제네바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2협약).
GC III	제네바 제3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GC IV	제네바 제4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4협약).
GCs (GC I, GC II, GC III and GC IV)	제네바협약	제네바제1협약~제4협약협약
GTLDs (Global Top Level Domains)	일반 최상위도메인	
IAC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국제적 무력충돌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도메인관리 기구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Federa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IO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 기구	
IRRC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논평	
Movement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국제적십자운동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NIAC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s))	비국제적 무력충돌	

NS (National Society/ National Societies)	각국 적십자사	
ONS (Operating National Societies)	무력충돌 당사국 적십자사	
PNS (Participating National Societies)	무력충돌 참가국 적십자사	
Secretary-General's Bulletin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the Observanc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사무총장고시	UN군의 국제인도법 준수에 관한 사무총장고시 1999년 8월 6일, UN 자료 ST/SGB/1999/13.
Seville Agreement	세비아합의서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세비아, 1997년 11월 25~27일)에서 채택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국제 활동 조직에 관한 합의(세비아 합의서).
Statutes of the Movement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5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제네바, 1986년 10월)에서 채택되고, 제26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제네바, 1995년 12월) 및 제29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제네바, 2006년 6월)에서 개정된 국제적십자운동 정관.
UN (United Nations Organization)	국제연합기구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난민고등판무관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청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 서론

### 연구목적과 방법

표장사용과 관련된 운영적, 상업적, 기타 비운영적 사안들에 관해 다룬 연구인 표장연구(Emblem Study)는 ICRC가 작성하였다. 표장연구는 2007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되고 2009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에 최종보고서로 전달되었다.

본 문서에 사용하는 “표장”이라는 용어는 1949년의 제네바협약들 및 1977년과 2005년에 채택된 추가의정서들을 통해 승인된 모든 종류의 식별표장, 즉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sup>1</sup> 및 적수정을 포함한다.<sup>2</sup>

### 연구의 틀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전략<sup>3</sup>(국제적십자운동전략)에는 ICRC에 표장의 사용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제적십자운동전략 개정본의 행동강령 No.10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ICRC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국 및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운영상 및 상업상의 문제들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 착수한다.”

본 문서는 ICRC가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의 요청에 부응하여 생산한 결과이다.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정체성이 그 표장과 분명히 연결되는 점에 주목하며 적십자운동 수행 및 IHL에 대한 일반적 존중 확보를 위해 언제나 표장사용 문제를 주요 과제로 여겨왔다. ICRC는 2005년 AP III 채택이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기며, 나아가 본 연구 결과의 보급 및 그 영향력과 유용성 제고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연구의 목적과 대상

ICRC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표장사용과 관련해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 및 또는 가장 빈발하는 쟁점들을 연구

1 적사자태양은 1980년 9월 4일, 이란이슬람공화국이 자국의 식별표장으로 적사자태양 대신 적신월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는 쓰이지 않고 있다.

2 표장연구는 IHL에 의해 승인된 다른 표지 및 표장(문화계와 관련한 고유 표장, 민방위와 관련한 국제적 고유 표지, 위험한 과과력을 지니고 있는 건조물과 시설에 관련한 국제적 특별 표지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3 국제적십자운동 전략은 2001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의 결의 제3호,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전략”을 통해 채택되었다. 이는 또 2005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의 결의 제6호,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전략 및 부속서”를 통해 개정되었다.

하되, 각국 적십자사, ICRC 및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단, 그리고 각 정부당국과 개인으로부터 접수한 포괄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한다.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특히 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상업적 문제들을 다룬 부분에 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며, 기존 규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설명한다.
- 특히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에 제시된 의무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 전체가 그 소속요원 및 피고용인과 공공 및 민간 활동가들에게, 올바른 표장사용 규정과 오용사례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한다.
- 공인된 표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십자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견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도구를 개발한다.
- 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다수 규정과 그와 관련해 IHL상 요구되는 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각 정부당국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 특정대상과 일반대중에게 표장사용 관련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도구 개발의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표장 및 그 사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각계각층이 언제나 표장을 존중하도록 하고 특히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본 연구에는 표장의 오용 사례에 대처하는 절차와 표장의 적절한 사용원칙을 다룬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고 경감한다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임무와 일맥상통한다.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반드시 희생자 및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무력충돌 상황에서라면 관계당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들의 보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구성원의 접근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이 된다. 어느 때라도 표장을 오남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일반대중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무력충돌 당사자들 가운데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상황은 구성원이 지녔던 신뢰감을 해치고,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에 대한 접근가능성뿐 아니라 구성원 자신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표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표장의 오용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십자운동 업무 전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표장연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표장 오용 사례들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뿌리뽑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표장의 오용은 군 의무대가 돕고 보호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게 된다.

4 2001년 국제적십자운동전략은 본 연구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전시는 평시든 사회 각계각층이 표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혼동이나 잘못된 기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기억해 둘 것을 당부한다.

- 본 연구의 취지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일부 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동 규정은 이미 1949년 제네바협약에 관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방대한 해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의 제4단락에서 밝히고 있듯, “이 개정본에 허용된 범위는 제네바 협약의 테두리 내에 있다.”
- 본 연구의 취지는 AP III를 해설하는 것이 아니다. AP III의 일부 내용이 본 연구에 제시된 권고사항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관련 정도에 따라 AP III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P III에 대한 별도의 해설은 이미 집필되어있다.<sup>5</sup>

## 연구방법 및 절차

국제적십자운동전략에서 요청한 대로 표장연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NS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다.

2006년 3월, 국제적십자사연맹과 30여 NS 회원국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그룹이 구성되었다. 이 그룹은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논의할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이후의 원고작성 단계들을 통해 매우 귀중하고 통찰력있는 의견과 제안을 제공해 주었다. 전문가들은 그 밖에도 예비분석 보고서 일부를 작성하고, 이 연구의 권고사항들 중 일부를 직접 집필하기도 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NS로부터 피드백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ICRC가 주최한 NS 법률자문단 연례회의와 유럽법률지원단체 회의 및 유럽공공지원단체 회의 등)가 있을 때마다 이를 십분 활용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표장연구의 1차 초안은 2007년 11월에 개최된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국제적십자운동전략 결의 제7호를 통해 대표자회의는

“표장사용과 관련된 운영적, 상업적, 기타 비운영적 사안들에 관한 ICRC의 연구(표장연구)를 환영하고, 표장의 사용에 관한 기존 규정, 특히 1949년 제네바협약과 그에 따른 추가의정서 및 각국 적십자사의 표장사용에 관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유효함을 재확인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한 존중이 표장의 보호적 가치 및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인도주의 활동이라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sup>5</sup> 장 프랑수아 케기네의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새로운 식별표장 도입에 관한 의정서(제3의정서) 해설”, <국제적십자논평>, 2007년 3월, 제865호, pp. 175~207 참조.

(…)

7.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에 대해 표장연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활용하고, 표장사용에 관한 규정들을 보다 확실히 이행하며, 표장연구의 내용과 활용에 관한 피드백을 ICRC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8. ICRC에 대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참고하고 각 회원국과의 협의를 더욱 활발히 수행하는 가운데 표장연구 관련 업무를 지속해 갈 것과,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 회의에 그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각주 생략)

결의 제7호에 규정된 지시사항을 근거로, ICRC는 2008년과 2009년에 추가 협의를 수행하였다. 특별히 2008년 5월 30일에는 의견수렴을 위해 전 세계 국가와 모든 NS 및 국제적십자사연맹에(몇가지 질문을 수정 또는 추가한) 표장연구를 보내 회람하도록 하였다.<sup>6</sup> 각 국가와 협의에 나서게 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표장사용 규칙을 명시하고 채택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 국가, 특히 국가의 군 의무요원은 (IHL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표장의 주된 사용자이며, 표장연구에서 다루는 대다수 문제는 국가의 표장사용에 관한 것이다.
- 표장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NS가 전달한 피드백에는 표장연구와 관련해 매우 광범위한 사안과 질문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주로 언급된 내용은 NS의 모금활동(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NS의 로고 사용문제 등) 및 홍보활동(NS 로고를 NS의 물품이나 구내에 사용하는 문제 등) 시 표장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ICRC는 2009년 2월 23일 제네바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논의하였다. NS 고위 대표들 및 국제적십자사연맹과 ICRC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표장연구에 관해, 그리고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주요 활동인 홍보 및 모금에 관해 매우 유익한 대화의 장이 되었다.

워크숍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할 뿐 아니라 특히 국가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표장/로고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브랜드/정체성”의 일부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미지

6 2007년에 이미 IHL 이행을 위한 각국 부처간위원회를 통해 각국과의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IHL 이행을 위한 각국 부처간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IHL을 이행하고 이 법을 준수, 개발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안을 홍보, 자문,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같은 조직은 대개 NS 대표들뿐 아니라 IHL 관련 전체 정부부처와 사법부 및 입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브랜드를 강화하고 제고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표장사용에 관한 기존의 법률적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표장연구와는 별도로, 앞으로 2, 3년 내에, 국제적십자운동의 “가치”와 인식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반으로 “국제적십자운동의 브랜드/정체성”을 개발, 홍보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 관한 각국의 피드백에 힘입어 이루어졌음을 밝혀 둔다. 피드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과 쌍방간 논의를 거친 후 2009년 6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한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따라서 표장연구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과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 제시된 권고사항들에 관한 최종적 책임은 ICRC에 있다.

## 연구의 구성

### 목차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운영적 맥락에서 표장을 사용할 때 적법하고 허용가능한, 또는 권장할 만한 경우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제2부**에서는 표장사용과 관련된 상업적(및 기타 비운영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주체와 관련한 표장사용 문제들을 다룬다.

- 정부당국에 의한 사용
- NS에 의한 사용
- ICRC에 의한 사용
- 기타 활동주체에 의한 사용

**제3부**에서는 표장의 오용을 방지 또는 중단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주체(국가, NS, ICRC 등)가 맡아야 할 의무와 역할을 제시한다. 제3부의 주요 목표는 표장이 오용된 경우에 해야 할 일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할 일에 대해,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 질문을 다루는 형식

과약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법한/허용가능한 상황, 또는 필요시 표장의 특정한 오용사례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모든 질문은 아래 순서에 따라 다룬다.

-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법령적 근거
-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
- 제시된 권고사항의 근거가 되는 분석

## 일반원칙과 개념

이 서론 부분의 목적은 표장에 관한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표장사용과 관련된 몇몇 일반개념과 원칙을 밝히는 데 있다.

이들 개념과 원칙은 본 연구 전반을 통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설명을 반복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서론에 포함시키는 편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I. 표장의 역사와 디자인

1859년, 북부 이탈리아 지방을 지나던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전투가 남기고 간 처참한 광경들을 목격했다. 제네바로 돌아온 그는 <솔페리노의 회상>에서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보고한 뒤, 목격한 처참한 전장현장의 묘사와 함께, 전쟁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 전시의 희생자를 돌볼 수 있도록 평시 각국에 자원봉사 단체를 창설한다.
- 각국을 설득하여 전장의 자원봉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호개념을 인정하게 한다.

그의 첫 번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사 창설로 이어졌다. 2013년 5월 현재, 국제적십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적십자사는 모두 187개이다. 그의 두 번째 제안은 1864년에 제네바협약 초안의 기틀을 다졌으며 1949년 4개 제네바협약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제네바협약은 오늘날 전세계 194개국이 수락하였다.

IHL에 따라 군 의무요원과 자원봉사 구호자, 그리고 무력충돌의 희생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의미하게 될 하나의 식별표지를 채택한다는 것이 1863년 2월 17일 앙리 뒤낭의 제안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5인 위원회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 모임이 훗날 국제

적십자위원회로 성장한다. 나중에 표장이라 불리게 된 이 표지는 단순하고, 멀리서도 알아 보기 쉬우며, 누구나 알고 있는 형태이면서, 아군과 적군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했다.

1864년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회의는 스위스 국기의 색깔을 거꾸로 하여 백색 바탕에 적 십자를 문장 표시로 채택하였다.<sup>7</sup>

1876년에서 1878년까지 계속된 러시아와 터키간의 전쟁에서 오트만제국은 자국의 표장으로 적 십자 대신 적색 초승달 형태를 사용할 것을 선포하고, 상대국 표장인 적십자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페르시아 역시 또 다른 표지, 즉 적사자태양을 선택했다. 1929년 외교회의에서 백색 바탕에 적색 초승달 및 백색 바탕에 적사자태양이 각각 표장으로서 공식 승인을 얻었다.<sup>8</sup> 1980년 이란이슬람공화국이 자국의 군 의무대를 위한 식별표장으로 적신월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적사자태양은 쓰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력충돌의 희생자와 군 의무요원 및 인도적 봉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십자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AP III를 채택한 2005년 외교회의는 백색 바탕에 적색 수평을 또 하나의 식별표장으로 승인하였다. 적수평은 “백색바탕에 모서리로 세워진 사각형의 적색 틀”의 형태를 취한다(AP III 제2조). “적수평”이라는 명칭은 AP III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2006년 6월 제2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수정안”에 따른 결의 제1호와 그 부속서가 채택됨으로써(제2단락)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 II. 표장사용에 관한 주요 원칙들

표장(적십자, 적신월, 적수평 표장의 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주요 원칙들은 아래 문서에 제시되고 있다.

- GC I 제38~44조, 제53조와 제54조
- GC II 제41~45조
- GC IV 제18~22조
- AP I 제8조, 제18조, 제38조, 제85조 및 제1부속서
- AP II 제12조

7 GC I 제53조 제2단락은 “스위스 연방의 국기의 배색을 반대로 작성한 문장의 채용에 의하여 동국에 대하여 경의를 표했다”고 언급한다.

8 1929년에 채택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대한 제네바협약 제19조에서 이 두 표장을 승인했고, 이어 GC I 제38조 제2단락이 이를 확인하였다. 적사자태양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및 권고사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연히 표장사용에 관한 규정(과 본 연구의 권고사항)은 다른 표장에서처럼 적사자태양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다.

- AP III 제1~7조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엄밀히 말해 이 규정은 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하기로 서약한 NS와 ICRC,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sup>9</sup>

### III.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

표장은 IHL의 효력에 의해, 무력충돌로 인해 고통받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인도적 구호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지로서 한 세기를 넘어 존재해 왔다.

또한 표장은 국제적십자운동 및 그 구성원의 중립, 독립, 공평을 상징한다.

따라서 표장은 아래와 같이 판이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 보호수단
- 표시수단

표장의 두 가지 사용을 구별하는 법적 근거는 GC I 제44조, 제1~2단락에 나타나 있다.

“본조의 다음 각 단락에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색 바탕의 적십자 표장 및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라는 말은,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유사한 사항을 정하는 다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대 및 기관, 요원 및 물자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제2단락에서 말하는 표장[백색 바탕의 적신월 및 적사자태양]에 관해서도 그것들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국 적십자사 및 제26조에서 지칭하는 기타의 단체는 이 협약의 보호를 부여하는 식별표장을 본 단락의 범위내에서만 사용권리를 가진다.

또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태양사)는, 평시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하는 원칙에 합치하는 자신의 기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활동이 전시에 행하여질 때에는, 표장은 그 사용에 의하여 이 협약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인정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 표장은 비교적 작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완장 또는 건물의 지붕에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9 1993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는 결의 제8호 4단락에서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에 대해,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 정해진 바 표장의 표시적 및 장식적 사용에 관한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네바협약 및 AP I의 각 조항에 포함된 표장관련 용어들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 GCI 제7장의 제목은 “식별표장”이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의 구분에 관해 설명하며, 이 문제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서 더 상세히 다루어진다.

- AP I 제8조(타)에서는 “식별표장”을 “의무대 및 의무차량,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장비 또는 보급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될 경우의 백색바탕의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호표장”(“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 또는 “보호목적의 표장”)과 “표시표장”(“표시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 “표시목적의 표장” 또는 “로고”)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통해 표장 사용상의 상이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sup>10</sup>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은 IHL(주로 제네바협약 및 그에 따른 추가의정서)에 의해 특정한 범주의 개인, 부대, 수송수단(특히 의료와 관련된 요원과 시설 및 교통수단)<sup>11</sup>에 제공되는 특별한 보호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지이다. 그러므로 표장은 가시성의 극대화를 위해, 표장이 적용되는 사람 또는 물품보다 커야 하며 표장이나 백색 바탕에 아무런 표시도 더해져서는 안된다. 완장 또는 건물 지붕 등에 사용된 표장은 언제나 보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표시수단**으로서의 표장은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물품과 국제적십자운동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 경우 표장의 크기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물품보다 작아야 하며, 대개의 경우 추가정보(예: NS의 명칭 또는 약자)와 함께 사용된다.<sup>12</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그 해설)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 간에 혼동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무력충돌 시, 평시 활동을 지속하는 각국 적십자사는 사람 또는 물품에 표시적으로 사용된 표장이 각국 적십자사와의 연관을 나타낼 뿐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표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하며 완장 또는 건물 지붕에 사용되어서는

10 “표장”과 “로고” 간의 구별 및 본 연구 전반에 걸쳐 사용된 이 두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서론의 V. 표장과 로고의 구별(“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11 보호적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부대 및 수송수단의 포괄적 목록과 관련해서는 이 서론의 IV. 표장사용의 허용대상(일반원칙(“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12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사용하는 표장과 로고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이 서론의 V. 표장과 로고의 구별’ 참조.

안된다. 각국 적십자사는 평시에도 이러한 표시적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무력충돌 초기부터 표장이 보호적으로 사용되는 것과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장의 사용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표장의 디자인이라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표장을 사용하는가에 있다. 특히 무력충돌에서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 점에서 혼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적십자사로 하여금 평시 표시수단으로 사용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표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평시에는 완장이나 지붕, 심지어 깃발에도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호 또는 표시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의 정확한 크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제44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실질적인 이유로 국제적십자회의는 표시적 표시의 최대 크기를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표장, 즉 어떤 범주의 사람이나 물품에 사용된 보호적 표시보다 작은 것을 사용해야 함을 명시했을 뿐이다. 표장의 실제 크기는 상식선에서 정해져야 한다.”<sup>13</sup>

## IV. 표장사용의 허용대상 (일반원칙)

아래 목록에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해 표장사용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이 열거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서는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 보호수단으로

#### A. 무력충돌 시

- 각국의 군 의무대(의무요원, 병원 등 의무대, 의무차량 등) 및 종교요원.<sup>14</sup>
- 자국 정부로부터 군 의무대를 돕도록 적법하게 공인되고 승인받은 NS 소속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이 전적으로 군 의무대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며 군관계 법령

13 <제1제네바협약해설서> 제44조, p. 331.

14 GC I 제39~44조, GC II 제22~23조, 제26~28조, 제34~37조, 제39조, 제41~44조, AP I 제18조(1)과 (4), AP II 제12조. 보호를 제공받는 각국 군의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GC I 제19~25조, 제35~36조, GC II 제22~23조, 제26~28조, 제34~37조, 제39조, AP I 제8조(다)~(과), 제9조(2), 제12조~13조, 제15조, 제21~31조 그리고 AP II 제9조와 제11조에 의해 규정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문들은 각국의 군 의무요원만 언급하고 있으나 군 종교요원에게도 동일한 규칙과 권고사항이 적용된다.

- 에 따르고 있을 경우.<sup>15</sup>
- 정부당국의 공인을 얻고 표장사용 권리를 승인받은 민간병원(공공 또는 사설),<sup>16</sup> 그리고 점령지나 군작전 수행지역에서 그 같은 민간병원의 진료 및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그밖에도 민간인 부상자와 병자, 노약자와 임산부에 대한 수색, 소개, 수송 또는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sup>17</sup>
  - 점령지 또는 교전중이거나 교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모든 민간인 의무요원과 종교요원.<sup>18</sup>
  - AP I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관할당국의 공인 및 표장사용 승인을 얻은 모든 민간 의무대 및 의무차량.<sup>19</sup>
  - 공인 및 승인을 받고 위의 규정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NS를 위해 활동하는 그밖의 독자 구조단체.<sup>20</sup>

## B. 평시

- 각국의 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sup>21</sup>
-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의료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결정된 NS 의무대와 의무차량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표장을 평시부터 미리 보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22</sup>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언제나(무력충돌 상황뿐 아니라 평시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sup>23</sup>

## 표시수단으로

### A. 무력충돌 시

- 각국 적십자사<sup>24</sup>

15 GC I 제40조, 제42~44조. 보호 대상인 NS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GC I 제24조, 제26~27조, 제34조 및 GC II 제24~25조, 제27조, AP I 제8조(다)와 (마), (사)~(차) 그리고 제9조(2)에 의해 규정된다.

16 GC IV 제18조, 제3단락. GC IV 제21조와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표장사용의 범위가 육상, 해상, 공중 교통수단으로 확장된다. 또한 동 협약의 제1부속서 제6조에 의하면 "부상자와 병자만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장소에는 백색 바탕의 적십자(적신월, 적사자대양)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민간 병원과 의무대의 표장사용은 연구절문6 참조.

17 GC IV 제20조 제1~3단락.

18 AP I 제18조(3). 보호를 제공받는 민간인 의무요원과 종교요원에 대해서는 AP I 제8조(다)~(라)와 제15조(1)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주에는 AP I 규정에 부합하는 NS 의무요원도 포함될 수 있다.

19 AP I 제18조(4). 보호를 제공받는 민간인 의무대 및 의무차량에 대해서는 AP I 제8조(다)와 (사), 제12조,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주에는 AP I 규정에 부합하는 NS 의무대와 의무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

20 GC I 제44조 제1단락. 독자구조단체들은 GC I 제26~27조와 AP I 제9조(2)(나)에 규정되어 있다.

21 GC I 제44조 제1단락.

22 1991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3조.

23 GC I 제44조 제3단락.

24 GC I 제44조 제2단락.

- 국제적십자자연맹

- ICRC

## B. 평시

- 각국 적십자사<sup>25</sup>

- 국제적십자자연맹

- ICRC

- 예외적 수단으로서, 제3자가 운영하는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이 전적으로 부상자와 병자에 대한 무상진료 제공 활동에 관여하고 있을 때, 표장의 사용이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사용을 NS가 명확히 승인한 경우.<sup>26</sup>

## V. 표장과 로고의 구별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제44조)는 표장이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언제나 그 원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제네바협약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백색 바탕의 적십자로 이루어진 보호 표지는 변경이나 추가 없이 항상 원형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sup>27</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 제1~2단락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더욱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보호수단으로 쓰이는 표장은 항상 그 원형을 유지하여, 십자나 초승달 혹은 백색 바탕에 아무 것도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십자는 두 개의 가로대로 이루어지며 중앙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것이 사용된다. 초승달의 경우, 그 모양과 방향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또한 십자나 초승달은 깃발이나 문장의 가장자리에 닿아서는 안된다. 적색의 진하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바탕은 언제나 백색이어야 한다.

표시적으로 쓰이는 표장은 언제나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약자와 더불어 사용되어야 한다. 표장에 있어 주된 요소가 되는 십자나 신월 위에는 어떠한 그림이나 글자가 있어서도 안되며 바탕은 언제나 백색이어야 한다.”

25 GCI 제44조 2단락.

26 GCI 제44조 4단락. 제3자의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 대한 표장사용에 관해서는 연구질문 31 참조. NS가 승인한 제3자의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 대한 표장사용 기준은 편의상 “표시수단” 부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같은 표장사용자와 국제적십자운동 간의 관계는 오직 승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27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4.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며 유익하다.

- 백색 바탕에 원형 그대로 표시된 적십자/적신월/적수정을 말하며 보호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 백색 바탕의 적십자/적신월/적수정을 말하며, 관련 구성원의 명칭 또는 약자와 함께 사용되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 “로고.” 로고는 표시 목적으로 사용된다.<sup>28</sup>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본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중 “표장”은 보호수단으로서의 용도와 연관되고, “로고”는 표시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한다.

## VI. 표장은 보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표장이 보호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 표장이 적용되는 사람과 물품을 보호하는 것은 표장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해둘 필요가 있다. 보호는 IHL(주로 제네바협약과 그에 대한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장된다. 표장은 그 같은 보호에 대한 시각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대상인 사람과 물품은 특히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이 그 사람이나 시설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sup>29</sup> 표장 사용이 허락된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해 표장을 사용할 절대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호적 가치로 인해 표장의 사용이 적극 권장된다는 사실은 강조되어야 한다.

## VII. 용어: 일반적 표현으로서의 “표장 오용”

본 연구에서 “표장의 오용”이라 함은 표장사용 규칙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뜻한다. 다른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이는 아래 세 가지 범주의 오용 사례중 한 가지에 속한다.

- 모방: 형태 및 또는 색상으로 인해 표장과 혼동될 수 있는 표지의 사용.
- 부적절한 사용:
  - 표장사용을 승인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이나, 그 방법에 있어 표장사용 관련 IHL 조항에 부합되지 않을 때.
  - 표장사용 권한이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영리기업, 약사, 개인주치의, NGO, 일반인 등) 또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만적 사용: 무력충돌 상황에서 적대적 행위에 관계된 전투원 또는 군장비를 보호할

28 대형 NS 로고 사용에 관한 자세한 논의사항을 위해서는 연구절문 18 참조.

29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25 및 1991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 해설 참조.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이처럼 기만적 표장사용이 자행됨으로써 사망 또는 신체나 건강에 있어서의 심각한 해를 초래하는 경우, 이 같은 사용은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든 전쟁범죄에 해당된다.<sup>30</sup>

---

30 특히 AP I 제85조(3)(바) 및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156(해설), p. 599 참조.



# 제1부

표장사용에 관련된  
운영상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



## 제1부

### A. 국가당국에 의한 사용

#### 1

#### 무력충돌 당사국의 군 의무대가 일시적으로 표장을 변경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제네바협약 공동 제3조

GC I 제38~39조, 제44조

AP I 제8조

AP II 제12조

AP III 제1조와 제2조

### 권고사항

1. 일단 국가가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 중에서 자국의 표장(보호수단)을 선택하고 나면, 표장사용이 승인된 국내 단체는 **영구히** 해당 표장만 사용할 수 있다.
2. 그러나 “보호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AP III 가입국의 군 의무대는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을 불문하고 이미 선택한 한 가지 표장 이외의 다른 표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AP III이 적용되는 경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참가 중인 무장단체의 의무대는 각 관할당국의 지시에 따라 기존 표장 대신 보호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표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sup>31</sup>
4. 그러나 표장의 일시적 변경 여부는 최대한 진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해당 국가의 국내법과 대중에 대한 이미지 문제뿐 아니라, (표장의 일시적 변경을 고려 중인 의무대, 그리고 해당 상황에 처한 다른 의무대 및 NSG) 이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보안상의 가치에 관해서도 최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표장의 일시적 변경과 관련해 유일하게 타당한 사유는 그 표장의 사용을 허가받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1 무장단체 의무대의 표장사용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28 참조.

## 분석

### 서론

GC I 제38조와 제39조에 의하면 국가는 승인된 모든 표장들 중 한 가지 표장을 선택해 깃발과 완장 및 자국의 군 의무대에 속한 모든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국가가 선택한 표장, 즉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은 GC I 제44조에 의해 해당 국가의 각 관련 당국이 보호 목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제네바협약의 확실한 실행을 위해, GC I 제44조에 따라 표장사용이 허락된 자국의 군 의무대와 기타 단체에 적용될 표장의 제정을 위한 법령과 규칙, 그리고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국가가 선택하여 법과 정책을 통해 시행하는 표장이 무력충돌 시 원칙적으로 그 국가가 사용해야 할 표장이다. 이 같은 원칙은 승인된 모든 표장이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며 어떤 면에서도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sup>32</sup> 따라서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 중 어느 표장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sup>33</sup>

## 표장의 변경

###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가의 군 의무대가 표장을 변경하는 경우

IHL상 최근까지는 국가의 군 의무대가 표장을 일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1월 14일 발효된 AP III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AP III는 “국제적, 비국제적 성격의 구분없이 무력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이 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34</sup>

선택된 표장에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인식되어 해당 표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 또는 지역 주민들이 승인된 표장들 중 한 가지에만 친숙한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식별표장의 일시적 사용에 관한 이 원칙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보호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AP III 제2조(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2 GC I 제54조에 따르면 “제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제53조에서 언급한 남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령에 관한 예로, ICRC 자문단이 작성한 “적십자, 적신월 및 적수정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모델 법” 제31.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군 의무대에 의한 사용**

1. [국가명] 군 의무대는 국방부의 관리에 따라 평시는 무력충돌 시는 육상, 해상 및 공중에 있는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할 표장명] 표장을 사용해야 한다.”

33 AP III 제2조(1) 참조.

34 <제3추가의정서 해설> 제1조(2), p. 186.

“체약국 군 의무대와 종교요원은 다른 표장의 일시적 사용이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 기존 표장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본 조항 제1단락에 언급된 어떠한 식별표장 [즉, 적수정을 포함하는 승인된 표장들]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AP III 체약국은 영구사용을 목적으로 선택한 표장 이외의 표장이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결정은 표장사용 권리를 가진 단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군당국이 관련 군부대 전체와의 공동 평가를 거친 후에 내릴 수 있다. 표장사용에 있어 AP III에 따른 이 같은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에게 AP III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그럼에도 **인도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의 군 의무대는 동일한 조건에서 해당 표장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동일한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관할 군당국은 실제적 고려에 있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외국군대(또는 외국군대의 연합군)가 표장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작전수행지 국가의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적군과 국민은 그 외국군대/연합군을 “무력충돌 수행”국의 군 의무대 및 NS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 표장의 일시적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표장사용이 허락된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 표장변경 결정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다.

###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무장단체의 의무대가 표장을 변경하는 경우**

AP II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백색 바탕의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사자태양 등 식별표장은 권한있는 관계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료부대 및 의무차량에 사용되어야 한다. 표장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추가 의정서에 사용된 “식별표장”이라는 용어는 표장이 오직 보호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sup>35</sup> AP I 제8조(타)의 명시적 규정에 따르면, “식별표장”이라 함은 의무대 및

의무차량,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장비 또는 보급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백색 바탕의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사자태양 등 식별을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sup>36</sup> AP II 제12조 역시 이와 거의 동일한 정의를 토대로 채택되었다.<sup>37</sup>

보호 대상자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바로 적군뿐 아니라 야군 부대나 무장단체에게도 확실하게 식별되는 것이다.<sup>38</sup>

따라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의 양 당사자는 각 관할당국의 지시에 따라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sup>39</sup> <추가 의정서 해설서>(AP II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관할당국은 민간 또는 군(軍)일 수 있다. 합법적 정부에 맞서 교전중인 집단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책임당국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추가 의정서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일반적 요건과 더불어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반군 측의 역량이 특별히 요구된다.”<sup>40</sup>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의 모든 당사자는 국가인지 무장단체인지를 불문하고 IHL 상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의 경우 명백히, 가입한 조약과 적용가능한 관습법 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국제적 조약에 공식 가입할 자격은 오직 국가에만 있지만, NIAC 상황의 무장단체 또한 제네바협약 공동 제3조 및 관습국제인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AP II가 적용된다면 그 규정 역시 준수해야 한다.<sup>41</sup>

그와 유사하게 AP III 적용지역의 경우, 집권 정부와 교전 중에 있는 무장단체는 AP III 제2조(4)에 따라 국가의 군 의무대와 동일한 조건에서 표장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동일한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이 무장단체의 의무대는 그 단체의 ‘사실상의’ 책임당국이 선택한 표장 이외의 표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그러한 일시적 변경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당국의 감독에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sup>42</sup>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종교 분과간 충돌에서 NIAC의 상대편 당사자가 특정 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다.

36 AP III 제1조(2) 및 제2조(1)과 (3)에 따르면 백색 바탕의 적수정 또한 이 “식별표장”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37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 II 제12조, 4734.

38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 II 제12조, 4742.

39 무장단체 의무대의 표장사용에 관해서는 연구결문 28 참조.

40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 II 제12조, 4746.

41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1986년 6월 27일자 판결)(메리츠)1986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14, 114, 제119단락; 판결문번호 55/97, 사건번호 11.137(아르헨티나), 174단락(1997년 10월 30일); 판결문번호 26/97 사건번호 11.142(콜롬비아), 제131단락(1997년 9월 30일);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193(1998년), 제12단락(1998년 8월 28일)(아프가니스탄 관련);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812(1993년), 제8단락(1993년 3월 12일)(르완다 관련);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794(1992년), 제4단락(1992년 12월 3일)(소말리아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번호 ICTR-6-G-4-T, 248, 제611단락(1998년 9월 2일); UN인권위원회, 결의문 1987/51, 제5단락(1987년 3월 11일)(엘살바도르 관련); UN인권위원회, 결의문 1997/59, 제7단락(1997년 4월 15일)(수단 관련) 참조.

42 표장의 게시는 보호받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으며, 표장은 IHL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지를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이에 관해서는 본 연구 서론의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 2

## 국가의 군 의무대가 적십자/적신월 “이중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38조와 제44조

AP III 제2조

## 권고사항

1. 법률적 논거뿐 아니라 실질적 논거에 의해서도 군 의무대는 이중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 분석

국가의 군 의무대가 보호를 목적으로 이중표장(예: 나란히 제시된 적십자와 적신월)을 사용하는 문제는 수 십년에 걸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론은 법률적 논거뿐 아니라 실질적 논거에 의해서도 군 의무대의 이중표장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률적 논거

- a. 제네바협약에는 보호를 목적으로 이중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다. GC I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적십자 대신” 다른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표장의 조합을 통해 형성될 새로운 표장은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국가는 단 하나의 표장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GC I 제44조에 의해 승인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표장이 된다.
- b. 이중표장의 사용을 희망하는 국가는 제네바협약 비준 또는 가입 시점에서 그 같은 취지의 유보조항을 명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유보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검토가 불필요하다.<sup>43</sup>
- c. GC I 제38조와 상충하고 군 의무대의 이중표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할 관습적 규범이

4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년 5월 23일, 제19조 참조. 가입 또는 승계 이후의 유보조항 삽입은 불가하다. 이를 원하는 국가는 협약의 폐기를 통보하고, 유보조항을 명시해 재가입해야 할 것이다. 2001년 6월 2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정부 포고령 제863호에 의해, 1993년 제네바협약가입 당시에 채택한 유보조항을 철회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 유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공화국은 군 의무대의 고유표장이자 식별표지로서 백색 바탕의 적십자와 적신월[로 구성된] 이중의전표장을 사용한다.”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사례는 없다.

d. 이중표장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교회의를 통해 제네바협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 같은 외교회의가 2005년 12월에 열려 각국에 협약 개정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AP III가 국가의 군 의무대에 의한 이중표장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같은 취지로 IHL 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AP III 제2조(4)는 단 한 가지에 한해 기존 표장이 아닌 다른 표장의 사용을 허가하고, 기존 표장 대신 몇 가지 다른 표장을 조합해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식별표장이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에 있어서, 그 표장을 단수형으로 표기하는 것과 논리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또한 <제3추가개정서 해설서>에 따르면 “이 조항을 공인 표장의 중복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전 법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일이다. 이런 과도한 해석은 [제2조의]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추가개정서가 표장의 사용과 존중에 대해 기존에 인정한 조건을 수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sup>44</sup>

## 실질적 논거

a. 법률적 고찰과는 별개로 표장의 보호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중표장은 보호대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 예로, 이중표장은 기본적인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원거리의 이중표장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표장의 보호기능을 보장하는 필수요소인 명료성, 단순성 및 가시성을 상실한다.

식별표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타의 시각적 표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당시 감안한 가시거리 내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표장의 기능은 육안으로 주간에, 맑은(안개나 눈, 비가 없는) 날씨에서, 그리고 전투원이 발견 즉시 발사할 수 있을 때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45</sup>

최대의 보호효과를 얻기 위해 원거리에서 식별표장이 지나는 가시성에 관한 과학적 실험을 실시한 결과,<sup>46</sup> 표장의 형태를 변경하면 전장에서 그 보호효과가 축소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b. 적십자와 적신월(그리고 적수정)이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은 동일하며, 이 표장들은 모든 면에서 중립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 간 적대성이 존재해서는 안

44 <제3추가개정서 해설> 제2조, p. 190 및 AP III 제2조(4)에 따르면 “제약국 군 의무대와 종교요원은 다른 표장의 일시적 사용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존 표장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본 조항 제1단락에 언급된 어떠한 식별표장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조 추가)

45 <추가개정서 해설> 제1부속서, AP I 제2장, 4016.

46 <추가개정서 해설> 제1부속서, AP I 제2장, 4018~4026, p. 1167; “네덜란드 공군에 의한 실험” IRRC, 1936년 3월, p. 204; “스위스 공군에 의한 실험”, IRRC, 1936년 5월, p. 408; 제랄드 C. 코드레이, “의무기관, 의무대 및 의무차량에 게시된 식별표장의 가시성”, IRRC, 277, pp. 295~321; <병원선, 연안구조선, 기타 보호대상 선박 및 의무항공기에 의한 기술적 식별수단 이용 매뉴얼>, 제2권, ICRC, 제네바, 1995년.

된다. 적십자나 적신월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보호를 목적으로 두 표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c. 끝으로, 적십자와 적신월을 나란히 게시하는 것은 두 표장에 담긴 종교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sup>47</sup>

## AP III 및 적수정 표장에서 비롯된 가능성

AP III의 채택에 따라 적수정 표장의 사용 가능성이 도입되고, 일정 조건하에 국가의 군 의무대(및 종교요원)가 보호표장을 변경할 기회가 명백히 부여됨으로써 이중표장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가령 여러 종교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한 국가가 적십자와 적신월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힌 경우, 이제 그 국가는 적수정 표장을 영구히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원칙상, 그 국가는 (i) AP III 가입국이어야 하며, (ii) 그런 취지로 국내법(및 또는 규정)을 도입한 상태여야 한다.<sup>48</sup>
- 또한 AP III 가입국은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 자국의 군 의무대임을 나타내기 위해 (적수정을 포함한)어떠한 식별표장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49</sup> 이 같은 권리는 해당 국가의 군 의무대에 적용된 표장이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유용할 것이다.

47 프랑수아 브뤼옹,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ICRC, 제네바, 2007년 5월, p. 20.

48 AP III는 2007년 1월 14일에 발효되었다. ICRC 자문단 보고서, “국제인도법 문서에 대한 국가적 준수 강화 및 그 문서의 비준과 실행을 위한 법률, 규제, 행정적 수단의 채택을 위해 구성된 법률 및 기술보좌 담당 국가당국”을 참고할 수 있다(연구질문 47 참조).

49 AP III 제2조(4).

## 3

승인된 두 가지 표장을 연합군 참가국들의 군 의무대가 공유하는 장소나 수송수단에 함께 게시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38조와 제44조

AP III 제2조(4)

## 권고사항

1. 승인된 두 가지 표장(보호수단)은 같은 연합군 참가국이 공유하는 장소(예: 병원) 또는 수송수단(예: 구급차)에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단, 이중표장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그러므로 같은 장소 또는 수송수단에 서로 다른 표장을 함께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AP III 적용 지역인 경우, 가급적이면 국가 간 합의를 통해 하나의 승인된 표장으로 장소 또는 수송수단을 표시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는 당연히 작전수행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인정된 표장을 선택해야 한다.

## 분석

본 질문은 군 의무대의 표장사용 문제, 즉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원칙적으로, 승인된 두 가지 표장은 같은 연합군 참가국의 군 의무대가 공유하는 장소 또는 수송수단에 함께 게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질문 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군 의무대의 이중표장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sup>50</sup> 같은 연합군에 참가 중인 서로 다른 국가의 군 의무대가 같은 장소 또는 수송수단에 각각의 표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중표장 사용이 되거나 그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군이 이중표장을 사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sup>51</sup>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50 특히 GCI 제38조 참조. 국제기구(예: UN 평화유지군)에 의한 표장사용 관련 사안은 연구질문 27에서 다룸.

51 “이중표장”에는 승인된 두 표장을 함께 게시한 어떠한 조합도 포함된다(예: 적십자/적신월, 적십자/적수정).

-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을 건물(예: 병원, 사무실)에 함께 사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을 나란히 게시하지 않는 방법, 즉 서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 두어 이중표장을 사용한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 것.
- 한 대의 차량에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을 나란히 사용하지 않는 것.
- 두 표장이 함께 표시된 깃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연합군 소속 의무대 또한 연합군에 속한 장소 및 수송수단에 승인된 하나의 표장만을 선택해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sup>52</sup> 이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점은 승인된 모든 표장이 IHL에 의해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니며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을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장소나 수송수단에 대한 표장을 적십자에서 적신월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일은 연합군 참가국의 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

AP III에 명시된 바에 주목해야 한다. AP III 제2조(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약국 군 의무대와 종교요원은 다른 표장의 일시적 사용이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 기존 표장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본 조항 제1단락에 언급된 어떠한 식별표장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UN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특정 임무에 관해 다른 AP III 제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 후원 하에 있는 작전에 참가하는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AP III를 비준한 연합군 참가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유연성이 제공된다. 그러나 AP III를 비준하지 않았거나 그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추가의정서의 조항을 즉시 발동하는 데는 법률상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AP III 가입국 수가 증가할수록 본 권고사항의 수행이 용이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표장의 선택에 관한한 최선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한 최우선의 기준은 바로 작전수행지에서 가장 친숙하고/인정받는 표장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돌당사자와 주민 모두가 적신월에 매우 친숙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면 적신월을 표장으로 선택해야 하며, 이 점은 적십자 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군은 적수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

52 국가의 군 의무대에 의한 (일시적)표장변경 관련 사안은 연구질문 1 참조.

53 이는 다음의 AP III 제2조(1)에 의해 확인되었다. “본 추가의정서는 제네바협약 상의 식별표장과 더불어, 그리고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의 추가적 식별표장을 인정한다. 이 식별표장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3추가제정서 해설>, 제2조(1)과 (4), pp. 186~187과 189~190.

## 4

## 전투인명구조원(CLS)은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44조  
API 제8조(다), (마), (가)

## 권고사항

1. 전투인명구조원(CLS)은 전적으로 의료임무 수행에 배속된 경우가 아니면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CLS는 의료임무 수행 중, 즉 부상자와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한 수색, 수용, 수송, 진단이나 응급처치를 포함한 치료 시 및 질병예방 활동 시,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 분석

## 도입

CLS의 역할은 추후 추정 병력 확보 임무의 일환으로 의료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CLS는 부상자를 보살피고 자가치료와 의무요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 훈련을 추가로 받는 각 부대 소속 병사(보병 또는 공병 등)이다. 그들의 목적은 “황금시간대(golden hour)” 즉, 외상을 입은 후 60분 내의 결정적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CLS가 의무요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CLS에게 표장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GCI 제44조, 제1단락에 따르면 표장사용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IHL에 따른 보호를 받는 요원에 한한다.<sup>54</sup> 그러므로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가운데 CLS가 속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제네바협약 규정: 의료임무에 대한 상시 배속과 임시 배속의 구분

GCI은 의무요원에 한해 그 의료임무에 대한 배속이 상시적인지 임시적인지에 따라 이중

<sup>54</sup> GCI 제44조 제1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조의 다음 각 단락에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색 바탕의 적십자 표장 및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라는 말은, 평시 전시를 불문하고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유사한 사항을 정하는 다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대 및 기관, 요원 및 물자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의 보호수준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sup>55</sup>

a. 상임의무요원에 관한 GC I 제2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의무요원, 의무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종교요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시의무요원으로서 보호를 보장받고 그에 따라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GC I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임무들, 즉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예방 활동에 상시적으로 배속된 상태여야 한다.<sup>56</sup>

b. 보조적 의무요원에 관한 GC I 제2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필요 시에 부상자 및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 또는 치료를 담당할 병원당직, 간호원 또는 들것운반 보조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받은 군대 구성원 역시, 적과 접촉한 상태 또는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 중일 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GC I 제25조의 규정은 시간제로 의료임무 수행에 종사하는 특수범주 해당자에 관해 다룬다. 병원당직 또는 들것운반 보조자로 일하기 위한 특수훈련을 받은 만큼, 이들은 소속 장교의 지시에 따라 부상자를 수색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업무시간 동안 이들은 다른 군 업무에 배속된다.<sup>57</sup>

보조적 의무요원은 GC I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과 접촉한 상태 또는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 중일 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즉, 전장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5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5조, pp. 221~222.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의무요원")은 p. 217에서 6개 범주의 보호대상을 밝히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는 요원은 다음 6개 범주로 구성된다.

1.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군 의무요원(제24조).

2. 의무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군 직원(제24조).

3. 종교요원(제24조).

4. 위 1, 2, 3에서 말한 요원과 동일한 임무에 종사하며 군 병규의 적용을 받는 각국 적십자사 및 기타 승인된 구호협회의 요원(제26조).

5. 적법한 승인을 얻어 교전당사자를 돕는 중립국 구호협회 요원(제27조)

6. 긴급상황 발생시 병원당직, 간호원 또는 들것운반 보조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군대 구성원(제25조).

이 중 마지막 범주의 요원은 때로 위 5개 범주에 속하는 요원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명칭인 ‘상임의무요원’(제24조 제목 참조)에 대하여 ‘보조적 요원’으로 알려져 있다.”

5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특정 임무에 대한 이 같은 전적 배속은 의무요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제네바협약 계약국들이 전장에서도 적군 소속원에게 특별한 면책을 허용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전적으로 종사’한다는 말은 그 배속이 상시적이어야 함을 뜻하며 이는 보조적 의무요원에게 적용되는 제24조의 내용과는 다르다.”(<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4조, pp. 218~219.)

57 1949년까지, 이러한 보조적 의무요원의 범주에 속하는 인원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의료업무에 관해 배운 바가 있는 연대소속 군악대원 등이 여기에 속하였다. 하지만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 명실공히 전투원인 군의 요원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5조, p. 222.

외교회의는 보조적 의무요원의 보호표장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완장에 한하여 “소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GCI 제41조의 규정이다.

“제25조에 지정된 요원은, 오직 의료임무 수행 시에 한해, 중앙에 소형 식별표장이 표시된 백색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완장은 군당국이 발행하였고 그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한 요원이 지참할 군 신분증에는 본인의 특별한 훈련분야와 담당임무의 임시성, 그리고 완장 착용을 허가받은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네바협약 입안자들은 상임의무요원이 통상적으로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완장을 허용할 경우, 남용의 위험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보조적 요원을 위한 특별 완장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sup>58</sup>

이 같은 방안의 두 가지 단점은 즉시 드러났다. 즉, 표장의 크기가 축소됨으로써 조항의 전반적 목적(보조적 의무요원에 대한 보호)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었고 두 종류의 완장 간에 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부분 남아 있었다.<sup>59</sup>

## 추가적 규정: 의료임무에 대한 상시적 배속과 임시적 배속 간의 구분

앞서 말한 제네바협약 규정상의 두 가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API 입안자들은 상이한 수준의 보호 및 소형표장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포기하였다.

“의무요원”의 정의는 API 제8조(다)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실질적 관행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sup>60</sup>

“‘의무요원’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마)에 열거된 의료목적을 위해, 또는 의무대의 행정, 의무차량의 운영 또는 행정업무에 배속된 자를 의미한다. 그 배속은 상시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다. (…)”

API 제8조(카)는 한시적 배속기간 동안 의료업무에 전적으로 임해야 할 임시적 의무요원의 의무를 강조한다.

“‘상임의무요원,’ ‘상설의무대’ 및 ‘상설의무차량’이라 함은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전적으로 의료업무에 배속된 대상을 뜻한다. ‘임시적 의무요원,’ ‘임시적 의무대’ 및 ‘임시적 의무차량’

58 <제1제네바협약 해설> 제41조, p. 317.

59 <제1제네바협약 해설> 제41조, p. 318.

60 API 제8조(다)가 합의에 의해 채택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25, p. 82도 참조.

이라 함은 전체 기간 중 한시적으로만 전적으로 의료업무에 임하는 대상을 뜻한다. 다른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이라는 명칭은 상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두 범주에 모두 관련된다.”<sup>61</sup>

“임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시간 제한에 관해 정해진 바도 없다. 그러나 의무요원과 의료물자의 배속이 작전 중 변경되는 일은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sup>62</sup> 예를 들어, 부상자와 병자를 수색하고 수송하는 임무에 전적으로 배속된 보병은 IHL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보호 수단으로서의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누리게 된다.

## 전투인명구조원(CLS)의 경우

대개의 경우 CLS는 의료업무 수행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보다 최전방에 배치되어 직접 전투에 참가한다. 따라서 그들은 상시적으로도 임시적으로도 의무요원 자격을 얻지 못하며 보호표장을 사용할 권한 역시 부여받지 못한다.

하지만 입법의 근본취지와 API 제8조(다), (마), (바)의 목적에서 볼 때<sup>63</sup>, CLS는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sup>64</sup> 이러한 활동에는 부상자와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한 수색, 수용, 수송, 진단 또는 응급치료를 포함한 진료, 그리고 질병예방 활동이 있다.<sup>65</sup>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상자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융통성과, 의료업무 배속의 배타적 특성과 연관된 엄격한 규율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율을 준수함은 신뢰성에 기반한 이 같은 보호체계의 존속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sup>66</sup>

잠정적으로 의무요원을 보강하려는 목적에서 관할 군당국이 그 직권에 따라 CLS를 의료 임무에 배속할 수도 있다.<sup>67</sup> 그 같은 경우에 CLS는 전적으로 의료업무 수행에 임하는 전 기간에 걸쳐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61 “배속”과 “할당”이라는 표현을 각각 상시요원 및 임시요원과 관련해 사용하는 데 대한 조안작성위원회(제2위원회)의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상실의무대 또는 상시의무요원에 대한 보호가, 해당 부대의 조성, 해당 요원에 대한 임무부여 명령 및 배속,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임시 부대나 요원에 대한 보호는 오직 실제로 의료업무 이외의 임무가 정지된 때에야 시작된다. <추가개정서 해설> API, 제8조(가), 392도 참고할 것.

62 <추가개정서 해설> API, 제8조(가), 395.

63 1969년 조약문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단락에 따르면,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조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64 “존중과 보호”라는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 미군 야전교범 등에 규정된 국가적 관례에 따르면, 이러한 요원이 “고의로 공격받거나, 포격당하거나 그 고유업무의 수행을 불필요하게 금지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합중국, <야전교범27-10, 육상전투법>, 미 육군성, 1956년 7월 18일, 변경번호1에 의한 수정, 1976년 7월 15일, §§ 225~226.

65 <추가개정서 해설>에는 의무요원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들것운반자 역할을 수행했던 병사들의 사례가 강조되어 있다. 그들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존중을 받았다. <추가개정서 해설> API 제8조(가), 396.

66 <추가개정서해설> API 제8조(가), 396.

67 <추가개정서해설> API 제8조(다), 354.

## 5

## 표장사용 권한이 부여된 군 의무요원 및 의무대, 의무차량이 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제네바협약 공동 제3조

GC I 제19조, 제22조, 제24~26조, 제35조, 제44조

GC II 제35조(1)과 제36조

GC IV 제18조, 제20조, 제21조

AP I 제8조(다), (마), (사),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8조(3)

AP II 제9조(1)과 제11조(1)

### 권고사항

1. 군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은, IHL에 의해 보호를 받는 한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군 의무요원에게 부여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는, 폭력행위에 대비해 자신의 환자 또는 자신을 방어할 목적의 “휴대용 병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박탈되지 않는다.
3. 의무요원이 기관총 또는 개인이 운반하기 어렵고 다수에 의해서만 작동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중화기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의무요원과 그 의무대 및 의무차량은 IHL의 보호대상 권리를 박탈당하고, 표장사용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4. 위 권고사항은 병원선에 전적으로 공격을 피할 목적의 방어 수단을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분석

#### 서론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은 구조대원과 의무요원, 시설 및 의무차량에 대해 IHL이 부여한 특별한 보호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표지이다. GC I 제44조에 따르면 보호표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대 및 기관, 요원 및 물자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이 IHL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표장을 사용할 권리도 잃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보호 대상인 요원, 시설 및 수송수단이 무기를 사용하면 이로 인해 IHL에 따른 보호와 표장사용 권한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의무요원, 시설 및 의무차량에 대한 존중과 보호

전적으로 의료관련 임무와 목적을 위해 지정된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은 군과 민간 중 어느 쪽에 속하든 항상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국가적 관행을 통해 관습국제인도법상의 한 기준으로 자리잡아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sup>68</sup>

이 원칙 중 의무요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GC I 제19조와 제24~26조, GC II 제36조, GC IV 제20조에 제시되고, AP I 제15조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 의무요원뿐 아니라 민간 의무요원(AP I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이를 암시적으로 담고 있으며, AP II 제9조(1)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의무대와 관련하여 동일한 규칙을 GC I 제19조와 GC IV 제18조에 제시한다. AP I 제12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AP I에 정의한 바와 같이) 의무대뿐 아니라 민간 의무대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다. 제네바 공통 제3조는 이를 암시적으로 담고 있으며, AP II 제11조(1)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의무차량과 관련해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에 대해서는 GC I 제35조와 GC IV 제21조에 제시되고, AP I 제21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의 의무차량뿐 아니라 민간 의무차량(AP I에 정의한 바와 같이)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했다.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이라는 용어는 각각 AP I 제8조(다)<sup>69</sup>, (마)<sup>70</sup>와 (사)<sup>71</sup>에 정의되어 있다.

68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25, 28, 29, pp. 79, 91~92, 98.

69 AP I 제8조(다)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의무요원”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마)에 열거된 의료목적 위해, 또는 의무대의 행정, 의무차량의 운영 또는 행정 업무에 배속된 자를 의미한다.

(1) 제1 및 제2협약에 규정된 자를 포함하여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충돌당사국의 의무요원 또는 민방위조직에 배속된 의무요원

(2) 국내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사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정당히 인정되고 허가된 기타 국내 자발적 구호단체의 의무요원

(3) 본 의정서 제9조(2)에 규정된 의무대와 의무차량의 의무요원

70 AP I 제8조(마)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의무대”라 함은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한 수색, 수송, 수송, 진단 또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치료 등 의료목적 및 질병예방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단체 및 기타 부대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병원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수술센터, 예방의료본부 및 기관, 의료창고와 의무대의 의료 및 의약품창고 등을 포함한다. 의무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상시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다.”

71 AP I 제8조(사)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의무차량”이라 함은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상시적이든 임시적이든 충돌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통치하에 있고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 의무대 요원 및 의무차량의 무기 소지

### 의무대

GC I 제22조는 의무대가 보호를 박탈당하게 될 조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다음의 사실로 인하여, 의무대 또는 의무시설이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부대 또는 시설의 요원이 **무장하고 또한 자위 또는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방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것(…)**.” (강조 추가)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와 <추가 의정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의무요원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이유가 해당 요원이 의무대의 점령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경우 의무요원은 자신의 지위와 함께 그 지위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GC I 제22조는 의무요원이 통제불가능한 대상과 약탈자에 대응하고, 관할부대 내에서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sup>72</sup>

두 번째로, “방어”라는 말은 폭력에 대한 방어라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의무요원이 적병에 의한 의무시설 점령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그 보호받을 권리는 반드시 상실된다.<sup>73</sup>

그럼에도 “방어”의 의미는 API 제13조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이 조항을 통해 무기소지의 권리는 민간 의료시설의 의무요원에게 확장된다. GC I 제22조에 근거해 민간 의료시설에 관한 내용을 다룬 API 제13조는, 보호받을 권리의 상실을 초래할 구체적 행위들을 규정하기 위해 기술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의무대가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는 동 부대가 인도적 기능 이외의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데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호는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시한을 붙인 경고를 발한 후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후에 정지될 수 있다.

2. 다음 사항은 적에게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부대요원이 자신 또는 그들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방어를 위한 **개인용 소화기**를 휴대하는 것.

72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2조, p. 203.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I 제13조(2), 제560단락도 참조.

73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I, 제13조(2), 561.

- 나) 동 부대가 초병, 보조 또는 호위병에 의하여 방어되는 것.
- 다) 부상자와 병자로부터 수거되었거나 아직 적절한 기관에 인계되지 못한 소화기, 탄약 등이 부대 내에서 발견되는 것.
- 라) 군대구성원 또는 기타 전투원이 의료상의 이유로 동 부대 내에 있는 것.”(강조 추가)

AP I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 의무요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민간요원 역시 군 의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위협에 노출되고 군 요원이 대처해야 하는 바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이 인정됨으로써 의료시설의 민간요원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수용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74</sup>

국가적 관행을 살펴 보면 민간 의무요원이 약탈자 등에 의한 폭력에 맞서 자신의 환자나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만 무기를 소지한 경우, 그 보호된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sup>75</sup>

## 의무차량

동일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의무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병원선**과 관련해서 GC II 제 35조(1)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시한다.

“다음의 조건은 병원선 또는 함선내의 의무실이 받을 보호를 그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 (1) 함선 또는 의무실의 승조원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방위 또는 부상자와 병자의 방위를 위하여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

<제2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제35조(1)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의무요원으로 하여금 육상의 병원에서의와 마찬가지로 병원선 또는 선내 의무실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 개인(약탈자 또는 무책임한 군 구성원)에 의한 적대행위에 대항해 병원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은 명백하다.” 동 해설은 또한 다음 내용을 덧붙인다.

“[일반적으로] 육상에서든 해상에서든, 의료시설은 군사작전에 대해 실제로 방어체계를 가질 수 없다. 의무대가 적군의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리력이 필요할 것이며, 정의상 의료시설이 재량에 따라 그 같은 물리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76</sup>

74 <추가외정서 해설서> API 제13조(2), 560.

75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25, p. 85.

76 <제2제네바협약 해설서> 제35조, pp. 194~195.

그러나 <해상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 제170단락에 따르면 병원선에 “방어전용 무기”를 갖추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병원선은 알루미늄박과 조명탄처럼 단 순히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방어용 장비를 갖추 수 있다. 단, 그 같은 장비를 탑재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간 근본적 이유는, 군함이 미사일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 같은 군함 근처에 있던 병원선이 빗나간 미사 일을 맞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선은 오직 공격을 빗나가게 하기 위한 방어수단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 대공포와 같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sup>77</sup>

**의무항공기와 관련해 AP I 제28조(3)은 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의무항공기는 탑승중인 부상자, 병자, 난선자로부터 접수하여 아직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인계되지 않은 소화기, 탄약과 탑승중인 의무요원 자신 및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 소화기 이외의 어떠한 무기도 수송하여서는 안된다.”

<추가적정서 해설서>를 통해 AP I 제28조(3)의 규칙이 의무대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sup>78</sup>

마지막으로, <해상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제178단락은 의무항공기의 경우, “자기방어를 위한 휴대용 병기 이외의 무기를 탑재할 수 없으며, 오직 의무요원과 의무장비만 실을 수 있다”<sup>79</sup>고 규정하고 있다.

### **의무요원이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소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AP I 제13조는 군 및 민간 의무요원 모두가 소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정서 해설서>에 근거하여 볼 때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a. 1949년에 군 의무요원에 대한 무기 소지 권리를 부여할 당시 군 의무요원의 합법적인 무기 사용에 관한 견해에는 사용 가능한 무기가 반드시 경화기여야 한다는 생각이 내포되었다. 그러나 GC I 제22조에 이를 굳이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b. 1974년~1977년에 개최된 외교회의를 통해, 의료시설의 민간 의무요원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개인용 소화기”로 제한된다는 구체적 내용을 AP I 제13조에

77 <해상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170.1~170.3, p. 235.

78 예를 들어 <추가적정서 해설서>의 경우, 특히 항공기가 강제로 육지에 착륙하거나 바다에 착수할 때에 오직 방어를 목적으로 한 무기사용은 허용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적정서 해설서> AP I 제28조(3), 1069~1070 참조.

79 해설 178에 따르면 AP I 제28조에 포함된 규칙(178에 요약)은 관습법적 성격이 있다. <해상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178.1단락, p. 244 참조.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80</sup>

c. API 제13조에는 “개인용 소화기”라는 표현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의정서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용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 소지하고 사용하는 무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권총과 같은 휴대용 무기뿐 아니라 소총 또는 심지어 기관단총의 사용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총뿐 아니라 한 사람의 힘으로 쉽게 옮길 수 없고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한 다른 어떤 중화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d. GC I 제22조(군 의무요원 관련 조항)에는 군 의무요원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다. 그러나 수행해야 할 임무는 API 제13조(의료시설의 민간 의무요원 관련 조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군 의무요원이 그 조항에 규정된 무기(즉, “개인용 소화기”)보다 강력한 어떠한 무기를 소지하더라도 그 소속 부대는 IHL에 따른 보호를 박탈당하고 그에 따라 표장의 사용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sup>81</sup>

한편 <추가 의정서 해설서>에 제시된 해석에 따라 수많은 군 교범이 개인용 소화기 소지로 인해 군 의무대 요원의 보호된 지위가 박탈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sup>82</sup> 특히 독일군 교범은 “개인용 화기”가 권총, 기관단총 및 소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sup>83</sup> 네덜란드 군 교범은 동일한 내용의 용어해석과 함께, 미사일 발사기나 기타 대전차 무기, 파괴성 슈류탄 등의 목표물에 대해 사용되는 무기는 “개인용 화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설명을 담고 있다.<sup>84</sup>

e. ‘2005년 불법 소형무기 및 경화기 식별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 to Enable States to Identify and Trace, in a Timely and Reliable Manner, Illicit Small Arms and Light Weapons)’에서 UN 총회는 “소형무기”와 “소화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0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I 제13조(2), 563.

81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I I, 제13조, 562-564.

82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아르헨티나군 매뉴얼, <무력충돌관련법(Leyes de Guerra)>, RC-46-1, Publico, 1969년 제2판, 아르헨티나군, 사령관 승인 원판(Edición original aprobado por el Comandante en Jefe del Ejército), 1967년 5월 9일, 3.007; 호주, 호주방위군, <무력충돌관련법, 사령관지침>, 호주방위군 출판국, 작전시리즈, ADFP 37 부록1 - 중간판, 1994년 3월 7일, 제 615단락; 호주, 호주방위군, <무력충돌관련법 매뉴얼>, 호주방위군 출판국, 작전시리즈, ADFP 37 - 중간판, 1994년, 제521 단락, 제911 단락, 제964 단락; 벨기에, <무력충돌관련법(Droit de la Guerre)>, <장교교관을 위한 병사지도서(Dossier d'Instruction pour Soldat, à l'attention des officiers instructeurs)>, JS3, 참모장(État-major General), 벨기에군(일자미상), pp. 18-19; 베냉, <무력충돌관련법(Le Droit de la Guerre)>, 분책 제3권(III fascicules), 베냉군, 국방부, 1995년, 분책 제2권(Fascicule II), p. 16; 카메룬, <국제인도법 및 무력충돌관련법, 군 헌법 지도 매뉴얼(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et Droit de la Guerre, Manuel de l'Instructeur en vigueur dans les Forces Armées)>, 공화국 대통령, 국방부, 병력 참모본부(État-major des Armées), 제3부, 1992년판, p. 87, 제142 단락; 케냐, <케냐군 병사 행동수칙>, 법부감실, 2001년 6월 4일판, 규칙10, 제6단락; 프랑스, <무력충돌관련규정 통합자료(Fiche de Synthèse sur les Règles Applicables dans les Conflits Arms)>, 문서번호 432/DEF/EMA/OL.2/NP, 병력 참모본부장 당사자 해군대장을 위한 부아노 군단장 작성(Général de Corps d'Armée Voinor pour l'Amiral Lanxade, Chef d'Etat-major des Armées), 1992년, 제2.3 단락; 독일, <무력충돌 시의 인도법> - 매뉴얼, DSK VV207320067, 독일연방공화국 연방국방부(권), VR II 3, 1992년 8월, ZDV 15/2 영역본, Humanitäres Völkerrecht in bewaffneten Konflikten - Handbuch, 1992년 8월, 제631 단락 및 제315 단락, 제619 단락; 케냐, <무력충돌관련법, 기본과정(ORS)>, 4요약, 군대경찰연구소(일자미상), 요약번호 3, p. 9; 네덜란드, <인도주의실천(Toepassing Humanitaire)>, 전쟁관련법(Oorlogsrecht), 대책(Voorschrift) No. 27-412/1, 지상군(Koninklijke Landmacht), 국방부(Ministerie van Defensie), 1993년, p. VI-5;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인도법 연구발표>, 부록A, 제4장: 국제인도법(무력충돌관련법), 국방군, 1996년, 제48 단락; 스페인, <무력충돌법 지침(Orientaciones. El Derecho de los Conflictos Armados)>, 출판번호OR7-004, 제2권, 군작전참모 승인법(aprobado por el Estado Mayor de Ejército), 작전부서(Division de Operaciones), 1996년 3월 18일, 제1권, 4.5.b.1(b); 영국, <무력충돌관련법 매뉴얼>, 2004년, 7.15; 미국, <해군작전관련법 사령관권람>, NWP 1-14M/MCWP 5-2.1/COMDT PUB P5800.7, 해군성 발행, 해군참모총장실 및 본부, 미 해병대 및 미 교통부, 미 해안경비대, 1995년 10월 (구 NWP 9 (Rev. A)/FMFM 1-10, 1989년 10월), 11.5.

83 독일, <무력충돌 시의 인도법>, 매뉴얼, DSK VV207320067, 독일연방공화국 연방국방부(권), VR II 3, 1992년 8월, ZDV 15/2 영역, Humanitäres Völkerrecht in bewaffneten Konflikten - Handbuch, 1992년 8월.

84 네덜란드, <인도주의실천(Toepassing Humanitaire)>, 전쟁관련법(Oorlogsrecht), 대책(Voorschrift) No. 27-412/1, 지상군(Koninklijke Landmacht), 국방부(Ministerie van Defensie), 1993년.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25, p. 86 참조.

“(a) 넓은 의미로 보아 ‘소형무기’는, 각 개인이 사용하도록 고안된 무기이다. 대표적으로는 권총과 자동장전 권총, 소총과 카빈총, 기관단총, 돌격소총과 경기관총이 이에 속한다.

(b) 넓은 의미로 보아 ‘경화기’는, 두 세명이 한 조가 되어 사용하도록 고안된 무기이지만, 한 사람이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종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관총, 총류탄 발사기, 휴대용 대공포, 휴대용 대전차포, 무반동총,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체계 발사기, 휴대용 대공미사일 체계 발사기, 구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박격포가 이에 속한다.”<sup>85</sup>

AP I에 언급된 “**개인용 경화기**”는 위에 인용한 법률문서에서 정의한 “휴대용 병기”로 보아야 한다.

85 UN 총회, 소형무기 식별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 to Enable States to Identify and Trace, in a Timely and Reliable Manner, Illicit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2005년 12월 8일, 4(a)-(b).

## 6

## 보호목적 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와 관련해 각국 적십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39조, 제42조 제4단락, 제44조

GC IV 제18조 제3단락

AP I 제18조

AP II 제12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 제1단락

### 권고사항

1. GC I에 따라 표장사용이 (보호목적으로) 허락된 (즉,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 있는) **군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국 군당국이 표장사용의 승인에 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이 책임은 NS와 같은 여타 기관에 위임될 수 없다. 따라서 군 의무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NS(ICRC 또는 국제적십자사연맹)는 이를 거절하고 해당 요청을 관할 군당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2. GC IV과 AP I에 따라 표장사용이 (보호목적으로) 허락된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당국이 군 또는 민간 어느 쪽이어도 무방하다. 국가는 이 권한을 여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그 중 가장 적절한 기관은 NS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해당 NS는 대상 단체에 대해 표장사용을 승인하고 그 사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 NS가 보호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보호표장이 표시된 자체 물자들(그 사용이 승인된 단체에) 배포할 권리도 허락되어야 한다.
3. AP II에 따라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 있는 (민간 또는 군) 정부당국과 (민간 또는 군)무장단체의 ‘사실상’의 당국은 보호목적 표장과 그 표장이 적용된 물자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분석

### 서론

GC I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관할 군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기, 완장 및 모든 장비에 백색 바탕의 적십자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강조 추가)

GC I 제42조, 제4단락은 다음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충돌당사국은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한, 의무대 또는 의무시설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지상군, 공군 또는 해군이 식별 표장을 명백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조 추가)

끝으로 GC IV 제18조 제3단락에 따르면, “민간병원은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GC I] 제38조에 규정된 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강조 추가)

## 민간 병원뿐 아니라 군 의무대와 의무시설에도 표장을 사용할 “상대적 의무”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표장은 보호, 즉 사실상 IHL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보호적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보호에 대한 시각적 표현에 불과하다.<sup>86</sup> API 제18조(1)에 따르면, “각 충돌당사국은 의무 및 중요요원과 의무대 및 의무차량이 반드시 식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장이 보호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교전국이 그 의무대에 표장을 게시할 절대적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때로는 표장을 사용해 물품을 표시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나,<sup>87</sup> 그 의무대가 식별되도록 하는 것이 당사국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sup>88</sup>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 제1단락에 대한 해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보호대상 요원과 물품은 표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사용해도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 표장의 보호적 사용을 담당하는 관할당국

### 국제적 무력충돌

a.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군 의무대와 의무시설에 관해서 “표장관련 규제 및 사용승인 여부는 군 사령관이 관장한다.”<sup>89</sup>고 말한다. 동 해설은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86 본 연구의 서론 중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87 “소형 외과용 도구들이 여기 속한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39조, p. 307 참조.

88 때로 최전선에서는 지휘관이 그 의무대의 존재 또는 실제 병력의 규모를 숨길 목적으로 의무대를 위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39조, p. 307. 민간 병원과 관련해서는 <제4차제네바협약 해설> 제18조, pp. 149~150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민간 병원’은 ‘표시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은(…) 그럼에도 국가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선택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민간 병원의 표장게시가 원칙상 의무적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은 해당 국가의 승인에 따른다. 그렇다면 민간 병원의 표장사용 문제는 승인여부와는 별개가 된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표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표장으로 표시된 민간병원이 공식적 인정을 받았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인정된 모든 민간병원엔 반드시 표장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실상 공식승인은 대개 식별표지를 사용할 권한을 수반한다.”

89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39조, p. 308.

“군당국은 항상 표장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군 부대 또는 개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실제로 군의 일반명령은 대개 반복되지 않는다. 군 의무대에 관한 한 대체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할 군당국’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1929년 당시 해석상의 유연성을 허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이는 각 국의 군에 귀속될 문제이다.”<sup>90</sup>

b. 민간병원에 관해 다루고 있는 GC IV 제18조, 제3단락은 관할당국 문제에 대해 더욱 유연한 입장이다. 다음은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의 관련 부분이다.

“이 조항은 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권리가 있는 기관에 관해 (…)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권한이 국가에 귀속됨을 밝힐 뿐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며, **담당기관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는 국내법의 몫이 될 것이다.**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바 있는 국가와 각국적십자사의 공동승인 제도는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군의 동의조건에도 속하지 않았으나, 이는 정부전문가 초안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외교회의의 대표단 일부도 이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GC IV 제18조의] 어떤 표현도 국가가 이 부분에 관한 권한을 **군당국, 각국적십자사 또는 다른 유사적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제네바협약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였다는 점이다.”<sup>91</sup> (강조 추가)

API 제18조는 의무대와 의무차량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권한이 어느 당국(군이나 민간 또는 NS)에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sup>92</sup> <추가 의정서 해설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GC IV 제18조의 해석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보호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권한이 NS에 있는 경우, 해당 NS는 보호표장이 적용된 자체 물자를(그 사용이 승인된 단체에) 배포할 권리도 아울러 가지게 된다.

90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39조, p. 308.

91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0.

92 <추가 의정서 해설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간 및 군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대 및 의무차량의 사용은 소속 충돌당사국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식별표장은 소속 충돌당사국(특히 점령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상대 당사국측이 될 수도 있음) 관할당국의 동의없이 부족할 수 없다.”(<추가 의정서 해설서> API 제18조, 766.)

## 비국제적 무력충돌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는 관할당국 문제가 한층 복잡해진다. 의료 및 종교요원과 의무대, 그리고 의무차량에 대한 식별표장 사용은 “권한있는 관계당국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AP II 제12조의 규정을 <추가의정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식별표장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에는 그 표장을 관련 관할당국의 승인과 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각 책임당국의 재량에 따른다. 관할당국은 **민간 또는 군 소속일 수 있다. 합법적 정부에 맞서 교전 중인 집단에 있어서는 ‘사실상’ 책임당국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추가의정서 적용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직성이라는 일반적 요건과 더불어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반군 측의 역량이 특별히 요구된다.”<sup>93</sup> (강조 추가)

## 각국 적십자사, ICRC 또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위임받은 권한

그러므로 표장의 사용승인 및 표장이 적용된 물자의 배급에 관한 결정, 그리고 표장의 사용방법에 관한 책임이 군이든 민간이든 국가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a. GC I에 따라 군 단체의 표장사용의 승인 하는 책임은 다른 기관에 위임될 수 없으므로 NS, ICRC 또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군 의무대로부터 표장 또는 표장이 적용된 물자의 사용승인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해당요청을 관할 군당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 b. GC IV과 AP I에 따라 표장사용이 허용된 민간단체에 대한 책임당국은 군 또는 민간일 수 있다. 국가는 그 권한을 NS와 같은 여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인도주의 관련분야에서는 NS가 공공당국의 보조기관 역할을 하므로, 국가가 그 권한을 타 기관에 위임하고자 한다면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NS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럴 경우, 해당 NS는 대상 단체에 대해 표장사용을 승인하고 그 사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

- c. AP II에 따라,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 있는 (민간 또는 군) 정부당국과 (민간 또는 군) 무장단체의 ‘사실상’의 당국은 표장과 그 표장이 적용된 물자의 사용을 승인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두 형태의 당국은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당해 국가가 승인한 NS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7

## 점령지역에서 표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 점령국의 군 의무대에 의해?
- 피점령국의 민간병원(및 그 직원), 민간 의무대, 의무요원 및 의무차량에 의해?

## 법령적 근거

1907년 헤이그법 제43조

GC I 제39조

GC IV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56조, 제64조

AP I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AP III 제2조(4)

## 권고사항

1. 점령지역에서 점령세력의 군 의무대는 자신의 표장(보호수단), 즉 점령세력의 법령(또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표장(보호수단)을 사용해야 한다.<sup>94</sup>
2. 공식승인된 민간병원, 그 건물 및 직원뿐 아니라 민간 의무대, 의무요원과 의료차량은(표장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자국의 표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당국은 충돌 발생 이전, 즉 점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필요한 승인과정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3. 피점령국의 관할 기관이 아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점령세력은 동 기관이 보호 목적의 표장사용을 허가 및 승인하는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 기능이 정지되고 공식적 승인업무가 불가능한 때라면, 점령국은 피점령국의 관할당국을 대신해 이를 담당해야 하고, 적절한 문서의 발행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게 된다.
4. 점령국이 피점령지의 법령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민간 병원, 그 건물 및 직원에 적용되는 표장(보호수단)은 여전히 피점령국의 표장이어야 한다.

## 분석

### 점령기간의 표장사용

#### 점령국의 군 의무대

점령지역에서 점령국의 군 의무대는 당연히 자체 표장, 즉 소속국의 범령 또는 확립된 관행에 따른 표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GC I 제39조에 따라, 그리고 점령국의 국내법규를 고려할 때,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무력충돌 중에 그 의무대의 표장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논리이다.<sup>95</sup>

따라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점령국이 적신월표장을 사용하는 국가의 영토를 점령할 경우 점령국의 군 의무대는 원칙적으로 적십자 표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질문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P III 제2조(4)는 AP III 가입국에 대해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해,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 또다른 표장(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 피점령국의 민간 병원(및 그 직원), 민간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

민간 병원,<sup>96</sup> 그 병원의 직원,<sup>97</sup> 그리고 민간 의무요원<sup>98</sup>과 의무대<sup>99</sup> 및 의무차량<sup>100</sup>에 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 A. 점령지역에서 표장사용을 승인할 책임은 어느 국가에 있는가?

개괄적으로 말해, 1907년 헤이그법 제43조는 점령상황에서 그 전반적 책임이 점령국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합법적 권력의 지휘권은 사실상 점령자의 수중에 넘겨졌으므로, 점령자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점령국의 현행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중의 질서와 안전을 최대한 회복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점령지역의 민간병원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GC IV 제18조 제3단락<sup>101</sup>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95 표장변경 가능성에 관해서는 연구질문 1 참조.

96 GC IV 제18조와 API 제12조.

97 GC IV 제20조와 API 제15조.

98 API 제15조.

99 API 제12조.

100 GC IV 제21조와 제22조, API 제21~31조.

101 이 조항과 그 이후 조항들은 점령국의 영토와 해당 무력충돌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도 적용된다.

“민간병원은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의 제네바협약 제38조에 규정된 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GC IV 제20조 제2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점령지역 및 군사작전 지역 내에서 상술한 자는, 소지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책임있는 당국의 스탬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날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임무수행중 좌완에 달아야 할 날인된 방수용 완장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완장은 국가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하고 아울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 정한 표장을 달아야 한다.”

또한 GC IV 제20조 제4단락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 병원의 사무소는 항상 최신 직원명부를 자국 또는 점령군의 권한있는 당국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제20조)는 “요구가 있을 때” 이 명부를 점령군에게 제공해야 함을 보여준다.<sup>102</sup> 이 조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그 명부는 각 병원 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앞서 말한 승인 및 문서에 대한 관할당국이 어디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GC IV 제56조는 이와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점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히 필요한 예방 및 방지 대책의 채택과 적용에 관하여 점령지역의 국가 및 지방당국,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와 협조하여 유행성 질환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범주의 의무요원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점령지역에 병원이 신설되고 점령지역 관할조직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면, 점령국 당국은 필요시 해당 병원에 대해 제18조에서 규정된 승인을 부여해야 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점령국 당국은 또한 해당 병원직원 및 수송차량에 대해 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부여해야 한다.”

API 제18조(3)과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점령지역 및 전투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의료요원과 민간종교요원은 식별표장과 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대 및 의무차량은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 식별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국가당국은 충돌발생 이전, 따라서 점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위험에 처한 병원, 의료 시설, 의무요원 및 의무차량에 대해 허가 및 필요한 승인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피점령국 관할기관이 아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점령국은 동 기관이 표장사용에 관한 공식 허가 및 승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업무가 중단되었거나 공식 승인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점령국은 피점령국 관할당국을 대신해 민간병원(특히 신설 병원)과 민간 의료시설, 의무요원 및 의무차량에 대해 표장사용을 허가하고 그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sup>103</sup> 점령국은 표장사용에 관한 허가 및 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sup>104</sup> 민간 병원 직원에 대한 신분증 및 완장을 발행할<sup>105</sup> 궁극적 책임이 있다. 점령세력은 오직 GC IV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과 그 직원 및 의무차량에게만 표장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 및 승인하여야 한다.<sup>106</sup>

## B. 어느 쪽 표장이 승인되어야 하는가?

점령지역에서 점령국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1907년 헤이그법 제43조에 따라 피점령국의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 GC IV 제64조 제2단락 역시 “점령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자국이 [GC IV]에 의거한 제 의무를 이행하고 당해 지역의 질서있는 통치를 유지하며 점령국의 안전, 점령군 또는 점령행정기관 구성원 및 그의 재산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 및 통신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함” 경우 점령국은 점령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점령기간 동안, 피점령국 소속 민간병원과 그러한 병원의 직원, 그리고 민간 의료시설, 의무요원 및 의무차량에 적용될 표장은 피점령국이 표장법 등을 통해 선택한 표장이다. 적법한 입법절차에 의거해 선택되었을 표장은 점령국이 변경할 수 없다. 점령국이 자국 표장이 아닌 다른 승인표장을 존중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상상하기 힘든 까닭은 그러한 모든 표장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보호가치 및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103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6조, p. 315.

104 <추가적정서 해설서>(API, 제18조(4), 766)에 따르면, “식별표장은 소속된 충돌당사자측(특히 점령지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상대편 당사자측이 될 수도 있음) 관할당국의 동의가 없이는 부착될 수 없다.”

105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6조, p. 315.

106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6조, p. 315.

## 8

## 민간 병원과 의무대는 평시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1907년 헤이그법 제27조, 제2단락

GC I 제27조와 제44조

GC IV 제18조

API 제8조(마), 제9조(2), 제12조, 제18조

API 부속서 제1장과 제2장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 권고사항

1. 평시 민간 병원과 의무대(시설 및 공공)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호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sup>107</sup>

- 민간 병원이나 의무대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병원/의무대가 부상자 및 병자, 노약자 및 임산부에게 진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 병원은 공식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할당국으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그와 같이 허가받은 민간병원이나 의무대는 국가가 승인할 경우 표장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민간 병원이나 의무대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표장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표장을 사용하려면 국가 관할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 국가(또는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위임한 당국)가 평시 민간 병원 및 의무대의 표장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두 사항을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한다.
  - 해당 국가가 승인한 민간 병원과 의무대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무력 충돌 발발 시점부터 명확히 식별되는 것의 중요성.
  - 평시 지나치게 많은 대상에 표장이 적용될 경우, NS 및 그 건물과의 혼동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혼동을 초래할 위험. 이는 표장에 결부된 보호기능을 저해할 위험을 수반한다.

2. 평시 공공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보호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병원과 의료시설 지붕에 표장을 도장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민간 병원 및 의무대는 무력충돌 발발시부터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필요시 건물 정면에 게시할 수 있는 대형 적십자기나 적신월기를 갖추는 것이다.
3. 표장은 일반인을 민간 병원과 의무대로 안내하는 방향표시 또는 도로표지로 사용될 수 없다.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병원을 나타내는 도로표지로서 청색 바탕 위의 백색 “H” 등, 상황에 맞는 다른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sup>108</sup>
4. 표시표장의 사용은 NS에만 허용되므로, NS가 이용하는 민간 병원 및 의무대라면 (NS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표시표장, 즉 NS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 분석

### 보호표장으로 사용

#### 민간 병원과 의무대의 보호 및 표시

1907년 헤이그법 제27조 제2단락에 따르면, “농성군(besieged army)은 구별되고 눈에 띄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해 해당 건물 또는 장소의 존재를 나타낼 의무가 있으며, 그 표지는 사전에 적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해당 건물”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동 조항 제1단락에 언급된 병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조항은 “농성군(besieged army)”에만 적용되며 평시에 건물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1907년 헤이그법 상 민간병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개략적으로만 다루어져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므로, GC IV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군의 의료 및 위생 시설에 국한되던 보호를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하였다. AP I 제12조(1)은 해당 보호 사항을 민간 의무대(공공 또는 사설)까지 확대하고 있다. 단, 민간 의무대는 충돌당사자 중 한 쪽이거나, 그 어느 한 쪽의 관할당국에 의해 허가 또는 승인되거나 AP I 제9조(2) 또는 GC I 제27조에 따라 승인된 의무대이어야 한다.<sup>109</sup> API, 제8조(마)는 의무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의무대’라 함은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한 수색, 수용, 수송,

107 이 연구질문에서는 NS 소속이거나 NS가 이용하고 있는 병원과 의무대는 국가의 군 의무대 소속이 아닌 민간 병원과 민간 의무대 범주에 속한다.

108 신호체계에 관한 1968년 비엔나 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질문 32 참조.

109 보호를 의무대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관습법에 속한다. <관습국제인도법 연구>는 “의료목적으로만 배속된 의무대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등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28, pp. 91-95).

진단 또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치료 등 의료목적 및 질병예방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단체 및 기타 부대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병원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수혈센터, 예방의료본부 및 기관, 의료창고와 의무대의 의료 및 의약품창고 등을 포함한다. 의무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영구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다.”

민간병원의 표장게시와 관련하여 GC IV 제18조(3)과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민간병원은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의 제네바협약 제38조에 규정된 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군사상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대 행위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육군, 공군, 해군에게 민간병원을 명백히 보일 수 있도록 식별표장을 부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NS가 운영하거나 이용 중인 민간병원에도(NS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sup>110</sup>

AP I 제18조(4)에는 NS가 운영하거나 이용 중인 민간병원(NS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sup>111</sup>을 포함한 민간 의무대는 식별표장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GC IV에 규정된 민간병원의 경우, 이러한 표시 또한 관할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민간 병원 및 의무대의 표장사용 조건

표장게시의 시기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칙과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 GC IV 제18조(2)에 따라 민간 병원이나 의무대는 표장사용을 승인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허가를 얻은 병원 시설에 한하여 보호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sup>112</sup> <추가과정서 해설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AP I에 따른 의무대에도 요구되는 사항이다.<sup>113</sup>
- 이 같은 허가는 민간병원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해당국가 발행하는 법률문서를 통

110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0조 및 해설 참조.

111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0조(해설 포함)와 제19조(1) 참조.

112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48.

113 <추가과정서 해설서> AP I 제18조(4), 767.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관할당국은 추가과정서에 따라 의무대 또는 의무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설이나 차량을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반면, 관할당국이 의료시설이나 의무차량으로 인정받는 대상에 그와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해당 시설이나 차량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실제로 표장이 지나치게 눈에 띄는 등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군사적 긴급사태에 해가 된다면 의무대 또는 의무차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 공식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국가는 충돌 발발 시점 또는 평시에도 이러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sup>114</sup> 그러므로 관행상 평시에도 국가로부터 이러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병원/의무대는 부상자 및 병자, 노약자 및 임산부에게 진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민간병원 또는 의무대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언제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할당국으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sup>115</sup>
- 제네바협약뿐 아니라 추가의정서에도 그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당국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국가는 관련 책임당국을 지정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NS에 위임할 수 있다.<sup>116</sup>

허가를 얻은 민간병원은 표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행상 국가의 공식적 허가는, 대개의 경우 표장의 사용승인으로 연결되지만, 관할당국이 군사적 이유 등으로 시가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sup>117</sup>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권리는 국가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적절한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관할할 책임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이 권한을 국방부 또는 고위 군당국에 배속하거나 NS와 같은 적격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sup>118</sup>

허가 및 승인을 얻은 민간병원과 의무대는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표장사용은 전시의 조치에 해당하지만, 관할당국의 동의를 얻어 평시에도 실행할 수 있다. 이는 충돌발생 시, 표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실질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평시에 민간 병원에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sup>119</sup>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장사용 시기의 선택에 관해서는 정부에 폭넓은 재량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쟁이 임박했다고 여겨지고 충돌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준비태세(군사동원, 부분동원, 국가총동원 등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평시에 정부가 병원에 표장을

114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p. 148~149.

115 이는 GC IV 제18조 제2단락에 따른 것이며, 추정에 의해 의무대에도 적용된다.

116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p. 149~150. 표장사용을 허가 및 승인할 수 있는 당국에 관해서는 연구질문 6 참조.

117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0.

118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0. 연구질문 6도 참조.

119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1.

게시하도록 함은 정당한 처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정부의 조치는 한정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고정표지 설치작업(지붕에 페인트 칠로 표시를 하는 등)으로 국한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20</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3조에 따르면 NS 소속 의무대(민간병원 포함)의 의무차량은 평시라 하더라도 관할당국의 동의를 얻어 표장 및 식별가능한 신호를 보호목적의 표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력충돌시 의료임무에 배속될 것이 확실히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보호목적의 표장사용을 위해 정부의 허가 및 승인을 얻는 제도는 표장에 담긴 특권과 보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들은, 평시 민간병원과 의무대에 표장을 게시함으로써 무력 충돌이라는 만일의 경우에 완벽하게 대비할 필요성과, 표장의 사용(보호와 표시 목적) 및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에 재량권을 주는 이 제도는, 표장사용의 확대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표장의 승인을 선택사항으로 남겨 조심스럽게 진행하고자 한 외교회의의 우려를 여실히 드러낸다. 외교회의는 표장의 사용을 정부 승인에 맡겨 책임당국이 상황과 경험에 따라 표장사용에 대한 승인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실행결과가 좋을 경우 이 제도는 널리 적용될 것이나, 적십자 표장의 사용 확산으로 그 권위를 훼손할 정도의 남용이 발생하고 표장사용을 통해 보호하려는 병원의 대의와 명분까지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당연히 축소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책임 의식이 있는 정부는 이 부분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sup>121</sup>

표장의 사용승인을 관할하는 책임 기관은, 대중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혼동과 NS와 그 건물에 관한 의심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122</sup>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NS는 그 건물이나 소유물에 해당 로고, 즉 그 명칭 또는 약자를 표장과 함께 확실히 눈에 띄도록 표시해야 한다.<sup>123</sup>

앞서 말한 바에 따르면, NS 소속시설을 포함해 민간병원과 의무대는 충돌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평시 보호목적의 표장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120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1.

121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0.

122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1. “평시에 적십자사에 귀속되지 않는 건물에 적십자를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대중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123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1, 각주11.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군이 건물을 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게 할 목적의 표장사용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말한 지붕에 도색한 표장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평시에 병원의 방향을 알리는 일은 표장의 보호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도로 표지판의 경우 등). 그와 같은 표시는 공공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표시의 목적은 환자들에게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충돌 상황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병원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평시에 병원 또는 의무대의 위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알려야 한다. 유럽국가들이 가입한 ‘신호체계에 관한 1968년 비엔나 협약’<sup>124</sup>에 규정된 특정 신호체계가 위치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청색 바탕 위의 백색 “H”는 병원을 안내하는 표지 역할을 할 수 있다.<sup>125</sup>

국가 또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당국이 평시 민간병원 또는 의무대의 표장 게시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릴 때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국가에 의해 승인된 민간 병원과 의무대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무력 충돌 발발 시점부터 명확히 식별되는 것의 중요성.
- 평시 지나치게 많은 대상에 표장이 적용될 경우, NS 및 그 건물과의 혼동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혼동을 초래할 위험. 이는 표장에 결부된 보호기능을 저해할 위험을 수반.

NS는 표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관할당국을 도와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으므로 NS와 사용승인 관할당국은 가급적 이 사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sup>126</sup>

표장사용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공식적 승인을 얻은(GC IV 제18조와 AP I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병원 및 의무대는 평시 대형 표장이 표시된 깃발 또는 기타 도구를 보호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충돌발생 즉시 건물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평시에는 그러한 깃발 또는 도구를 건물에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sup>127</sup>

이러한 규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의 보호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표장의 사용을 승인받은 민간병원과 의무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감찰해야 한다.<sup>128</sup>

표장사용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어도 이러한 감독과 감찰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표장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원칙이 항상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24 그럼에도 표장사용과 관련된 본 협약의 규정 중 특정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연구절문 32 참조.

125 동 협약 제1부속서, E.II, 제11단락은, 청색 바탕 위의 백색 “H”에 관해 언급하며, 운전자에게 근처에 의무대시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설명한다.

126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

127 유일한 예외는 충돌 발생 직전이며 표장게시에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경우다.

128 <제4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8조, p. 151.

## 표시적 표장으로 사용

### 표시목적만을 위한 사용

GCI 제44조(2)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르면, 표장의 표시적 사용, 즉 NS의 명칭 또는 약자가 표시된 표장의 사용은 오직 NS에 속한 특권이다. 표시적 목적을 위한 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NS가 이용하지 않는 민간병원이나 의무대, 즉 국가나 민간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시설 등에 사용될 수 없다.

NS가 병원 또는 의무대를(NS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귀속 건물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sup>129</sup> 해당 병원이나 의무대는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장을 게시할 수 없다. 즉, NS의 명칭이 병기되지 않은 대형 표장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는다.<sup>130</sup>

표시목적의 표장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NS는 NS의 명칭(즉, NS 로고)이 병기되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표장을 NS 및 그 건물에 사용할 수 있다. 표시표장을 이와 같이 지붕에 도색하는 것은 표시목적 사용과 보호목적 사용 간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다. 표시 수단으로서의 표장은 완장에 부착하거나 대형 깃발에 표시할 수도 없다.<sup>131</sup>

### 보호와 표시표장의 동시사용

표시목적 표장에 관한 규칙은, NS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4조에 따라 보호목적 표장이 게시된 민간병원이나 의무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표시수단으로서의 표장에 대한 규칙은, NS가 승인받은 보호표장 외에 표시 표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NS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 정면이나 통상적으로 지붕에 도색하여 표시하는 보호 표장과 함께 NS 로고를 게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29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9조.

130 GCI 제44조 제2단락과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9조.

131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와 해설 참조.

## 9

##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품에 표장을 부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19조, 제39조, 제44조  
 API 제8조(마)와 제18조(4)

## 권고사항

1.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에 한하여 보호표장 표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수술실 관련 장비 또는 야전병원 전체 등 중장비와 의약품이 포함된다. 반면 포장식량은 이 중 어떤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장표시가 불가능하다.

## 분석

## 서론

본 질문은 국가가 보호적 장치로 표장의 사용과 그 국가가 민간인에 공급하는 구호품에 표장의 표시 문제를 다룬다.<sup>132</sup>

## 의료장비 및 보급품에 대한 표장사용

GCI 제 39조와 API 제18조(4)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관련 시설 및 장비에는 관련당국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 표장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네바협약에 따라 보호 및 표장사용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의무대에 대해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 의료서비스에 속한 요원과 물자로만 구성되었으며 그 서비스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취지는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GCI] 제24조로부터 유추할 때, 그 기관과 시설은 전적으로 부상자와 병자의 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sup>133</sup>

132 NS가 제공한 구호품에 NS 로고를 부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 질문 22 참조.

133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19조, p. 19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어떤 대상을 표장을 사용해 표시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형 외과용 도구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물품들은 보다 큰 장비의 부품으로서 표장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134</sup>

“의무대”의 정의가 API 제8조(마)<sup>135</sup>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의료시설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에도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추가의정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의료장비나 의료용품’이라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진료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용품, 특히 외과용 도구뿐만 아니라 중장비(예: 수술실 장비나 심지어 야전병원 전체까지) 또는 단순히 의약품까지도 포함된다.”<sup>136</sup>

결론적으로 “구호물품”에 (보호)표장이 사용되는 경우는, <추가의정서 해설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물품이 “의료장비 또는 의료용품”의 범주에 속하는 때에 한한다. 포장식품 등과 같이 종류가 다른 “구호물품”은 “의료장비 또는 의료품”으로 취급되기 어려운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134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39조, p. 307.

135 “‘의무대’라 함은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한 수색, 수송, 수술, 진단 또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치료 등 의료목적 및 질병예방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단체 및 기타 부대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병원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수술센터, 예방의료본부 및 기관, 의료장고와 의무대의 의료 및 의약품장고 등을 포함한다. 의무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상시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다.”(API 제8조(마))

136 <추가의정서 해설서> API 제8조(바), 382 참조. <추가의정서 해설서> API 제14조(2), 587 참조.

## 10

## 국가는 백색 바탕 위에 공인된 식별표장이 포함된 국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1 제38조, 제53조, 제54조

### 권고사항

1. 제네바협약 가입국은 어떠한 승인된 표장이나 그 모방에 해당하는 어떠한 표지도, 또는 어떠한 승인된 표장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떠한 표지도 자국 국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그러나 승인된 표장, 그에 대한 모방, 또는 어떠한 승인된 표장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표지가 포함된 국기를 사용하는 국기는, 적어도 자국 군대가 무력충돌에 개입하는 때에는 국기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단, 해당 국기의 사용이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분석

#### 제1제네바협약의 체제

GC1 제53조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모든 “개인, 협회,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은 표장 및 그와 관련한 어떠한 명칭, 그리고 “표장에 대한 모방에 해당하는 어떠한 표식 또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또 표장을 적용한 대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러한 금지가 유효하고, 표장이거나 명칭 또는 그 모방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날짜와 무관하게 항시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그와 같은 금지는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보호를 받는 모든 표장에 적용된다.

GC1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체약국은 “제53조에 언급된 남용의 방지 및 억제를 위해” 적절한 법령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장과 유사한 모든 디자인은 모방으로 간주된다.<sup>137</sup> 이런 점에서 제네바협약은 가령 십자가의 형태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다음은 그에 관한 <제1제네

137 표장 모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절문 49 참조.

바협약 해설서>의 설명이다.

“백색 바탕의 적십자 표장은 ‘스위스 연방국기의 색상을 거꾸로 사용해’ 만든다는 제네바협약의 표현은 때때로 적십자 표장이 정해진 모양인 스위스 국기의 십자와 일치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기서 ‘색상’은 글자 그대로 단순히 적색과 백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의도가 연방국기를 가리키려는 것이었다면, ‘거꾸로 사용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1906년 외교회의 회의록은 이를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 외교회의는 일부러 십자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그 정의가 위험한 남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십자의 형태가 엄격히 규정되었다면, 게시된 표장의 규격이 정해진 것과 다르다는 점을 구실로, 본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가능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우로, 비양심적인 자들은 규정이 엄격하다는 점을 이용해 조금 크거나 작은 적십자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본 협약은 스위스 정부가 자국 국기에 대해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색 바탕의 형태나 적색 십자의 정확한 명암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sup>138</sup>

GCI 제53조에 언급된 모든 “개인, 단체, 또는 회사나 기업” 가운데 제네바협약 체결국 자신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 즉, 국가의 의무인 표장관련 입법이 국가로 하여금 표장이 포함된 국기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가 표장사용이 금지된 단체의 표장사용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조항을 두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제네바협약 체결국의 국기에 어떤 공인된 표장도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GCI 가입 이전부터 표장이 포함된 국기를 사용해 온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후 최장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다.

## 실질적 고려사항

국기 디자인에 관한 법적 논의, 즉 GCI 제53조에 대한 해석은 논쟁에 휘말릴 여지를 안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표장은 그러한 방식으로 국기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무력충돌 시, 자국 국기에 표장을 사용하는 국가는 자국 군 의무대뿐 아니라 표장사용을 승인받은 다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존중과 보호마저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적이 일반 병사와 그 의무대를 구별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적 자존심과 품격을 생각해, 국가는 국기와 같이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 다른 무엇과도 혼동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더구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가 인정하는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의 국기를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대상과 사람에 사용한다면,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든 국제적십자운동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혼동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기의 상징적 가치, 또는 주권 및 자부심과의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본 사안에 관해서는 법적, 실질적 그리고 안보상의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 실제 사례

표장 또는 그를 모방한 디자인이 포함된 국기의 사용은 제네바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 해당 국가의 표장보호 관련법은 표장의 그 같은 사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했어야 한다.

비록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국내법을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안이 국가에 있어서 여전히 몹시 민감한 문제로 남는 것은 국가가 그 국가의 주권과 관련해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 국기에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로 하여금 원칙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 그러한 국기를 사용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기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므로, 그 디자인을 바꾸도록 설득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앞서 다룬 법적, 실질적 논거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국 국기의 디자인이 국제법 조항과 충돌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와 관련해 변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39</sup> 따라서 실질적 해결방안이 모색해야 한다. 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표장을 그대로 국기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적어도 자국의 군대가 무력충돌에 개입한 때만큼은 국기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성 조지(St. George)의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는 영국 국기가 이런 점에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성 조지의 십자가는 몇백 년에 걸쳐 사용되어 왔으므로 적십자 표장의 모방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2005년 영국은, 혼동의 위험을 인정하며 특정 전투지역에서는 성 조지의 십자가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sup>140</sup>

139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십자의 색상을 적색으로 착각하기 어려운 색으로 바꾸는 것이며, 그 색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140 그뿐 아니라 영국의 표장보호법은, 적십자 표장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적십자 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그와 유사한 어떠한 디자인의 사용도 금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1957년 제네바협약법, 6(2)(b)). 예를 들어, 성 조지의 십자가를 이용해 자사의 의료용품을 선전하려는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테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다.

## 제1부

### B. 각국 적십자사에 의한 사용

#### 11

각국 적십자사는 (보호 또는 표시적 사용을 위해) 임시로 표장을 변경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26조, 제27조, 제38조~40조, 제44조

AP I 제9조(2)(나)

AP III 제2조(4)와 제3조(3)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5조

#### 권고사항

1. 원칙상 NS는 국가당국이 허용한 표장 이외의 다른 표장은 사용할 수 없다.
2. 이 원칙에는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며 보호적 사용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 총돌당사국 군 의무대에 소속된 NS 요원과 물품은 AP III 제2조(4)에 따라 군대가 임시적으로 채택하거나 변경한 표장과 적십자사 표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 자국의 승인 하에 표장을 바꿀 수 있다.<sup>141</sup>
  - 예를 들어, 총돌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적십자사가 총돌당사국인 “적신월사” 회원국의 군 의무대에 지원을 제공할 때(GC I 제27조), 적십자사 요원과 물자는 NS 국가(“적십자 회원국”)의 승인과 국내법에 따라, 총돌의 “구호”수혜국이 정한 표장의 보호적 사용규칙에 부합하도록 표장을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적 사용에 관한 한 AP III 제3조(3)은 NS가 해당 추가의정서 제2조에서 규정한 적수정과 같은 식별표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적수정의 사용이 국내법에 부합한다.

141 NS 요원과 물품은 다음의 경우 총돌당사국의 군 의무대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a) NS가 자국의 군 의무대에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GC I 제26조) 또는 (b) 총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NS가 총돌당사국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GC I 제27조, AP I 제9조(2)(나),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5조).

- 예외적 상황은 적수정의 **임시적** 사용을 정당화한다.
- NS가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그렇게 한다.

## 분석

### 보호적 사용

#### GCI 제26조에 따라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NS

GCI 제38조와 제39조는 표장의 사용권을 국가의 군 의무대에 부여하고 있다. NS는 자국의 군 의무대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GCI 제26조 제1단락과 제44조 제1단락은 NS 요원이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다음 조건 하에 NS 요원과 군 의무대 요원을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i) NS가 자국 정부에 의해 적법한 승인을 받고 (ii) NS 요원과 물품이 이들 군대의 공식의 무대를 지원하고 이들과 동일한 목표를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며 (iii) 군 의무대가 활용하는 NS 요원과 물품은 군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sup>142</sup> 그렇지만 NS는 독자적으로 다른 표장의 사용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국가당국이 NS를 공인할 때 적용하는 법과 법령에는 NS가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식별표장의 내용이 포함된다.

AP III 제2조(4)에 따르면 AP III 체약국 군대의 의무대와 종교요원은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공인된 식별표장의 **임시적** 사용이 **이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NS가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그리고 군대가 주로 사용하던 표장과 다른 표장을 의무요원과 물자에 부착하기로 결정할 때에 한해, 의무대의 결정에 좌우되는 적십자사 요원과 장비에 일반적으로 해당 적십자사에 부착하는 표장 이외의 다른 표장(적십자, 적신월사, 적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

#### 충돌당사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NS

GCI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중립국의 승인된 단체는 미리 자국정부의 동의 및 사전승인과 충돌당사국의 허가에 따라 충돌당사국에 의무요원과 의무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의무요원과 의무대는 충돌당사국의 통제하에 놓인다.”

142 NS가 보호를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14 참조.

AP I 제9조(2)에 따라 제27조 규정은 중립국 또는 충돌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공인하고 승인한 구호단체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충돌당사국에 지원하는 상주 의무대와 수송수단, 그리고 여기의 요원들에 적용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5조는 충돌당사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충돌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NS는 당사국과 자국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보호표장의 사용 규칙은 당해 충돌당사국이 정해야 한다.”

이때도 역시 해당 NS는 자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상술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NS는 자국 군대에 편입되거나 소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립적인 NS 요원들은 군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충돌당사국 군 의무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호수혜를 받는 충돌당사자(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가 표장에 관한 보호적 사용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NS에게 구호수혜국의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구호수혜국의 표장이 군대가 배치된 국가에 보다 잘 알려졌기 때문이며 상이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P III 제2조(4)에 따라 다른 식별표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구호수혜자는 GC I 제27조에 따라 새로운 표장으로 대체하도록 구호지원 NS에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 경우에 만약 구호지원 NS의 자국이 AP III를 비준하지 않았다면, NS의 **임시표장 사용에 대해 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표시적 사용

NS의 표장 변경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표장의 표시적 사용에도 적용된다. 사실 앞서 언급한 예외적 사항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군 의무대가 사용하는 표장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보호적 목적에 한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AP III 제3조(3)은 NS가 해당 추가의정서 제2조에서 규정한 식별표장, 즉 적수정을 다음 조건 하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적수정의 사용이 국내법에 부합한다.
- 예외적 상황은 적수정의 **임시적** 사용을 정당화된다.
- NS가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그렇게 한다.

## 12

각국 적십자사는 “이중표장”(예: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을 나란히 사용)을 표시 또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44조

AP III 제2조와 제3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3장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4조(5)

## 권고사항

1. NS(또는 보호표장의 게시가 허용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중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AP III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NS가 표시적 목적으로 적수정 안에 이중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다. AP III 제3조(2)에 따라 적수정 안에 이중표장을 넣기로 한 NS는 국내법에 따라 이중표장을 **자국의 영토**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표장을 적수정 안에 넣지 않더라도 오직 **표시적 목적**에 한해 그 사용이 가능하다.
3. 업무협정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공조하여 활동하는 NS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승인 하에 적색 직사각형 내 백색 바탕에 적십자와 적신월을 나란히 배치한 국제적십자사연맹 로고를 오직 표시적 목적에 국한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명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sup>143</sup>

## 분석

### 보호적 사용

#### 일반규칙

한 국가의 군 의무대가 이중표장, 즉 적십자와 적신월이 나란히 배치된 표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연구질문 2에서 다루었다. 이 분석의 결론은 NS가 표장을 보호수단로서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준용된다는 것이다.

143 이런 측면에서 1993년 대표자회의에서 국제적십자사연맹과 ICRC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표시적 장식적 사용에 관한 규칙을 이들 기관의 고유 로고의 사용에 적용하기로 서약했다. 1993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표장 사용) 참조.

- NS가 국가의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 NS가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당사국으로부터 의료활동을 위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은 경우<sup>144</sup>

법적 현실적 논거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NS(또는 보호표장의 계사가 허용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중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AP III과 적수정으로 발생하는 가능성

AP III과 적수정 표장의 채택으로 보호수단으로서 이중표장의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AP III 제2조(1)과 (3)은 각각에 대해 “[이] 식별표장은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기술하며 “제3의 표장에 대한 사용 및 존중을 위한 조건은 제네바협약과 더불어 해당 시 1977년 추가의정서들로 확립된 식별표장의 조건과 동일하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III은 국가의 군 의무대와 관련해 이중표장을 둘러싼 논쟁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논리상 NS가 국가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한다.

- 한 국가가 군 의무대에 적수정 표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다. 단, 그 국가가 AP III의 체약국이고 효력 발생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한 경우에 한한다.<sup>145</sup> 이 가능성은 국가가 (예를 들어 다종교 간의 긴장관계 때문에) 적십자와 적신월 사이에서 선택이 힘든 상황에 봉착했을 때 특히 유용하다. 종교나 문화적 함의(사실상, 또다른 공인된 표장의 경우에 그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집단들에서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다)에 구애받지 않는 이 추가된 표장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며 이중표장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 AP III 체약국의 군대의 의무요원과 종교요원이 공인된 표장이 자신들의 보호를 강화시켜줄 수 있을 때 임시적으로 이러한 표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144 연구질문 14 참조.

145 AP III은 2007년 1월 14일에 발효되었다.

## 표장의 표시적 사용

### 일반규정

GCI 제44조 제2단락과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3장에 기술된 표장의 표시적 사용에 관한 규칙은 이중표장의 사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NS가 표시적 목적으로 자신의 로고를, 즉 공인된 표장 중 하나를 비교적 작은 크기로 NS의 명칭이나 약자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991년 적십자표장 사용규칙 제16조에 언급된 예외적 상황은 제외).<sup>146</sup>

### AP III으로 발생하는 가능성

AP III 제3조는 NS가 표장을 표시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낸다. AP III 제3조(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추가과정서 표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계약당사자의 NS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 표시적 목적으로 이 표장 내에 다음 표장의 합체를 선택할 수 있다.

- a)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승인된 식별표장 또는 **이 표장의 결합**
- b) 계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하게 사용되었고, 본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수탁국을 통하여 타 계약당사자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통보된 또 다른 표장.” (강조 추가)

AP III 제3조(1)이 규정한 바와 같이 적수정 안에 표장의 결합은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AP III은 NS가 표시적 목적에 한해 적수정 안에 이중표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AP III 제3조(2)에 따라 NS가 적수정 안에 넣기로 한 표장(또는 결합표장)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표장 자체만(예: 적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중표장은 원칙상 적수정 안에 넣지 않더라도 NS가 자국의 영토에서 표시적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AP III 제3조(3)은 NS가 예외적인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존 표장 이외의 표장을 표시적 목적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고,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46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와 제5조.

AP III 제2조(4)에 의거해 (보호적 목적으로) 공인된 표장 어느 것이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국가의 군 의무대와 달리, NS는 AP III 제3조(3)에 따라 (표시적 목적으로) 적수정을 임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NS가 한 국가의 군 의무대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NS는 AP III 제2조(4) 상의 융통성을 상당히 발휘할 수 있다.

### IFRC의 위탁 프로젝트에서 IFRC의 로고 사용

GC I 제44조 제3단락에 따라 IFRC와 ICRC는 제약없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고유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건을 정하는 업무협정을 맺은 NS는 적색 직사각형 내 백색 바탕에 적십자와 적신월을 나란히 배치한 IFRC 로고를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명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중표장은 보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로고는 표시적 목적에 한해 그 사용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NS가 사용하는 로고는 비교적 크기가 작고 대중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표장을 완장이나 자봉 위에 표시해서는 안된다.<sup>147</sup>

147 1991년 적십자 표장사용규칙 제4조 해설 참조.

## 13

두 가지 다른 공인표장을 각국 적십자사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장소와 수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1 제38조와 제44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3장

## 권고사항

1. 두 가지 상이한 승인표장을 보호적 목적으로 NS가 공유하는 동일한 장소(예: 병원)와 운송수단(예: 구급차)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두 개의 표장이 이중표장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2. 따라서 동일한 장소와 수송수단에 사용된 서로 다른 표장은 거리를 충분히 두고 배치되어야 한다.
3. 이상적으로, 그리고 각 법에 제약 규정이 없다면, NS는 조치가 취해지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표장을 유일한 승인표장으로 삼고 공유하는 장소나 수송수단을 식별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NS 두 곳이 공유하는 장소나 수송수단에 두 가지 다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표시적 사용은 보호적 사용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NS는 이 같은 로고의 사용이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로고로 인식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분석

### 서론

두 개(또는 그 이상)의 NS가 동일한 장소(예: 건물)나 운송수단을 공유하게 되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합동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개(또는 그 이상)의 NS가 공유하는 장소나 운송수단에(보호적 또는 표시적 목적으로) 어떤 표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구체적 목표는 그러한 장소나 운송수단에 두 개의 상이한 표장을 나란히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PNS가 ONS의 영토에서 자신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ONS의 승인이 이미 주어지고,<sup>148</sup>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 어떤 공인 표장을 사용하든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상정한다.

## 보호적 사용

- a. 당해 NS가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이 의무대가 표장을 나란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론은 NS에도 준용된다.<sup>149</sup>
- b. NS가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NS의 활동이 전개되는 국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렇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장소와 운송수단이 위치한 국가를 지칭).<sup>150</sup>
- c. NS가 서로 다른 표장(적십자와 적신월)을 사용하고 있고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하고자 한다면, 두 개(또는 그 이상)의 NS가 공유하는 장소와 운송수단을 식별하는 일이 쟁점이 될 것이다.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sup>151</sup> 두 개의 표장을 나란히 사용하면 이중표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중표장의 사용은 IHL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며 요원과 물품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 당해 NS는 이상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표장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중 하나의 표장을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배경이다.

- d. 하지만 그러한 동의에 따른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의 국가법 때문에 NS가 자신들의 표장 이외의 다른 표장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다른 표장들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이중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이한 표장들은 이중표장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가까이 배치해서는 안 되므로 건물(예: 병원, 사무실)에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부착해야 한다. 동일한 차량이나 동일한 깃발에 상이한 두 표장을 나란히 배치해서도 안 된다.

## 표시적 사용

NS가 장소나 교통수단을 공유할 때, 일반규칙(GC I 제44조 제2단락과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3장)에 따라 자신들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장소와 운송수단에 표시적 장치로서 다른 표장(NS 로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장애요소는 없다.

유일하고 일반적인 제약은 이러한 표시표장이 대중들에게 보호표장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장이나 지붕 위와 같은 곳에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sup>152</sup>

148 1921년 제10회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11호에 따라 이 같은 허락이 주어져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한 심층분석은 연구질문 21 참조.

149 연구질문 3 참조.

150 PNS의 보호적 목적을 위한 표장 사용에 관해서는 연구질문 14 참조. 점령 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할당국에 관해서는 연구질문 7 참조.

151 연구질문 3 참조.

## 14

## 어떠한 조건에서 각국의 적십자사는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40조~44조, 제53조, 제54조

GC IV 제18조 제3단락과 제21조

API 제1조(1) 제8조(다), (마), (사),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편 제2장

AP II 제1조(1), 제9조, 제11조, 제12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5조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조(3)

## 권고사항

## 국제적 무력충돌 시

1. 자국의 군 의무대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NS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GCI 제26조).
  - NS가 자국의 군 의무대를 원조하도록 자국 정부로부터 인정 및 승인을 받았다.
  - 군 의무대를 원조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NS의 의무원, 의무대, 의무장비에 한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NS의 요원, 부대, 장비는 자국 군대의 직권 하에 놓이며 이들 군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2. 충돌의 또 다른 당사국 군 의무대에 의무요원과 의무대를 원조할 때(GCI 제27조),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NS는 앞서 언급한 동일한 조건하에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NS는 충돌의 특정 당사국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 NS의 원조를 수락한 적국(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NS 소속국의 허가가 있었음을 통고했다.
  - 이러한 원조를 받고 있는 충돌당사자는 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3. 자국의 영토이든 해외이든 간에, 적십자사는 다음 조건하에 병원을 식별하는 보호 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병원이 위치한 무력충돌의 당사국에 의해 해당 병원이 GC IV를 기준으로 민간인 병원으로 인정된다.
- 병원은 그 당사국으로부터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의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4. AP I에 따라 NS 의무 요원, 부대, 차량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표장을 보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들은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이들은 AP I 제8조(다), (마), (사)에 규정된 “의무 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에 의해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의 통제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는 이 규정이 국가에게 NS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표장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다.

AP I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 무력충돌 시 NS가 보호의 목적으로 표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관할 국가당국에 청원할 때, ICRC는 AP 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당국이 필요한 승인을 해주도록 권장한다.

##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1. NS 의무 요원, 부대, 차량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들은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이들은 AP I 제8조(다), (마), (사)에 규정된 “의무 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 정부당국(민간 또는 군)이든 무장단체(민간 또는 군)이든 간에,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에 의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

AP II가 적용되지 않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NS가 보호 목적으로 표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관할 당국에 청원할 때, ICRC는 AP I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당국이 필요한 승인을 해주도록 권장한다.

## 분석

### 국제적 무력충돌 시

NS는 다음의 상황에서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GC I 제26조: 자국의 군 의무대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NS

GC I 제44조에 따라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GC I 제26조 제1단락에 정의된 NS 요원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NS는 정부에 의해 적법하게 인정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 NS 요원은 국가의 군 의무요원과 동일한 의무를 지닌다.<sup>153</sup>
- 요원들은 군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sup>154</sup>

#### GC I 제27조: 무력충돌 당사국의 군 의무대에 원조를 제공하는 충돌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NS

GC I 제40조, 제42조~44조에 규정된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 사용에 대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력충돌의 당사국에 의무요원이나 의무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립국의 NS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sup>155</sup>

- NS는 충돌당사자의 군 의무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 정부의 인정 및 승인을 받았다.<sup>156</sup>
- NS는 충돌당사자로부터 표장을 게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sup>157</sup>
- NS의 원조를 수락한 국가의 적국에게 NS소속국의 동의를 있었음을 통고했다.<sup>158</sup>

153 GC I 제24조 참조. 의무대와 의무시설의 전담 요원으로 배속된 행정요원은 의무요원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의무대와 의무시설의 행정을 담당하며, 부상자와 환자의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시무실 직원, 구급차 운전병, (남녀)요리사, 청소부 등 [...] 이들은 의무대와 의무시설의 핵심으로 이들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제1제대병원 약 해설서> 제24조, p. 219. API 제8조(다) 참조.

그러한 요원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절문 16 참조.

154 GC I 제26조 제1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각국 적십자사의 직원 및 자국 정부가 적법하게 인정하고 승인한 독자 구호단체의 직원으로서 제24조에 열거한 요원[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송,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요원, 의무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종교요원과 동일한 임무에 임하도록 고용된 자는 동 조에 열거한 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 단, 이들 단체의 직원은 군관계 법령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강조 추가)

155 API 제9조(2)는 중립국이나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공인하고 승인한 구호단체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충돌당사국에 지원하려는 상주 의무대, 의무수송수단과 그 요원에 대해서 모든 조건에 따른 보호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적십자/적신월이 아닌 민간단체가 보호의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29 참조.

156 GC I 제27조 제1단락.

157 GC I 제42조 제1단락.

158 GC I 제27조 제2단락 참조. 동조의 통보에 관해 “중립국 정부는 그와 같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적국에 전기의 동의를 통고해야 한다.”

- 이러한 원조를 받고 있는 충돌당사자는 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sup>159</sup>
- 교전국의 군 의무대를 원조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는 NS의 요원, 부대, 장비에 한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160</sup>
- 이러한 NS의 요원, 부대, 장비는 충돌당사자의 통제 하에 놓이고<sup>161</sup> 이들 군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sup>162</sup> 이는 이 NS 요원, 부대, 장비가 교전자의 군 의무대에 속한다는 의미이다.<sup>163</sup>

#### GC IV 제18조: NS 병원

GC IV 제18조와 제21조에 따르면 민간병원(NS 병원 포함)과 그 의무요원 및 호송차량은 충돌당사국에 의해 해당 병원이 “민간병원”이라는 사전적 공식 인정과 함께 표장 사용에 대한 당사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AP I 제18조: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으로서 NS

AP I 제18조(3)과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점령지역 및 전투가 발생중이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의료요원과 민간종교요원은 식별표장과 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대 및 의무차량은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 식별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AP I 제8조에서 정의하는데, AP I 의 제8조(마)에 열거된 “의료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배속/조직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의료목적”에 전적으로 배정되고 조직된 NS 요원과 부대, 차량은 AP I의 의미내에서 의료 요원과 부대, 차량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GC I 제44조와 AP I 제18조에 따라, NS 의무 요원과 부대,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9 GC I 제27조 2단락 참조. 동의를 통보에 관해 “이러한 원조를 수락하는 충돌당사국은 원조를 수락하기에 앞서 자국의 적국에 대하여 통고할 의무를 진다.”

160 GC I 제26조 제1단락 참조.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절문 16 참조.

161 GC I 제27조 제1단락.

162 특히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NS 요원과 부대는 앞서 언급된 충돌당사국이 정한 표장의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63 GC IV 제18조 제2단락과 제3단락, GC IV 해설은 “보호표장으로 표시된 민간병원이 공식적 인정을 받았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인정된 모든 민간병원에 반드시 표장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GC IV 해설, 제18조, p. 150) 평시 민간병원의 표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연구절문 8 참조. 점령 시의 표장 사용과 그러한 상황에서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을 내리는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연구절문 7 참조.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이들은 AP I 제8조(다), (마), (사)호에 규정된 “의무요원”,<sup>164</sup> “의무대”,<sup>165</sup> “의무차량”<sup>166</sup>의 정의에 해당한다.
-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에 의해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sup>167</sup>
-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의 통제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sup>168</sup> 이 규정이 국가에게 NS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표장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다.

하지만 AP I의 규정이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점(모든 국가가 AP I의 체결국은 아니기 때문)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경우, NS가 적절한 관할 국가당국에 보호의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청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sup>169</sup>

그러한 경우 ICRC는 AP 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국이 필요한 승인을 해주도록 권장한다. 이는 “국가, 특히 자국의 영토에서 가능할 때는 언제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적십자사를 공인한 국가”를 규정한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조(3)과 일맥상통한다.

164 AP I 제8조(다)에 정의된 의무요원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마)에 열거된 의료목적이나 의무대의 행정 또는 의료수송의 운영 또는 행정에 배속된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정은 영구적일 수도 임시적일 수도 있다.”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 I 제8조(다), 354에서 강조하고 있듯, “보호표장의 오용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충돌당사국은 의무요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AP I 제15조는 민간 의무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165 AP I 제8조(마)는 의무대를 “병원 및 기타 유사한 시설[과 같이], 의료목적에 위해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 시설과 기타 부대”로 정의한다. NS 의무대가 IHL에 따른 존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즉 “충돌당사국 관할당국의 인정과 승인을 받으려면” AP I 제12조(2)(나)에 자세히 규정된 “민간 의무대”에 맞는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66 AP I 제8조(세)에 정의된 의무차량은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상시적이든 임시적이든 충돌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통제하에 있고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의무차량은 AP I의 제2편 제2장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IHL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167 AP I 제18조(3)과 (4) 참조. AP I가 “관할당국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AP I 제18조(3)에 정의된 의무요원의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당국이 발급할 때, 그러한 동의는 암묵적으로 주어진다. “충돌당사국”과 관련해, 추가 의정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부대와 차량이 민간용이든 군용이든 간에, 부대와 차량의 사용은 이것이 속한 당사국의 통제하에 놓인다. 따라서 식별표장은 당사국(이 절문에 있어서 특히 점령지에서는 적국이 되기도 한다)의 관할당국의 동의 없이 부착할 수 없다.”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 I 제18조(4) 766)

168 AP I 제18조(8)은 관할당국에 의한 표장 사용에 관한 통제권을 다루면서 IHL상의 “식별표장의 사용에 관한 감독과 그 남용의 방지와 억제에 관한 제1항 및 본 의정서의 규정”을 언급한다. 이를 상기시키듯, GC I 제54조는 국가가 상시 표장의 오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가 의정서 해설서> AP I 제18조(8) 791과 794는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제네바협약 체계는 대부분 식별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표장의 사용을 감독하고 이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은 이 체계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

그러나 체결국(추가 의정서의 경우 이에 구속받는 충돌의 다른 당사국)에 부여되는 이들 국가에 속한 요원 및 물품에 사용되는 식별표장과 신호에 대한 감독 의무는 어느 상황에서도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를 존중하고 이러한 존중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보호 목적을 위한 표장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관할당국에 관해

169 보호 목적을 위한 표장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관할당국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6 참조.

## 미국제적 무력충돌 시

AP II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백색 바탕의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사자태양 등 식별표장은 권한있는 관계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료부대 및 의무차량에 사용되어야 한다. 표장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본 조항에서 언급된 “식별표장”이란 표현은 “보호표장”의 동의어이다. 추가의정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양 추가의정서에서 사용된 ‘식별표장’이란 용어는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된 표장만을 지칭한다.

AP I 제8조(용어)(타): ‘식별표장’이라 함은 의무대 및 의무차량,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장비 또는 보급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될 경우의 백색바탕의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을 의미한다.

제12조는 AP II의 초안을 작성할 때 마련되었으며, 거의 동일한 정의를 토대로 채택되었다.”<sup>170</sup>

AP II는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미국제적 무력충돌 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은 AP I 제8조(다), (마), (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71</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배정되거나 이를 위해 조직된 적십자사 요원과 부대, 수송수단은 “의무요원”, “의료부대”, “의무차량”으로서 자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NS 의무 요원, 부대, 차량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들은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규정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부합한다.<sup>172</sup>
- “관할당국의 지도하에” 표장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70 <추가외정서 해설서> AP II 제12조 4734.

171 <추가외정서 해설서> AP II 제9조, 4663~4664; <추가외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11~4712;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 25, 28, 29, pp. 82~83, p. 95, p. 100.

172 AP II 제9조는 의무요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P II 제11조는 의무대와 의무차량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정부당국(민간 또는 군)이든 무장단체(민간 또는 군)이든 간에,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에 의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의 통제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sup>173</sup>

충돌당사자의 관할당국이 정부이든 반체제자이든 간에 표장을 남용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막고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GC I 제53조와 제54조를 유추 적용),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상시적으로 감독해야 한다.**<sup>174</sup>

AP II가 적용되지 않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NS가 보호 목적의 표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관할당국에 청원할 경우, ICRC는 AP I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승인을 해줄 것을 당국에 권장한다.

이러한 승인은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조(3)에서 “국가, 특히 자국의 영토내에 설립된 적십자사를 승인한 국가는 가능하다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한 조항과 부합해야 할 것이다.

## 국내 소요사태 및 긴장상태 시

표장은 무력충돌 시에 한해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소요사태 및 긴장상태를 포함한 다른 상황에서는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sup>175</sup>

173 <추가과정서 해설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장을 효과적으로 존중하려면 표장의 사용에 대한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표장을 사용하고 싶어할 수 있다. 식별 표장을 통한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 관할당국의 식별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한 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각각의 책임있는 당국의 몫이다. 관할당국은 민간일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다. 법적인 정부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관할당국은 사실상 책임이 있는 당국이 될 것이다.”

<추가과정서 해설서> AP II 제12조, 4746.

174 반체제당국의 감독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질문 28 참조.

175 국내 소요사태 및 긴장상태 시 표장사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연구질문 18 참조.

## 15

## 각국 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 당국의 명시적 승인 없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와 제53조

AP I 제18조

AP II 제12조

### 권고사항

1. 무력충돌 시 당국이 더 이상 표장 사용의 승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 NS는 당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도 표장(보호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처럼 보호적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NS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하고 명백한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인도’라는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표장은 NS의 의료활동이 IHL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3. 관할당국이 재제비되는 즉시, 즉 상황이 시정되면 NS는 표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분석<sup>176</sup>

#### 서론

IHL은 무력충돌 시 NS가 표장을 보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할 국가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sup>177</sup> 이 관할당국은 표장의 오용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통제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176 본 분석은 주로 앙투안 부비에가 IRRC에 발표한 논문에 근거한다. 앙투안 부비에,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 사용의 특별한 측면 (Special aspects of the use of the red cross or red crescent emblem)”, IRRC, No. 272, 1989년 9~10월, pp. 443~447.

177 특히 AP I 제18조와 AP II 제12조 참조.

그러나 관할 국가당국의 허가 없이도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떠오르는데, 여기에는 쉽사리 조화시키기 힘든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러한 사용을 엄격히 반대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NS의 효과적인 구호활동이 중단되거나 응급 처치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반면, 이를 허용할 경우 표장의 오용이 조장되어 정당하게 표장사용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보호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복잡하고 격렬한 충돌로 정부의 행정 능력이 저해되어 정부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더 이상 통상적인 결정 및 결정의 집행을 할 수 없는 때이다. 이때 NS는 충돌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기관 중 하나가 되고, 처음에는 단순히 정부 의료기관의 보조기관이었다가 점차 의료서비스의 주된 제공자가 된다. 상황상 감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일부 영토에 대해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당국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대단히 격렬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며, 영토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NS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주도적 활동을 전개해야 할 수도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추가적인 일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앞서 언급한 모든 사례에서 당국은 사실상 표장의 사용을 관리하지 못하지만, NS가 반드시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ICRC나 IFRC의 활동을 하는 NS의 일원은 이 소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IHL 적용에 관한 여타의 다수 질문들과 달리, 허가 없이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질문(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무력충돌이 국제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와는 무관해 보인다.

## 각국 적십자사가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 표장을 보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장단점

### 허가 없이 표장 사용을 옹호하는 주장

- a. 표장 사용(및 이에 따라 보호되는 응급처치요원 수)의 확대는 보다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b. NS에게 표장 사용에 대한 독자적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은 NS에 책임을 부여해 보다 자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유로운 일 처리 부분은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NS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다는 점은 실로 중요하다.

- c. 정부의 행정능력이 대단히 약화되어 NS의 보호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독하지 못할 때, 정부의 허가 없이도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NS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활동은 마비될 것이다.
- d. NS의 활동 수행에 대한 자유가 늘어나면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반체제” 단체가 창출되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표장을 허가 없이 보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일’이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이 강화되도록 돕는다.

### 허가 없는 표장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

- a. 표장사용권의 확대는 어떤 경우에도 표장의 오용 문제를 수반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 b. 해당 법(GCI 제44조와 제53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등)에 기술된 표장 사용의 조건들은 오랜 협상의 산물이다. 이 조건들을 존중할 때 비로소 표장의 진정한 보호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
- c. 일부 상황에서는 허가 없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 책임을 덜 수도 있다. 그때부터 국가는 NS의 의무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표장에 대한 어떠한 감독 또는 오용을 막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 d. NS가 허락 없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다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과 달리 기본원칙의 구속을 받지 않는) 다른 기관이 표장 사용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주장을 비교해 보면, 특정한 위험 부담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외적 상황에서는 명시적 허가 없이도 표장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NS의 활동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 각국 적십자사가 예외적 상황에서 허가 없이 보호표장을 사용할 가능성

무력충돌 시 명백한 허가 없이 NS가 보호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IHL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 즉 관찰당국이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다음의 조건하에 NS의 보호표장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NS의 신속한 행동을 필요로 하는 시급하고 명백한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고 인도주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 표장은 IHL에 의해 보호받는 NS의 의료활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도 NS는 필요한 허가를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관할당국이 재정비되는 즉시, 즉 상황이 시정되면 NS는 표장 사용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끝으로 현재의 관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상 효율적인 NS, 즉 충돌의 모든 당사자가 수용하고 존중하는 NS는 당국의 특별한 허락 없이도 표장을 사용해왔으며, 표장에 대한 존중과 표장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인명을 구제해왔다.

## 16

각국 적십자사 요원의 활동 중, 즉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을 위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24조, 제26조~27조, 제40조~44조

AP I 제8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9조

## 권고사항

1.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NS 요원이 보호표장을 착용할 자격을 지니려면 전적으로 의료활동에 배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활동에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의 수색, 수용, 수송, 진찰 및 치료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 포함된다. 이는 논리상 의무요원의 훈련까지 확대될 수 있다.

## 분석

GC I 제26조, 제27조, 제40조~44조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 군 의무대를 지원하도록 적법하게 공인되고 승인받은 NS 의무요원이 군 의무대와 동일한 의무에 종사할 때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178</sup>

GC I 제24조는 이와 같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군대의] [의무]요원, 의무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sup>179</sup>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GC I 제24조에 이러한 의료활동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sup>180</sup> 그럼에도 AP I 제8조(마)는 IHL의 보호를 받는 의료활동 목록에 진찰을 덧붙였다.

이러한 활동 목록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78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NS의 보호표장 사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연구질문 14를 참조.

179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25, pp. 81~83 참조.

180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4조, p. 219.

- a. API 제8조(가)는 “**부상자**”와 “**병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부상자’와 ‘병자’라 함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외상, 질병, 기타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 또는 불구로 인하여 의료적 지원 또는 가료가 필요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 용어는 임산부, 신생아 및 허약자나 임부와 같은 즉각적인 의료적 지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자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 공동체를 위한 심리학적 지원은 의료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예: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군인가족에 대한 심리적 치료 제공)

- b.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의료활동 목록에 **질병의 예방**을 포함시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현대 군대에서 예방접종, 이 제거, 상수도 소독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 예방적 조치는 의무요원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의무대 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이러한 조치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sup>181</sup>

피해자를 직접 돌보지 않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피해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시설 역시 의무대로 간주한다. API 제8조(마)(및 이에 관한 해설)에 따라, “의무대”라는 용어는 백신과 수혈센터, 예방의료본부 및 기관, 의약품 보급소와 의무대의 의료 및 의약품 보관소 등을 포함한다.<sup>182</sup>

- c. **의무대와 시설의 관리**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IHL의 보호 및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 따르면, “이들은 의무대와 시설의 핵심 요소이며, 이들의 도움 없이는 의무대와 시설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sup>183</sup>

따라서 의무대와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NS 요원들은 이 활동이 의료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보호와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 d. 의무요원 교육은 GC 또는 AP I의 의료활동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논리상 다음 이유에서 의료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의료 요원 교육은 부상자와 병자의 근처, 대부분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예: 병원)

181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4조, p. 219.

182 <추가개정서 해설서> AP I 제8조, 376.

183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4조, p. 219.

- 의료활동이 의료 교육 없이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는 한, 의무대와 시설의 관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의료 요원의 교육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들의 임무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과 그러한 의무의 실제 수행 사이에서 합리적 유추를 할 수 있다.
- <추가외정서 해설서>는 “의료 목적에 배속된다는 것은 매우 융통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184</sup>

---

184 <추가외정서 해설서> API 제8조, 379.

## 17

각국 적십자사 의무요원이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즉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자격이 있을 때 이들은 적십자사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26조~27조, 제40조~44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와 제14조

## 권고사항

1. 관할당국의 지침을 받는 NS는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소속 의무요원에 대해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과 함께 NS 로고(표시수단)도 게시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그렇지만 표장(보호수단)과 NS로고(표시수단)를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NS와 관할당국 모두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표장의 두 가지 용도 간에, 그리고 충돌당사자 중 일방과 해당 상황에 연관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 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석

GCI 제44조 제1~2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각국 적십자사 및 제26조에서 지칭하는 기타의 단체는 이 협약의 보호를 부여하는 식별표장을 본 단락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태양사)는, **평시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하는 원칙에 합치하는** 자신의 기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활동이 전시에 행하여질 때에는, 표장은 그 사용에 의하여 이 협약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인정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 표장은 비교적 작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완장 또는 건물의 지붕에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강조 추가)

GC I에 따라, NS는

-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 역할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표장을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활동을 위한 표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이 항상 명확히 구별되도록 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적십자사는 회원들로 하여금 자사의 이름 및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과 함께 표시수단으로서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 당국의 관할 하에 놓인 물품에도 역시 적십자의 명칭과 더불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표시수단으로서의 표장과 적십자사의 명칭은 보호수단으로 쓰인 표장보다 크기가 작아야 한다.”(강조 추가)

따라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4조는 NS 요원이 표장을 보호 및 표시 수단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용은 NS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군 당국은 필요 혹은 군법에 따라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NS 요원들은 사실상 군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군 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십자 요원들의 군복 착용 여부는 각국의 방식에 따른다.<sup>185</sup>

그러나 보호 및 표시 표장으로 동시에 사용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표장의 표시적 사용은 그것이 표시된 사람 또는 물품과 국제적십자운동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sup>186</sup> 그러므로 표장의 동시 사용은 일반 대중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더욱 문제인 것은 전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a.** 동일한 상황에 처한 군대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 간의 혼란. 충돌당사국의 군 의무대는 “중립적”으로 인식되지만, NS와 기본원칙(특히 중립과 독립)을 철저히 지키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타 구성원들은 충돌당사국 어느 일방과 연계되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 이들의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185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6조, p. 227.

186 연구의 서문에 나온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b. 표장의 두 목적 간에 발생하는 혼동. 표장의 서로 다른 사용 간의 중요한 구별이 모호해지고, 그 결과 보호의 가치가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NS는 표장(보호수단)과 적십자 로고(표시수단)의 동시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관할당국은 요원들에 대해 로고와 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NS의 결정을 평가할 때, 앞서 언급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

## 18

## 각국 적십자사는 대형 표시표장(적십자사 로고)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2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 권고사항

1.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을 항상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명확한 구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기준은 표장의 크기라 할지라도(표시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의 크기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물품보다 작다), 표시적 목적을 위해서는 NS는 표장 자체보다 자신의 로고(NS의 명칭이나 약자가 붙은 표장)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3. NS 응급처치요원(과 시설)은 다음의 예외적 상황에서 대형 NS 로고를 사용한다.
  - 국내 소요 및 긴장 상황
    -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
    - 국내법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 승인되거나 최소한 금지되지 않을 경우
  - 자연재해 발생 상황에 주관기관(세비아합의서에 규정된)과 ONS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며,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경우
4. NS 응급처치요원(과 시설)이 연주회나 운동 경기 등 여가 활동으로 인한 필요 사항을 담당하고 있을 때 대형 NS 로고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 분석

### 서론

표장 사용 규칙의 주된 목적은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sup>187</sup> 이 점에 있어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 간의 구분이 중요하다. 전자는 “제네바협약이 부여하는 보호를 받는 식별 표시”인<sup>188</sup> 반면 후자는 요원이나 물품과 국제적십자운동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sup>189</sup> NS의 가시성 제고와 활동 증진은 장려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을 신중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 하나의 표장: 두 가지 목표를 위한 두 가지 크기

GCI 제44조 제2단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태양사)협회는, 평시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하는 원칙에 합치하는 자신의 기타의 활동을 위하여(…)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활동이 전시에 행하여질 때에는, 표장은 그 사용에 의하여 이 협약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인정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 표장은 비교적 작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완장 또는 건물의 지붕에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강조 추가)

“[표장의] 두 가지 사용은 항상 명확히 구별되도록 주의해야 하므로,”<sup>190</sup> GCI제44조는 표장의 두 가지 이용 간에 크기를 토대로 한 구별의 중요성, 즉 표시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의 크기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물품보다 작은 크기란 점을 강조한다.

“표시”와 “보호” 표장의 실제 크기는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상식선에서 정해진다.

“실질적인 이유로 1949년 국제적십자회의는 표시적 표지의 최대 크기를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표장, 즉 어떤 범주의 사람이나 물품에 사용된 보호적 표지보다 작은 것을 사용해야 함을 명시했을 뿐이다. 표장의 실제 크기는 상식선에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문 위에 게양된 1제곱미터의 깃발은 표시기장으로 통하는 반면, 같은 크기의 표장이 차량에 게시되면 보호기장으로

187 연구 서론의 “연구목적과 방법” 참조.

188 <제1제네바협약 해설> 제44조, p. 330.

189 <제1제네바협약 해설> 제44조, p. 330. 연구의 서론에 나온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190 <제1제네바협약 해설> 제44조, p. 330.

보이므로 20제곱센티미터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 크기의 표장을 개인에게 사용하면 결국은 대형이 되므로, 개인에게는 직경 1~2센티미터의 기호이면 충분하다.”<sup>191</sup>

전문가의 의견과 법에 따른 “상식”은 유용한 지침이다. IHL 규정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주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에 있으므로, 특정의 경우 “비교적 작은 크기”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국가이다.

비록 전시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약이라 하더라도, NS(와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한다.

“군대의 병자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해서는 평시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표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발발 시, 표지의 크기 축소, 다시 말해, 통지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실행하기 어렵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중요한 과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sup>192</sup>

또한 연구의 서론(“일반원칙과 개념” III)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표장의 두 가지 사용 간의 구분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게는 표시적 목적의 경우 표장 자체보다 로고(구성원의 명칭이나 약자가 함께 표시된 표장)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sup>193</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는 NS의 회원과 직원, 청소년 NS 회원들이 NS 소속의 건물, 귀속건물, 병원, 구호소, NS의 운송수단을 비롯하여 NS가 조직한 캠페인과 행사에 로고를 사용할 때에는 그 로고의 크기가 “작거나” “비교적 작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NS가 자신의 로고를 대형 깃발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sup>194</sup>

그러나 이 규칙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NS 로고는 비교적 작은 크기여야 함),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은 “특수한 경우에 국한하여 대형 표장의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행사 등에서 응급처치요원이 쉽게 눈에 띄도록 해야 할 경우 등에 그러하다”고 덧붙인다.<sup>195</sup>

따라서 일반규칙에 대해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의 예외는 NS 응급처치요원을

191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1.

192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1.

193 그 예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호수단으로 쓰이는 표장은 항상 그 원형을 유지하여 십자, 신월 혹은 백색 바탕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표시적으로 쓰이는 표장은 언제나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약자와 더불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해설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NS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 내부 소요가 발생해 그러한 표지가 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표장과 나란히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이니셜을 먼저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194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 제2단락.

195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 제2단락 참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6조 제3단락에 관한 설명에서 동일한 예외 상황이 언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쉽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응급처치요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려사항이 앞에서 언급한 혼동이나 오용의 우려보다 더 중요할 경우에 한한다.

## 다음 특정한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대형 로고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을까?<sup>196</sup>

표장의 보호적 가치가 축소되는 위험을 감안할 때 일반규칙에 대한 예외는 최대한 삼가하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국내 소요 및 긴장 상황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본문이나 해설 어디에도 NS 응급처치요원(또는 NS 응급처치시설)이 대형 NS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폭력 행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활용하는 요원과 병원, 응급처치시설, 운송수단 및 기타 물질적 자원의 보호에 관한 NS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내 소요 및 긴장 상황에서 대형 로고의 예외적 사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이 가능하려면 국내법이 이를 허락하거나, 적어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 자연재해 발생 상황

자연재해는 보다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NS 응급처치요원(과 시설)은 인명을 구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형 NS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앞서 언급된 예외적 규정의 무분별한 적용은 표장의 표시적 사용과 보호적 사용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지닌 의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대형 로고의 사용 결정은 주관기관(상황에 따라 ICRC, IFRC 또는 ONS)과 ONS(그 자체가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 여가활동 시

NS 응급처치요원이 연주회나 운동 경기와 같은 행사에 파견되는 경우(NS 응급처치요원 또는 응급처치시설에)대형 NS 로고를 사용하여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요원과 자체요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NS의 우려가 해소되지도 않는다.

196. 있을 수 있는 예외상황에 대해서는 앙투안 부비에의 “적십자나 적신월 표장 사용의 특별한 측면” IRRC, No. 272, 1989년 9월~10월, pp. 448~451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NS 응급처치요원(텐트, 역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로고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작은 크기의 NS 로고와 더불어 다른 표지들, 예를 들어 녹색 바탕에 대형 백색 십자나 “응급처치”라는 대형 글자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NS의 명칭을 크게 NS 응급처치시설에 적색으로 표시해 나타낼 수도 있다.<sup>197</sup>

---

197 이와 관련해 연구월문 27, 32, 46 참조.

## 19

각국 적십자사는 그 요원이 1949년 제1제네바협약 제26조의 범위를 벗어난 정부의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할 때 적십자사 로고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26조

API 제61조~66조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1조(2)와 제2조(4)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독립, 중립, 공평)

## 권고사항

1.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NS 요원은 표장(보호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2. 이러한 NS 요원은 국제적십자운동의 공평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저해하는 혼동이나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맥락이나 상황이 아니라면, NS 로고(표시수단)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3. 정부가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NS 요원의 참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관련 계약에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 NS 요원은 언제나 기본원칙을 준수.
  - 정부는 이러한 기본원칙의 준수를 존중.
  - 앞서 설명한 표장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의 NS 수용.

## 분석

### 서론

이 질문은 NS가 정부로부터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요원(혹은 물자) 제공 요청을 받은 상황을 다룬 것이다. NS의 이러한 참여는 이를테면 NS와 당국 간에 체결된 업무협정에 기반을 두며, 이를 통해 NS는 간단한 통보로 요원을 배치하고 영사관 업무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도록 요청받는다.<sup>198</sup> 현재의 관행상

ICRC에 알려진 바로는 정부의 해외 지원 활동에 대한 NS의 이 같은 참여에는 범위와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예: 1~2주 간 2~3명의 요원). 이 같은 제한적 참여는 대체로 자연재해 등에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목적은 이러한 활동이 NS의 보조적 역할로서 판단여부와 국제적십자운동의 공조 메커니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분석의 유일한 목표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미지와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NS 요원의 표장 사용을 규명하는 데 있다.

## 표장 사용

### 보호적 사용

원칙상 앞서 기술한 상황은 GCI 제44조에 따라 NS가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sup>199</sup>

### 표시적 사용

당해 사안에서 NS 요원은 정부 팀에 편입되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활동한다. 논리상, 요원들은 정부 팀의 소속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의 공평, 독립, 중립을 저해하는 혼동이나 오해의 어떠한 가능성도 피하기 위해, NS 요원들은 그들에 대한 표시 목적으로 NS 로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권고는 무력충돌의 상황, 국내 폭력, 또는 무력충돌로 (재)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더욱 타당성을 얻는다. 비폭력적 상황과 비교할 때 정부의 활동과 국제적십자운동의 활동 간의 혼동가능성은 NS 요원(과 기타 적십자운동 구성)의 피해자 접근성과 이들의 안전에 더욱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NS 로고가 있는 작은 식별표지의 사용은 국제적십자운동의 공평, 독립, 중립을 저해하는 혼동이나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권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NS 로고의 상징적 가치가 가져다 주는 위안을 고려하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이점이 있다.

198 예를 들어, NS 요원이 교전지역에서의 민간인 대피 노력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NS의 외상후 치료 전문가들이 자연재해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기여하도록 지원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199 가령 GCI 제26조에 의거해 국가의 군 의무대에 대한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NS 요원은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연구의 서론에 나온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NS가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14 참조. (자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NS 의무요원이, AP I 제18조에 규정된 이러한 요원들의 보호표장 사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연구절문 14 참조.

## 기타 식별 표시

자국 정부의 지원 활동에 편입된 NS 요원은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한, 민방위의 국제 식별표지 등 기타의 식별표지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sup>200</sup>

## 각국 적십자사와 당국 간에 체결 가능성이 있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 표장 사용

본 질문에서 논의된 상황과 관련해 NS와 당국 간의 어떠한 협정에도 앞서 언급된 표장과 NS 로고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분 확인에 관련된 기타 구체적 요소(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 또는 기타 표지나 기장 등)도 예상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항상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NS와 그 요원들은 항상, 그리고 대중이 보기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평해야 한다.<sup>201</sup> 당국은 NS가 기본원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sup>202</sup> 양자간의 협정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0 예를 들어 정부의 민방위 조직에 편입된 NS 요원은 주황색 바탕에 파랑색 정삼각형의 민방위 국제 식별 표지를 사용할 자격을 가진다. 물론 관할당국의 허락과 더불어 AP I 제61조~66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NS 요원은 민방위 조직에 소속되어야 하며 오로지 민방위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P I 제66조(7)과 (8)에 따라 민방위 표지는 (무력충돌 시보 다)평시에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서 기술한 활동에 종사하는 NS 요원은 특정 상황에서 이를 표시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개정서해설>, AP I 제66조 2644~2650, 2685, 2690 참조.

201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1조(2)

202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조(4).

## 20

## 적십자사가 UN 기관이나 기타 외부 파트너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을 때 적십자사는 표장/적십자사 로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 법령적 근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5조

2003년 최소요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독립, 중립, 공평)

## 권고사항

1. NS는 표장과 더불어 로고, 즉 명칭이나 약자와 함께 사용하는 표장에 관해 단독 통제권과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2.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외부 파트너의 로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표시수단으로) NS 로고를 외부 파트너의 로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NS 로고(와 그 명칭)를 외부 파트너의 로고와 함께 사용해야 할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에 한한다.
  - 예외적인 상황으로, 즉 인도적 활동이나 캠페인 확산과 관련해 공동 사용을 회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
  - 특정 사업, 즉 제한된 기간내 수행되는 특정 프로젝트인 경우
  - 외부 파트너가 인도적 기관인 경우
  - 합동 사용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중이 NS와 외부 파트너 간의 혼동하지 않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파트너 기관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혼돈을 피한다.
  - 건물 그리고 차량과 다른 운송수단 등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중립적이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행위자로서의 NS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5. NS는 앞서 언급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과 2003년 최소요건을 기반으로 한) 모든 조건을 외부 파트너와 체결하고 준수하는 계약에 반영할 책임을 갖는다.

6. NS가 로고의 공동 사용을 수용하게 된 애초의 조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NS는 자체 이미지와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사용을 종식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한다. 언제나 최우선의 고려사항은 NS의 안전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7. NS는 외부 파트너에게 “이중로고” 사용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정책이 상호 이익이 됨을 설명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8. 이러한 제약이 보고서, 성명서, 광고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외부 파트너를 기증자이자 협력자로서 최대한 인정하는 노력을 약화 또는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 분석

### 서론

이 질문은 NS와 외부 파트너 간의 협력관계가 특정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특정 프로젝트, 가령 UNHCR 혹은 WEP와 같은 유엔 기관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트너일 때, NS는 해당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한다.

가시적 이유에서 이들 외부 파트너는 현물로든 현금으로든 자신들이 기여한 바를 NS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할 수 있다. 협력관계의 인정이 또 다른 프로젝트의 착수 및 실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NS는 이 부분을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NS의 결정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의 방법으로 표장/로고의 공동 사용, 즉 NS 로고와 외부 파트너의 로고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경우, 이것은 NS와 외부 파트너 간의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로고의 공동 사용은 잠재적으로 NS에 대한 인식을 위해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활동하는 여타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중립적이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인도주의적 행위자라는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NS가 UN과 같은 외부 기구와 관련을 맺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위협해질 수도 있고 NS의 직원과 봉사자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협약을 맺을 때 NS와 외부 파트너가 동등하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제약사항, 의무, 특히 표장 사용 규칙에 따라야 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의무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

## 외부 파트너와의 협약에 포함되는 로고의 공동 사용에 관한 일반 사항

앞에서 기술했듯 국제적십자운동 전반에 미칠 위험을 감안하면, 공동로고의 사용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물론 폭력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이와 같은 연합, 정체성의 결합은 더욱 피해야 한다.

외부 파트너와의 협약에는 다음의 일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NS는 표장과 로고에 대한 단독 통제권과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즉, 의지에 반해 외부 파트너의 로고와 NS 로고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 NS는 GC, AP, 기본원칙,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2003년 최소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외부 파트너는 이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 자국의 규칙과 규정 및 적용 가능한 국내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과 로고의 다른 사용을 협약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과 2003년 최소요건에서 명시된 로고의 공동 사용에 관한 조건

국제적십자운동은 로고의 공동 사용을 규제하는 두 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외부 파트너와 체결하는 협약은 이 문서의 요소들을 반영해야 한다.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5조
- 2003년 최소요건 제2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5조와 관련 해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공동 사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NS와 다른 기관 간에 대중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적십자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표장과 다른 인도주의적 단체의 표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십자사가 다른 단체와 함께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용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인도주의적 활동이나 활성화 캠페인(예를 들어 공동 간행물의 제작)에서만 가능한데, 이 경우 표장은 오로지

### 표시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

2003년 최소요건 제2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적십자사나 국제적십자운동의 기타 구성원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항시 명확히 나타내는 동시에 국제적십자운동과의 연계성을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NS는 그 장비에 이중 로고나 표장을 표시함으로써 혹은 차량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파트너 기관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협약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NS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은 언제나 준수해야 할 것이다. 보호표장의 사용은 규정에 부합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로고의 사용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과 2003년 최소요건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 조건의 해석과 관련해 다음 사항은 공동로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한다.

a. NS가 공동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에 한한다. 즉, 해당 프로젝트가 구호 탁송물<sup>203</sup> 형태의 원조 제공 등과 같이 인도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거나, IHL 관련 간행물, 질병예방조치에 대한 캠페인 등 보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5조에 관한 해설에서 강조하듯, 어떤 경우에도 NS는 공동사용을 피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b. 로고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협약은 명확히 규정된 기간 내에 특정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NS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로고의 공동 사용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중이 NS를 상이한 의제 또는 목표를 추구하는 UN기구 등 협약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 공동 사용은 외부 파트너가 인도주의적 단체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 조건은 절대적이다. NS가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의제를 지닌 단체를 연상시킨다면 NS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충돌 상황에서 이는 NS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각 구성원 간의 구별 또한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있는 다른 적십자 구성원의 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미지가 UN과 연관되어서는 안된다. 상황에 따라서 UNHCR이나 WFP와 같은 UN 산하 인도주의적 기구와의 연관성도 매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NS는 특정 상황에서 일반 대중이나 전투요원이 “인도주의적 지원 공여단체”(예: ECHO 또는 USAID)를 무력충돌의 당사자 일방과 연관짓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인도주의적 공여단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중립적이지 않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

203 구호 탁송물에 표시하는 NS 로고의 사용에 대해 연구질문 22 참조.

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경계하고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 군대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직”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d. 공동 사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에게 혼동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엄격히 규정된 특정 조건에 따라 로고의 공동 사용이 가능한 때에, (상대적으로 큰) 표장 자체는 보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 무력충돌 시에는 결코 다른 기관의 로고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용된 로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공동 사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어떠한 혼란이 발생하면 바로 잡기 힘들고 결국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저해될 것이다. 혼란을 방지하는 실질적 수단은 두 기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간결한 문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e. 장비에 로고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2003년 최소 요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건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하며 대중에게 혼동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앞의 조건과 필요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같은 점에서 건물과 차량, 기타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로고의 공동 사용은 분명 그러한 혼동을 야기할 것이며 무력충돌 시라면 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 외부 파트너가 자체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NS에 차량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제공할 경우, 외부 파트너는 차량의 표지를 가리거나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f. 로고의 공동 사용은 중립, 공평, 독립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그리고 국제적십자운동의 일원으로서 NS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 때에 허용된다. 이 조건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외부 파트너가 지니는 대중적 이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로고의 공동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복잡한 결과를 생각한다면,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파트너의 명칭만 언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앞서 언급한 조건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 또는 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미지에 대한 존중이 위협당할 때, NS는 해당 로고의 공동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는 로고의 공동 사용을 수용한 조건이 변경될 경우, NS가 언제라도 그 협약(또는 적어도 로고의 공동 사용에 관한 부분)을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외부 파트너와의 대화

파트너와 협약을 논의할 때 NS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중립, 공평, 독립 유지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외부 파트너가 단독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양 기관의 상호 보완적 역할과 함께 NS의 부가 가치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NS는 파트너에게 본 질문을 통해 밝혀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 파트너에게 표장/로고의 사용과 관련된 NS의 의무를 인식시키고 그 의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은 NS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고무적인 몇몇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 제정된 USAID 표지규칙은 USAID 로고의 사용을

중단하는 근거로 중립성과 일반 대중의 인식을 명시하고 있다. USAID는 “필수적 표지가 국제적 중립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ICRC의 염려를 덜기 위해 추가적 추정에 근거한 예외 사항을 덧붙였다.”<sup>204</sup>고 언급한다. USAID는 지난 25~4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보다 엄격한 “식별” 요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USIAD의 이 문제는(국제적십자운동에 긍정적인 쪽으로) 다른 주요 공여단체에 대해서도 실질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4 국제개발처(USAID), 22 C.F.R. Part 226 [규정 226], RIN 0412-AA55, 미국 NGO에 대한 지원 행정; 표지요건, 2006년 1월 2일 Part A: 일반 논평, p. 18. 구체적으로 표지규칙 226.91(아)(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26.91(가)~(마)에 언급된 표지 규정은 다음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 내재적으로 독립이나 중립의 성격을 띤 프로그램과 자료의 그 **내재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된 경우**.(예: 선거 모니터링이나 투표, 유권자 정보 연구와 같은 프로그램과 자료; 정당 지원이나 대중 정책 지지나 개혁; TV와 라디오 방송, 신문기사, 논평)  
 - 회계 감사, 보고서, 분석, 연구, 자료 또는 조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정책 제언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  
 - **국제법과 충돌하는 경우**.” (강조 추가)

## 21

자국의 영토 내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참여 적십자사(PNS)의 표장/적십자사 로고의 사용에 관한 주재 적십자사(ONS)의 역할은 무엇인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26조~27조, 제53조, 제54조

AP I 제9조(2)(나)

AP III 전문 제2단락과 제8단락

국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인도와 보편)

1921년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1호 “각국 적십자사 간의 관계”

1938년 제16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7호 “각국 적십자사 상호간 관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1)과 제32조

## 권고사항

1. 일반적으로 IHL 이행을 위한 주재국의 국내법은 표장(보호수단과 표시수단) 사용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능한 다음 권고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가지고 국내법을 해석 및/또는 적용해야 한다.
2. ONS는 단지 PNS가 사용하는 표장/로고를 이유로 그 원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3. ONS가 PNS의 원조를 받아들인다면, PNS 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한 그 표장/로고 역시 수용해야 한다.
4. PNS 요원의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ONS는 주관기관과 협의 하여 해당 표장 및/또는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할 수 있다.
5.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적십자운동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언제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해외 원조의 수락 여부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분석

### 서론

원칙상, 그리고 1921년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1호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PNS는 사용하려는 자체 표장 문제를 포함해 ONS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NS의 동의가 정확히 어떠한 성격인지 알아 보고, PNS의 표장 때문에 ONS가 PNS의 원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자신의 표장이 아닌 다른 표장을 사용하는 PNS에 대한 동의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을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의 범위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NS의 보호적, 표시적 목적적 목적을 위한 표장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유일한 예외적 상황은 NS가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함으로써 보호 목적의 표장 사용을 승인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가와 무관하게 당해 군 의무대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해야 하며, 1921년 결의 제11호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의 조율 메커니즘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되는 내용

1921년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11호 제1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외국에서 분과, 대표단, 위원회, 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해당국 NS 중앙위원회와 자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없이는 외국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으며,<sup>205</sup> 특히 특히 적십자의 명칭과 표장의 사용에 관한 한 더욱 그러하다.”

AP III 전문 제8단락은 1921년 결의 제11호에서 도출된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원칙을 다른 방식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 이 단락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적십자사는 해당 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활동이 행해지는 국가 및 경유하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서도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 일반적 고려사항

다음 고려사항에 주목한다.

- 적십자, 적신원, 적수정은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는 표장으로 지위상 동등하며 항상 중립적 상징으로 간주해야 한다.
- 공인된 표장의 사용을 반대하는 어떠한 결정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205 결의 제11호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적십자회의의 후속 결의가 채택되었다. 적십자사가 “외국에서의 어떤 활동”을 한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결의는 1938년 16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

- 모든 NS는 자국법에 구속된다. 물론 여기에는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을 사용하도록 NS에게 부여된 승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ONS가 PNS에게 자신의 표장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국내법을 어기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허용은 어떠한 것이라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 주재국의 국내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PNS의 표장사용을 관장하는 것 역시 (ONS의 의견이 아닌) 이 법이다. PNS가 사용하는 표장을 바꾸고, 이 과정에서 주재국 국내법에 위반할 것을 ONS가 요구하는 것을 승인하는 어떠한 관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 것이다(아래 참조).

### 관행에 기반한 해석

ICRC의 기록문서에 따르면, PNS의 표장이 ONS에게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특히 PNS의 표장을 이유로 ONS가 원조를 거부한 경우나, PNS에게 표장을 바꿀 것을 조건으로 자국 영토에서의 원조활동을 수락한 경우는 드물다).

일례로 ONS가 특정 PNS에게 특정 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안전상의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ONS가 PNS의 존재와 활동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결코 아니었다.

이처럼 실제의 근거 사례가 거의 없을 경우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 이처럼 근거 사례가 드물다는 것은 ONS가 자국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PNS의 활동에 동의할 때에는 PNS의 표장도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주재국 국내법에 근거해 발생할 수 있는 앞서 언급된 어려움 이외에, 이 원칙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인도주의적 구호요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표장의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하는 것이다.<sup>206</sup>

##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1921) 결의 제11호과 AP III 전문의 8단락에 기반한 해석

### A. 1921 결의 제11호

결의 제11호는 “특히 적십자의 명칭과 표장의 사용에 관한 한” 주재국 NS의 “동의”(agreement)가 있을 경우에 한해 PNS는 대외 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말은 ONS는 PNS가 자국의 영토에서 활동해야 할 때 PNS에 사용하는 표장을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결의 제11호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구호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ONS는 PNS의 원조 제안을 선의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제안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필요를 최대한 중시하며 국제적십

206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주권기관이 또는 주권기관과 ONS 간의 논의 후에 이러한 권고를 할 수도 있다.

자운동 구호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릇된”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PNS의 표장이 ONS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된다. 고려해야 하는 유일한 기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원조의 효율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NS에 대해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보편’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해,<sup>207</sup> ONS가 자국영토 내의 PNS 주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PNS에 대해 표장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어 보인다. 표장 자체의 동등한 지위 역시 동일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 제11호에 언급된 동의 외에 GCI 제53조와 제54조(와 이 조항을 실행하는 표장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ONS가 아닌 국가(일반적으로 정부부처)가 표장 사용에 관한 최종 통제권을 가진다(아래 참조).

## B. AP III 전문 제8단락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제 협약을 해석하는 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약 제31조(1)에 따르면,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조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인도주의적 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무력충돌 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제3추가개정서 해설서>는 “그 전문에서 일반적으로 본문의 이론적 근거와 그 목적 및 목표를 가능한 한 확실하게 명시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208</sup> AP III전문 제2 단락은 다음과 같이 의정서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그 보호적 가치와 보편적 특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술한 규정[식별표장의 사용에 관한 GC와 AP 규정]을 보충하기를 희망하며...”

<제3추가개정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적십자와 적신월이 무력충돌과 재난 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는 보편적 상징이지만, 제한된 지리적 상황에서 그러한 지위가 항상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 특정 국가는 이 두 표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자격을 부여받기를 원한다.

207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4조(9) 참조.

208 <제3추가개정서 해설서> 전문, p. 179.

따라서 전문의 제2단락은 AP III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를 명시한다. AP III는 특히 기존 표장이 정치나 종교적 함축성을 띠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운영적 배경하에, 식별표장의 가치를 강화할 표장을 추가로 채택함으로써, 제네바협약과 첫 추가의정서 2개를 보완하고자 한다.”<sup>209</sup>

AP III 채택의 주요 목표는 기존 표장이 종교나 정치적 함축성을 띠는 것으로 여겨져 이 기존 표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AP III 전문 8단락을 의정서의 목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조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할 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체결이나 채택 전의 준비 작업과 체결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sup>210</sup> APIII 채택 이전에 전개된 협상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국가는 AP III 전문 제2단락에 기술된 표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한편 AP III의 본문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지나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물론 일부 국가는 AP III의 채택 시기를 부적당하다고 파악해, 그 채택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논리적 결론을 말하자면, ONS와 PNS 양측은 함께 수용할 만한 공인된 표장을 선택하기 위해 선의를 토대로 협력해야 하며, ‘인도’라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ONS와 PNS 당해국의 표장 관계법령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다음의 내용 참조). 이는 또한 ONS가 표장만을 이유로 PNS의 원조를 거절함으로써(또는 PNS의 표장을 이들의 활동에 대한 동의 유보의 근거로 삼으면서) 의정서의 목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AP III를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 ONS 자국의 관계 법령에 관한 쟁점들

GC의 모든 계약국이 자국 국내법에 승인된 표장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만약 공인된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반드시 GC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든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다수 국가들의 표장 사용과 보호에 관한 국내법에는 NS가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NS만이 해당 표장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는 극히 드문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는 (PNS를 포함해) 어떤 다른 단체도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211</sup> 그러나 이 같은 법이 제정된 이유는 입법자가 자국 영토내에서 PNS(또는 ICRC나 국제적십자사연맹)의 활동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자국에서 PNS의 표장 사용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니다.

209 <제3추가의정서 해설> 전문 제2단락, p. 180.

21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참조.

211 이 결론은 ICRC 자료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표장 사용에 관한 국내법을 연구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PNS에 의한 해외에서의 표장 사용은 항시 제네바협약과 (해당 시) 추가의정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과 주재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가의 관할 정부부처는 표장이 PNS에 의해 오용되는 경우 언제나 개입할 수 있다(사실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주재국의 이러한 권한은 PNS가 어떠한 인정된 표장, 즉 동일한 지위와 의미를 지니며 동일한 보호와 존중을 부여하는 어떠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 국내법이 PNS의 표장사용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 국내법이 장애로 작용할 때에는 PNS의 개입 목적 그 자체를 저해하거나 인간의 고통에 대해 국제적십자운동의 구호활동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 적용상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의 사용

끝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NS의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 사용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 NS가 자국 군 의무대(또는 다른 국가의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면<sup>212</sup> PNS(또는 심지어 주재국)의 승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 활동하는 NS 소속 의무 부대와 요원이 AP I에 따라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질문은 본 연구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213</sup>

212 GCI 제26조와 제27조, AP I 제9조(2)(나) 참조.

213 NS가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질문 14 참조.

## 22

## 적십자사 로고(또는 표장)를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구호품에 붙일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26조와 제44조 1단락

API 제8조와 제18조(1)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0조와 제27조

## 권고사항

1. 의료장비 또는 의료용품을 제공하는 NS가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을 때, “의료장비”나 “의료용품”의 요건에 맞는 구호품에 한해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표장의 표시적 사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 운송수단이 NS가 소유하거나 이를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호품의 탁송을 위해 사용되는 운송수단에는 NS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NS 로고를 탁송하는 구호품의 내용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호품이 포함된 소포물에 NS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소포의 내용물, 즉 개개의 구호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NS가 이 물품의 사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분석

## 서론

NS에 의한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 간의 구분이 다시 한 번 분석의 핵심이 된다.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은, IHL이 요원, 부대, 운송(특히 의무요원, 시설, 운송수단) 등 특정 범주에 부여하는 특별한 보호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이다. 표시수단으로서의 표장은 그것을 사용하는 요원 및 물품과 NS운동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sup>214</sup>

214 GC I 제44조 제1단락. 연구의 서론에 나온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 표장의 보호적 사용

GCI 제44조 제1단락은 “각국 적십자사 및 제26조에서 지정하는 기타의 단체는 이 협약의 보호를 부여하는 식별표장을 본 단락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NS가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유사한 사항을 정하는 다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대 및 기관, 요원 및 물자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sup>215</sup>

API 제18조(1)은 NS 소속을 포함하여 민간 의무대, 의무 수송수단까지 보호표장의 사용 권리를 확대한다.<sup>216</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0조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각국 적십자사와 관련해 군 의무대의 지시를 따르는 병원과 구급차, 병원선, 환자수송기, 의료용품 창고뿐만 아니라 이에 속한 민간 병원이, 그에 맞게 공인되고 당국에 의해 표장 사용이 허락될 때 여기 [의무대 및 수송수단]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호표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구호품은 추가의정서 해설에서 “진료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용품, 특히 외과용 도구뿐 아니라 중장비(예: 수술실 장비나 심지어 야전병원 전체까지) 또는 단순히 의약품까지”로 분류하는 것들이다.<sup>217</sup>

## 표장의 표시적 사용

표장이 표시수단으로 사용될 때 이는 표장을 사용한 요원이나 물품이 국제적십자운동과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적십자운동의 중립, 독립, 공평, 인도주의적 행동을 상징한다. 따라서 (i) 물품을 제공하는 NS가 자신들의 로고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구호품의 출처에 이목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성과 (ii) 구호품을 받는 이들이 국제적십자운동의 일원이라는 암시를 주지 말아야 할 필요성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호 탁송물과 관련하여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7조 및 관련 해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15 GCI 제44조 제1단락.

216 API 제8조(마)에서 정의한 “의무대”는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한 수색, 수송, 수술, 진단 또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치료 등 의료목적 및 질병예방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단체 및 기타 부대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병원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수술 센터, 예방의료분부 및 기관, 의료창고와 의무대의 의료 및 의약품창고 등을 포함한다. 의무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상시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다.” API 제8조(사)에서 정의한 “의무차량”은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상시적이든 임시적이든 충돌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통치하에 있고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217 <추가외정서 해설> API 제8조(바) 382. 해설에서 실제 “의무장비나 공급물품”이 언급된다. 연구절문 9 참조.

“각국 적십자사는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를 위해 육해공을 통해 탁송된 구호품을 표시하기 위해 명칭이나 약자와 함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각국 적십자사는 어떠한 오용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권리는 구호 탁송물의 출발지를 확인하기 위해 **탁송된 구호품 자체에만** 적용되며, 이용된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조 추가)

이 질문에서 “탁송물”이란 용어는 “탁송된 물품 묶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표장이 날개의 물품이 아닌 물품 묶음에 부착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호품에 대한 표장의 표시적 사용에는 두 가지 제약이 있다.

- NS 로고는 구호품 탁송에 이용된 운송수단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NS가 소유하거나 이를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고 운행되는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NS 로고를 탁송된 구호품의 내용물에 사용할 수 없다. 구호품이 담긴 소포에 NS 로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소포의 내용물, 즉 날개의 구호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3

## 각국 적십자사는 어떤 상황에서 표장과 국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GC II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43조

GC III 제18조, 제33조, 제40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3조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독립, 중립, 공평)

### 권고사항

1. 국제적 무력충돌 시 NS가 자국의 군 의무대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국기와 보호 표장을 NS 요원의 제복과 부대, 장비, 운송수단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2. NS 요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때에
  - 이들은 표장과 국기를 자신의 제복과 장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들이 부대와 운송수단에 표장 이외의 어떠한 기도 지속적인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국제적 무력충돌 시 중립국 NS가 적절한 승인하에 충돌당사국에 의무요원과 의무대를 지원하는 경우, 이들이 의무대를 지원하는 교전국의 군당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자국의 국기와 보호표장을 요원의 제복과 장비, 그리고 이들 부대와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교전국의 국기도 NS 부대와 운송수단에 보호표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NS 요원이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때에

  - 이들은 자신의 제복과 부대, 장비, 운송수단에 국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들이 의무대를 지원하는 교전국의 국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자국의 군 의무대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NS 요원과 부대는 국기와 표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당해 의무대의 관행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 NS 요원과 부대는 국기와 표장의 동시 사용을 피함으로써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수호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따라서 충돌당사국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5. 원칙상 NS는 표시적 목적의 표장(NS 로고)과 국기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함께 사용하면 표장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NS의 중립, 독립, 공평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게 된다.
6. 그러나 NS는 평시에 자국 영토 내에서 특정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서비스 수행에 있어 국가 당국의 협력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 NS 로고와 국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NS(로고)와 국가(국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는 NS와 공공당국을 지속적으로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분석

### 보호적 사용

GC는 NS가 국기(깃대에 게양되는 것과 같은 실제 기)와 보호표장이 사용된 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다. 여기에는 자국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NS의 의무대와 의무시설을 표시하는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GC I 제26조).<sup>218</sup> 국기와 표장의 동시 사용은 병원선과 소형 환자수송기를 표시하기 위해 허용된다(GC II제43조). “국기”와 표장의 동시 사용에 관해서는 환자수송기 규정에 기술되어 있다(GC I 제36조). 이 규정에 따라 자국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NS의 의무대와 운송수단은 국기와 표장이 사용된 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NS 직원들이 자국의 군 의무대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이들의 제복은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들 NS 요원이 “군관계 법령에 따라”(GC I 제26조 참조) 군 의무대의 군복을 착용한다면 여기에는 배지와 같은 국기를 활용한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다.

GC III 제18조와 제40조에 따라 군 의무대에서 활동하는 NS 요원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억류자는 GC III의 모든 규정에 의한 이익을 향유한다(GC I 제28조) 조문을 근거로 국적을 나타내는 국적이 표시된 기장을 보유하고 착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GC I 제42조는 “적의 수중에 들어간 의무대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 이외의 기를 게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sup>218</sup> GC I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협약에서 정하는 식별기는 본 협약에 의하여 존중되는 권리를 가지는 의무대 및 의무시설로서 군당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이동부대는 고정시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부대 또는 시설에 속하는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전기의 국기와 더불어 게양할 수 있다.”

총돌당사국을 지원하는 중립국의 NS 의무대(GC I 제27조)은 표장이 사용된 기를 게양할 수 있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교전국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자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또 이들이 포로가 되지 않은 때에는 교전국의 결정의 결정에 따라 이들이 의무대를 지원하는 교전국의 국기를 사용할 수 있다.<sup>219</sup> 중립국 NS의 의무요원은 자국 군대 또는 이들이 지원하는 총돌당사국 의무대의 군복을 입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 당사국의 국기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다.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NS가 표장과 함께 국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국내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 조약법이나 1991년 적십자표장 사용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군 의무대에 소속된 NS 요원과 의무대, 운송수단은 표장과 함께 국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확립된 관행을 계속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모든 당사자에게 NS가 중립과 독립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힘들 수도 있다(특히 NS 부대가 자국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NS가 국가의 군 부대에 대한 보조기관 역할 이외의 다른 역할을 할 때에는 국기를 표장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표시적 사용

NS 로고를 국기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금지나 승인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NS는 그 중립과 독립 그리고 표장의 중립적 성격을 훼손할 가능성을 감안해, 그러한 동시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표장을 표시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국내법에 관계되는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주요 지침으로 한다.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도입(해당 규칙의 제3조)과 GC I 제44조는 표장 사용은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표장과 국기 간의 연관성이 지나치게 긴밀해지면 표장 사용에 국가주의의 성격이 가미될 것이고 당해 표장과 NS 모두의 가치를 저하시켜, 어쩌면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평시의 이러한 합동 사용은 국내 폭력 또는 무력충돌 시 NS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일반적 목적을 위해 NS와 자국 정부와의 지나친 긴밀함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NS 로고는 국기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일반 규칙의 예외도 인정된다. NS는 평시에 자국 영토에서 특정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서비스 수행에 있어 국가당국의 협력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위해 NS 로고와 국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외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219 GC I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7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한 교전국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된 중립국의 의무대는 그 교전국이 제42조에 따라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시에는 언제나 그 교전국의 국기를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와 더불어 게양하여야 한다. 이들 의무대는 책임 있는 군당국의 반대의 명령이 없는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록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NS가 국가의 구급차 및 헌혈 서비스 등 국가를 대신해서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고 NS가 배송하는 구호품 탁송.<sup>220</sup> NS를 통해 해외로 배송되는 이러한 구호품에는 NS 로고와 함께 국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탁송물에 “(누구의) 아낌없는 지원”과 같은 설명문구를 표시할 수는 있다.
- NS가 재해 구호 활동에서 공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할 때,
- NS 자국 정부가 NS의 활동이나 IHL 보급을 위한 토론회 등의 행사를 후원할 때 해당 활동이나 행사와 관련된 홍보 및 기타 보도 자료,
- 국경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진행되는 행사,

국내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NS(로고)와 국가(국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예로 “X NS가 조직한 국가 구급차 서비스”나 “Y 적신월사의 후원을 받는 비상사태 서비스” 또는 “...가 공동으로 준비한 토론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NS와 정부당국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20 구호 탁송물에 대한 표장 사용은 연구결문 9와 22를 참조.



## 제1부

### C. ICRC에 의한 사용

#### 24

어떤 상황에서 ICRC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건하에 ICRC는

- 모든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 적신월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 법령적 근거

제네바협약 공동조항 제1조

GC I 제44조 제3단락

AP III 전문 10단락과 제4조

국제적십자운동장관 제3조(2)③, 제5조(2)(사), 제6조(4)(차)

ICRC 정관 제3조(2)와 제4조(1)(사)

### 권고사항

1. 대개의 경우 ICRC가 표장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ICRC의 직원이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예외적 상황에서**(적십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특정 표장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ICRC는 **잠정적으로** 보호수단으로든 표시수단으로든 표장의 사용을 포기할 수 있고 무장보호의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다.<sup>221</sup>

그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ICRC는 **잠정적으로** 보호수단으로든 표시수단으로든 표장의 사용을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CRC의 억류자 방문 또는 ICRC 상호 계약, ICRC 협력 활동, ICRC 보급 활동, ICRC 원조와 현지 활동, ICRC 언론 인터뷰, 적십자 메시지에 관해, ICRC가 후원하거나 ICRC 수복한 장소와 시설, 장비에 대해, 그리고 ICRC 차량이나 승용차, 항공기, 보트, 선박 등 기타 운송수단과 관련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2. ICRC는 AP III에 따라 적수정 표장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적십자 표장의 사용이 NS 직원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수정은 ICRC의 활동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적수정의 사용을 결정하기 전에 적수정의 중요성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평가한다.

3. ICRC 정관에 따라, 그리고 AP III 전문 제10단락에 따라, ICRC는 표장이나 명칭에 대한 변경 의사가 없다.
4. 비록 예외적 상황에 한하지만, 운영상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ICRC는 적신월 표장의 잠정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 분석

### 서론

분석에 앞서 다음 두 가지를 우선 다룬다.

- 적십자 표장의 중요성
- 식별표지 ICRC 간의 역사적 관련성

a. 1863년 국제적십자회의는 군 의무대의 **중립적 지위**와 이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를 의미하는 시각적 표현으로 적십자 표장을 채택했다.<sup>222</sup>

1863년 국제적십자회의의 예비 문서에서 자원봉사 간호원과 군 의무대를 위한 식별표지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채택된 표지는 스위스 영세 중립국 지위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스위스 연방의 국기를 반대로 작성하여 만들었다.<sup>223</sup>

b. ICRC가 직접 적십자 표장을 디자인하고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CRC는 “이론상”<sup>224</sup> 1949년 GC 전까지 이 표장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제44조 제3단락)에 따르면, “적십자위원회는 전시에 수행하도록 요청되는 일의 중요성을 감안해 어느 누구도 위원회의 표장 사용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sup>225</sup>

1949년 GC는 협약은 ICRC가 배정한 다수의 중요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ICRC가

221 무장호위가 수반되거나 다른 형태의 무장 보호하에서 ICRC의 표장 사용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26 참조.

222 “논의에 따라 루이 아피아의 제안(중립을 의미하는 단일한 식별표지로서 원판에 백색 원장)이 흰색 원장에 적십자가 사용될 것이라고 수정된 이후 채택되었다.” <Compte rendu de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réunie à Genève les 26, 27, 28 et 29 octobre 1863 pour étudier les moyens de pourvoir à l’insuffisance du service sanitaire dans les armées en champagne (군 작전 시 의무대 부족 요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위해 1863년 10월 26~29일에 개최된 국제회의의 회의록)>, 제네바, 임프리메리 피크, 1863, p. 119, 프랑수아 뷔농 인용,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Red Cross, Red Crescent, Red Crystal)>, ICRC, 제네바, 2007년 5월, p. 6.

223 GC I 제38조 제1단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스위스 연방의 국기를 반대로 작성한 백색 바탕에 적십자의 문장을 군대의 의무대의 표장 및 식별기장으로서 계속 사용토록 한다.” 적십자의 신택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1906년 군대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ies in the Field) 제18조에서 처음 등장했다. 프랑수아 뷔농,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Red Cross, Red Crescent, Red Crystal)>, ICRC, 제네바, 2007년 5월, p. 8 참조.

224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5.

225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p. 335~336.

유보조항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sup>226</sup>

“국제적십자사 조직과 적법하게 승인된 요원들은 백색 바탕에 적십자 표장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ICRC 정관 제3조(2)는 ICRC의 표장이 “백색 바탕에 적십자”라고 규정한다. AP III 전문의 제10단락은 ICRC가 현재의 명칭과 표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한다.

ICRC가 자신의 표장이나 로고를 변경할 의도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모든 활동에서 백색 바탕에 적십자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이유에 따라 임시적으로 표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수정 또는 적신월 표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도 있다.

## ICRC가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거나(필요하다면) 적수정 표장을 대신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상황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립과 독립, 인도주의적 활동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존중받고 있다. 적십자 표장의 사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 몇몇 사례에 한하고, 대부분의 경우 ICRC가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때로 ICRC는 조직과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이 표장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은 표장의 보호적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ICRC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a. ICRC와 그 표장이 “부유한” 조직을 대표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ICRC가 흔히 일어나는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다른 식별표시에 의존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 ICRC는

- 보호수단으로든 표시수단으로든 표장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포기하고/하거나
- 무장보호의 선택을 고려한다.<sup>227</sup>

b. ICRC 그리고/또는 그 표장이 직원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어떤 함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ICRC는 보호수단으로든 표시수단으로든 표장의 사용을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CRC의 억류자 방문 또는 ICRC 상호 계약, ICRC 협력 활동, ICRC 보급 활동, ICRC 원조와 현지 활동, ICRC 언론 인터뷰, 적십자 메시지, ICRC가 후원하거나 ICRC 수복한 장소와 시설, 장비, 그리고 ICRC 차량이나 승용차, 항공

22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6.

227 무장호위가 수반되거나 다른 형태의 무장 보호하에서 ICRC의 표장 사용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26 참조.

기, 보트, 선박 등 기타 운송수단과 관련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ICRC는 GC I 제44조 제3단락에 의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도록 “단지” 승인 받는 것뿐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지 운용상의 필요성에 기반한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에 따른 결정은 언제나 현장에서 접근법상의 일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AP III 제4조는 ICRC와 적법하게 승인된 그 요원이 “예외적 상황에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수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ICRC는 적수정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 예외적 상황의 존재
- 작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

표장의 사용이 ICRC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요소가 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적수정은 ICRC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도주의적 행동이 보다 폭넓게 수용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AP III과 적수정 표장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보급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은 채 특정 상황에서 적수정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 사실상 무력충돌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ICRC가 적수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전투원과 민간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새로운 보호수단으로서 적수정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 NS, ICRC,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승인받은 표장의 주 사용자이므로 AP III과의 적수정의 보급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228</sup>

## ICRC가 적신월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상황

적신월을 사용하기 전에 ICRC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세 가지 보호표장은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
- ICRC는 GC I 제44조 제3단락과 AP III 제4조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적십자를,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 하에 적수정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 ICRC는 적신월 사용에 대해 명시적 승인은 얻지 못했다.
- 그럼에도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적신월 표장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

예외적으로 적신월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특정 ICRC 장소/운송수단에 대해, 또는 특정 활동
- 국가적/대표 차원 등 특정 맥락에서 폭넓게 사용.

전자의 경우, ICRC의 대표단장은 AP III 제4조를 적용해, 즉 예외적 상황에서 대표단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신월 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적신월의 사용은 특정기간, 특정 ICRC 장소/운송수단 및 활동에 한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특정 맥락에서 적신월 표장의 폭넓은 사용에 대한 승인 결정은 NS와 충돌당 사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ICRC 본부의 적절한 권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명백히 ICRC는 관할당국과 그 결정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5

적십자사 표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로고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표장과 로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3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조, 제4조, 제5조

## 권고사항

1. ICRC 로고는 “원형” 형태이다. 즉 두 개의 동심원 안에 적십자가 있고, 그 동심원 사이에 “COMITE INTERNATIONAL GENEVE”라는 글자가 그 아래에 적합한 약자(CICR, ICRC, MKKK 등)와 함께 표기되어 있다.
2. ICRC 로고는 표시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3. ICRC는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자신의 로고(표시적 목적)와 적십자 표장(보호적 목적)을 함께 사용할 자격이 있다.

## 분석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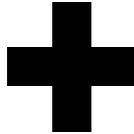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표장과 로고 간의 일반적 차이점은 이미 연구의 서문에서 기술한 바 있다.<sup>229</sup>

다음 지문은 그 디자인과 사용상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표장과 ICRC 로고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229 연구의 서문에 나온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 표장

ICRC가 사용하는 적십자 표장은 그 자체가 분명한 표장이다. 즉, 백색 바탕에 적십자는<sup>230</sup> 수정이나 추가 없이 원형이어야 한다.



적십자 표장은 1864년 제네바협약에서 채택되었고 후속 협정을 통해 승인되었다. ICRC는 적십자 표장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한 기관이다. GC I은 이 기관의 사용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C I 제44조 제3단락은 “국제적십자기관 및 적법한 승인을 받은 직원은 언제든지 백색 바탕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ICRC에게 표장의 사용에 있어 비교적 자유를 허용한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 따르면 “제네바협약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백색 바탕의 적십자로 이루어진 보호 표시는 변경이나 추가 없이 항상 원형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sup>231</sup> 교전 중에는 대형 표장이 보호를 위한 식별표지, 특히 요원, 차량, 보트, 선박, 항공기, 건물에 표시하기 위한 표지로 (대형 기장 형태로 기, 백넘버, 조끼, 앞치마 등에) 사용된다.

ICRC는 다음 목적을 위해 표장을 사용한다.

- 가로 세로 10미터 크기의 적십자 표장(건물군의 경우 표장들)을 통해 공중에서 건물이 식별되도록 한다.
- 항공기의 상단, 양 옆, 밑면에 적십자를 (가능한 한 크게) 그림으로써 지상과 공중에서 항공기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선체에 가능하다면 다른 표면에도 적십자를 (가능한 한 크게) 그림으로써 선박과 보트가 식별되도록 한다.
- 지붕에 적십자를 (가능한 한 크게) 그림으로써 ICRC 소유의 차량이 (무엇보다 헬리콥터에 의해) 공중에서도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230 ICRC의 적수정이나 적신원의 사용에 관한 논의는 연구질문 24 참조.

231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4.

이처럼 ICRC는 보호의 목적으로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형”(즉, 두 개의 동심원 안에 적십자가 있고, 그 동심원 사이에 “COMITE INTERNATIONAL GENEVE”라는 글자가 적힘)을 사용해왔다.<sup>232</sup>

## ICRC 로고

ICRC 로고는 ICRC “원형”과 그 아래에 적절한 약자(CICR, ICRC, MKKK 등)로 구성된다.



# ICRC

ICRC 로고는 표시용(따라서 상대적으로 소형)으로 사용된다. ICRC 간행물과 웹사이트, 명함, 홍보물, 광고지, 브로셔 등에 사용된다.

ICRC는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에 로고의 사용을 허가한다.

- 용지, 명함, 인사카드
- 브로셔, 전단지, 광고지, 포스터, 도서, 폴더 등
- 펜, 머그잔, 시계, 열쇠 고리, 달력, 문진, 명함꽂이, 핀 등 홍보물이나 경품
- 파워포인트 설명이나 슬라이드, 유인물
- 언론 보도 자료와 보고서 등 규격화된 문서
- 비디오, CD, DVD와 그 표지

ICRC가 로고(표시수단)와 대형 표장(보호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232 ICRC의 원형 사용은 그 기원이 1865년 7월로 거슬러간다. 귀스타브 모와니에와 앙리 뒤낭의 <3ème Circulaire: Le Comité International de Genève à Messieur les Présidents et les Membres de Comités de Secours aux militaires blessés dans les divers Pays (제3차 제네바 회담: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국제상설위원회)>, 제네바, 1985년 7월 31일. 이처럼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은 다음의 이유에 근거한다.

- ICRC는 특정 이유로 적십자 표장이 충돌의 당사자 일방과 연관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 ICRC는 특정 상황에서 모방이 보다 힘든 식별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적십자 표장을 오용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 무력충돌이 발생한 모든 상황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ICRC의 임무. 그 결과 ICRC는 고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별이 용이할 필요가 있다.

## 26

## ICRC가 무장보호에 의존할 때는 어떻게 표장을 사용하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1993년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5호 “인도주의적 원조의 무장 보호”

1995년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9호 “인도주의적 원조의 무장 보호”

## 권고사항

1. 무장보호에 의존하게 될 때, ICRC는 표장 사용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한다.
2.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ICRC(예: ICRC 호위대)는 충돌당사국들이 자신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ICRC와 무장보호단 간의 구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
3. 무장 보호를 활용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 ICRC는 충돌당사자에게 무장 보호의 선택 이유와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 ICRC는 특히 무장보호단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이들이 표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이들의 무장보호단 간의 구별이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 분석

## 서론

ICRC의 안전은 일차적으로 IHL 규정, 특히 표장 관련 규정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들 업무 수행을 위해 무장호위대를 활용하는 것은 ICRC에게는 매우 예외적인 수단이다. 실제로는 무기의 존재로 인해 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고, 적개심과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ICRC 직원의 안전이 위태롭고 표장의 보호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무장 보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ICRC는 무장보호를, 공공당국의 정규군(예: 군대, 경찰), 비정규군(예: 게릴라군), 국제적 군대(예: UN군) 또는 시설 경비업체에 속한 무장요원이 특정 장소에서(보안요원) 또는 이동하면서(호위단) ICRC 직원, 건물,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표장 사용 결정과 그 결과

무장 보호에 의존하게 될 때, ICRC는 표장 사용 여부에 대해 사례별로 결정하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 ICRC(예: ICRC 호위대)를 충돌당사국들이 식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ICRC와 무장보호단 간의 구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

무장 보호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면 ICRC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한다.

- 충돌당사자에게 무장보호의 이유와 그 의미, 즉 IHL이 부여하는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는 식별표자인 표장에 덧붙여 범죄로부터 무장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이들의 무장보호단 간에 구별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무장보호단 간의 구별을 위해, ICRC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무장경비자들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 이들은 표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호위군의 일원인 무장보호단은 표장을 사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요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때로 즉시 필요한 경우(예: 길 찾기), 비무장 호위자 1인(또는 그 이상)이 표장으로 표시된 차량에 동승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활용 가능한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제1부

### D. 다른 주체에 의한 사용

#### 27

국제기구(예: UN,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NATO)가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AP III 제2조와 제5조

UN 사무총장 고시 제9.7조

#### 권고사항

1. 국제기구(IO)는 표장(보호표장과 표시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sup>233</sup>
2. 하지만 IO의 명령 및/또는 통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의 의무대는 국가 과견대에서 징발하므로 IHL 규칙에서 승인하는 대로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3. IO의 명령 및/또는 통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다양한 군의 의무대는 특히 현장(병원 등)과 수송수단(구급차 등)에서 서로 다른 보호표장(예: 적십자와 적신월)을 이중 표장사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게시할 수 없다.<sup>234</sup> 따라서 동일한 현장이나 수송수단에서 서로 다른 표장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IO의 지휘를 따르는 국가 과견대를 AP III 가입당사국에서 징발하는 상황에서, IO 지휘부가 보호 목적으로 하나의 승인된 표장만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최선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작전지역에서 가장 친숙한 표장을 선택한다는 기준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5. 나아가 예를 들어 “UN”이라고 써있는 표식 등 IO의 식별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수정이나 추가 없이) 원형을 유지해야 하는 보호표장과 떨어진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둘을 구급차나 기타 의료용 차량 등의 같은 면에 두지 않는 것이다.

233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는 IO의 응급처치소 또는 구급차에 (작은 크기의) 표시표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예외는 평시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GC I 제44조 제4단락에서 명시한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질문에 대한 분석과 연구질문 31 참조.

234 연합군으로 활동하는 군의 의무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승인된 하나의 표장을 선택하는 문제는 연구질문 3 참조.

## 분석

### 서론

IO는 제네바협약의 공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다.<sup>235</sup> 따라서 IO는 우선적으로 GC 가입국 군 의무대를 위한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GC I 제44조 1단락에서는 동 협약이 보호하는 요원에 의해서 그리고 동 조약이 보호하는 대상에게만 표장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표장은 GC와 AP가 무력 충돌의 희생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요원에게 제공하는 보호를 가시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파견 국군부대로 구성되어 IO의 보호를 받고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와 IO 자체 및 그 직원은 구분해야 한다.

이 질문에서 “IO 군대”라는 표현은 IO의 명령 및/또는 통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를 말한다.

### “국제기구의 군대”

#### “IO 군대”는 국가파견대로 구성된다

“IO 군대”는 IO의 명령 및/또는 통제에 따라 움직이지만 국가파견대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군대를 회원국의 국군에서 징발하는 한, GC와 AP에서 명시하는 권리와 의무는 유효하다. 따라서 IO가 관장하는 국가파견대의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은 GC와 AP의 틀 안에서 자국 군대 의료부대가 사용하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sup>236</sup>

#### “IO 군대”가 다른 표장을 사용하는 국가의 파견대로 구성된다면, 이 부대는 어떤 보호표장을 사용해야 하는가?

IO의 명령 및/또는 통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군 의무대는 각자 자국에서 선택한 표장을 게시해야 한다. 즉 그 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IO가 지휘하는 작전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표장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AP III 제2조(4)에 명시되었듯이, “보호를 제고할 수 있을 경우” AP III 가입국 의무대는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이미 선택된 표장 외에 다른 표장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5 이 질문에서 “IO”는 국제기구들(예. 유엔기관) 지역 기구들(예.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NATO) 상관없이 모든 정기간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236 예를 들어 유엔군에 관한 한 <사무총장 고시>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유엔군은 어떤 경우에도 적십자와 적신원 표장을 존중한다. 이러한 표장은 의무대와 의무시설, 의무요원 및 물자를 표시하거나 보호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적십자나 적신원 표장의 오용은 금지된다.”

AP III 제5조는 “유엔군”에 대해서 “국제연합 후원 하에 있는 작전에 참가하는 의무요원(…)은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237</sup> (강조 추가)

AP III의 제2조(4)나 제5조 모두 이중표장(예: 적십자를 적신월과 함께 게시)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sup>238</sup> 두 가지 표장을 조합하면 사실상 새로운 표장 하나가 생기게 되며, 이 표장은 보호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sup>239</sup>

더불어 AP III의 제2조(4)나 제5조가 충족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IO의 지휘부가 보호 목적으로 공인표장 하나만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표장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은 선택된 표장이 작전 지역에서 가장 친숙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 가지 표장을 선택하는 결정은 해당 작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IO 지휘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리게 될 것이다. 아직 AP III이 여러 나라의 비준과 가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해당 국가의 국내법은 IO 지휘부의 공동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IO 식별표지와 보호표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sup>240</sup>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서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백색 바탕의 적십자로 이루어진 보호 표지는 변경이나 추가 없이 항상 원형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sup>241</sup> 고 명시한다.

따라서 IO의 식별표지 즉, “UN”이나 “ISAF” 등과 같이 문자로 된 표지는 보호표장과 별도로 사용하여 IO 표지와 보호표장으로 구성된 이중표장 사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표지와 보호표장의 사용이 이중표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를 구급차나 기타 의무차량의 같은 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당해 “IO 군대”와 동일한 상황에서 일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평한 인도주의 행위주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권고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언해야 한다.

237 나아가 AP III 제5조는 UN의 보호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군의 의무대가 표장을 바꿀 경우 여기에 AP III 제2조(4)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표장의 “임시적 사용”이나 “보호를 재고한다”는 요건을 적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을 주지해야 한다.

238 <제3추가개정서 해설>에서는 AP III 2(4)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조항은 통상적인 표장을 또 다른 표장 하나로만 교체를 승인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표장을 몇 가지 표장이 나란히 있는 조합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이런 결론은 ‘모든 표시표장’의 일시적 사용을 허용할 때 단수로 쓴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은 공인 표장의 중복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전 법에서 상당히 벗어난 일이다. 이런 과도한 해석은 [제2조의]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추가개정서가 표장의 사용과 준중에 대해 기존에 인정된 조건을 수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개정서 해설> AP III 제2조(4), p.190.

239 군 의무대에 의한 이중표장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2 참조.

240 AP I 제37조와 제38조에서 언급한 “UN의 식별표장과 표지”가 이 절문에서 “IO의 식별표지”가 의미하는 사례다.

241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4.

## 특별사례:

### GCI 제44조 제4단락에 의거하여

### IO의 구급차와 응급처치소가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본 분석의 서론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GC의 공식 당사자인 IO는 없다. 따라서 어떤 IO도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IO와 그 기관이 합법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GC I의 제44조 제4단락에 입각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예외적 조치로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표장은 국내법에 따라 또한 각국적십자사(적신월사)의 어느 하나로부터 명시의 허가를 받고 구급차로서 사용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또한 부상자 및 병자에 무상으로 치료를 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충당되는 구호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시에 사용할 수가 있다.”<sup>242</sup>

분명히 이런 예외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사용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이러한 예외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sup>243</sup>

- a. 표장사용은 평시에만 허용된다. 한 국가가 충돌당사국이 되는 즉시 이러한 표장은 해당 국가의 영토 전역에서 사라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긴장 상황이나 무력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용은 관할 NS의 승인을 받아서는 안된다.
- b. 이런 표지의 사용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표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보호수단(공식기관의 동의, 감독 등)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으나, 표장의 사용을 확대해서는 안된다.
- c. 표장을 사용하려면 NS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암묵적 승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법령이 허용하는 한(위의 ‘b’ 참조), 승인 권한을 가진 NS만이 이러한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른 단체는 심지어 국가라고 해도 승인 권한이 없으며 NS 스스로도 이를 위임할 수 없다.
- d. 구호소(또는 구급차)는 전적으로 환자와 부상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치료비 납부를 조건으로 치료가 제공되고 국제적십자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 정신이 유지되지 않으면 표장사용 허가는 철회될 것이다.
- e. 표장은 예외조치로만 사용될 수 있다. 명시된 사례 이외에 표장사용을 확대할 수 없다. 공공집회 및 대규모 집회에 있는 응급처치시설, 사고의 경우에는 주요 도로를 따라 간

242 GCI 제44조 제4단락에 따라 구호소와 구급차가 표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질문 31 참조.

243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p. 337~339.

격을 두고 설치된 응급처치소, 전동구급차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IO가 표장을 사용할 때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IO 기관은 자신의 응급처치시설(구급차)를 표시하기 위해 표장 대신에, “응급처치(First Aid)”라는 문구와 함께 녹색 바탕에 백색 십자가/백색 초승달과 같이 다른 표지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 “응급처치” 표지는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운영 환경에서 이 표지를 사용하면 해당 응급처치시설 및 구호활동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 간의 혼동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244</sup>

---

244 이 점에 관해서는 연구질문 18, 32, 46도 참조.

## 28

## 무장집단의 의무대가 비국제적 무력충돌 중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53조와 제54조

API 제8조(다), (마), (사),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편 제2장

AP II 제9조, 제11조, 제12조

## 권고사항

1. 무장집단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 충돌당사국(민간이나 군부)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해당 보호표장을 사용한다.

AP II가 적용되지 않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무장집단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이 해당 당국에 보호목적을 위해 표장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ICRC는 해당 당국에게 AP II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 분석

AP II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권한 있는 관계당국의 지도하에 흰색 바탕에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은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에 의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12조에 나오는 “식별표장”이라는 표현은 “보호표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추가 의 정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양 추가의정서에서 사용된 ‘식별표장’이란 용어는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된 표장만을 지칭한다.

제1추가의정서의 제8조(용어)(타): ‘식별표장’이라 함은 의무대 및 의무차량,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장비 또는 보급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될 경우의 백색 바탕의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을 의미한다.’

제12조는 AP II의 초안을 작성할 때 마련되었으며, 거의 동일한 정의를 토대로 채택되었다.”<sup>245</sup>

AP II는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용어는 비국제적무력충돌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 AP I 제8조(다), (마), (사)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246</sup>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AP I 제8조에서 정의하는데, AP I 의 제8조(마)에 열거된 “의료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배속/조직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의료목적”에 전적으로 배정되고 조직된 NS 요원과 부대, 차량은 AP I의 의미내에서 의료 요원과 부대, 차량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장집단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이용할 수 있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 “의무대,”<sup>247</sup>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sup>248</sup>

- “관할당국의 지시에 따라” 표장을 사용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에 의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245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34.

246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9조, 4663~4664;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11~4712;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 25, 28, 29, pp. 82~83, 95, 100.

247 무장집단의 의무대는 AP I 제8조(마)의 정의 안에서 “군 의무대”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 의무대”가 존중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AP I 제12조(2)에서 규정한 추가조건은 무장집단의 의무대에 적용되지 않는다.

248 AP II 제9조는 의무요원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AP II 제11조는 의무대와 의무차량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 충돌당사국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sup>249</sup>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은 오용과 위반의 방지 및 억제에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GC I 제53조와 제54조에서 유추하여 적용) 표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면밀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체제 당국이 관련 규정 모두를 충분히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당국은 적어도 간략한 감독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해야 한다. 표장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자발적이든 아니면 당국 측의 비능률로 인한 것이든 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에 따라 IHL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P II가 적용되지 않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장집단의 의무대가 보호목적의 표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관할당국에 청원할 경우, ICRC는 AP I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승인을 해줄 것을 당국에게 권장한다.

249 <추가개정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장을 효과적으로 존중하려면 표장의 사용에 대한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표장을 사용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식별표장을 통한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 관할당국의 식별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한 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각각의 책임있는 당국의 몫이다. 관할당국은 민간일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다. 법적인 정부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관할당국은 사실상 책임이 있는 당국이 될 것이다.

<추가개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46.

## 29

국군의 의무대나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 외의 단체,  
특히 비정부기구(NGO)가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표시하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24조~27조, 제44조, 제53조, 제54조

AP I 제8조(다), (마), (사),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9), 제2편 제2장

AP II 제9조~12조

## 권고사항

1.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sup>250</sup>(예: NGO)는 표장(보호 및 표시수단)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2. GC I 제26조에 따라 이런 민간단체가 자국 국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해당조직은 자국 정부로부터 자국 군대 의무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인정과 승인을 받았다.
  - 표장은 군 의무대를 보조하고 전적으로 의무대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고용된 조직의 요원, 부대, 장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이러한 요원, 부대, 장비는 소속 군대의 관할 아래 있고 해당군의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3. AP I 제9조(2)(나)에 따라, 충돌당사국이 아닌 자국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인정되는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기관의 요원, 부대, 수송수단을 충돌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은 전적으로 의료활동만을 수행한다.
  - 자국과 충돌당사국에게 활동에 대한 적법한 승인을 받는다.

- 해당 기관은 총돌당사국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 이러한 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가의 적국은 기관의 소속정부가 기관의 활동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보 받았다.
  - 총돌당사국은 지원수락을 적국에게 통보하였다.
4. AP I 제9조(2)(다)에 따라, “공평한 국제인도주의의 단체”는 편견배제의 원칙을 존중하고, 성격상 인도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할 경우 AP I 제9조(2)(나)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상기 참조)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속 정부로부터 활동을 정식 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AP I에 따라서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의무요원, 의료부대, 의무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 총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
  -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
6.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현지에 있는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호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 총돌당사국의 정부당국(민간이나 군부)이나 무장집단 당국(민간이나 군부)인 관할당국으로부터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
  - 총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의 통제 하에 해당 보호표장을 사용한다.

## 분석

### 서론

1970년대 초에,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여러 민간단체(특히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의료조직)가 생겼다. 이런 기관은 보호를 위해 적십자/적신월 표장을 발빠르게 채택했고 해당 표장사용이 IHL에 의해 엄격히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다.

다음과 같이 서로 상충하는 듯한 두 가지 목표를 조율해야 한다. 즉 (i)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의 오용을 방지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과 (ii) IHL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 능률적인 기관을 위해서 가능한 한 가장 확실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가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조건

#### 국제적 무력충돌 시

##### A. 자국 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경우(GC I 제26조)

NS가 보호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GC I의 규정은 GC I 제26조에 의해서 NS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기타 자발적 구호단체”에도 적용된다.<sup>251</sup> 이에 따라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는 자국군 의무대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할 때 NS와 같은 조건으로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조직이 자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과 승인을 받았다.
- 해당 조직의 요원은 자국군의 의무요원과 동일한 임무를 위해서 고용된다.
- 해당 요원은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sup>252</sup>

##### B.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충돌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AP I 제9조(2)(나) 및 (2)(다))

GC I 제27조는 중립국에 속하며 또 다른 충돌당사국 군 의무대에 의무요원과 의료부대를 지원하고 있는 NS가 GC I 제44조에 따라 보호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되는 조건을 규정한다.<sup>253</sup>

251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6조, p. 226. 몰타 기사단(Knights of Malta)과 예루살렘 성요한 기사단(Order of St. John of Jerusalem)이 “기타 독자 구호단체”의 두 가지 예다.

252 연구질문 14도 참조.

253 GC I 제27조는 다음과 같다.

“중립국의 승인된 단체는 미리 자국정부의 동의 및 사전승인과 충돌당사국의 허가에 따라 충돌당사국에 의무요원과 의무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의무요원과 의무대는 충돌당사국의 통제하에 놓인다. 중립국 정부는 그와 같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적국에 전기의 동의를 통고하여야 한다.

API 제9조(2)(나)는 동일한 조건에서 보호표장을 표시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그러한 국가가 인정하고 허가하는 **구호단체**에 의해 (...) 인도적 목적을 위해 충돌당사국이 공여하는 의무대 및 의무차량과(...) 그 요원”까지 확장했다. (강조 추가) 이러한 “구호단체”는 GC1 제26조에서 언급한 “자발적 구호단체”, 즉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로 해석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API 제9조(2)(다)는 동일한 조건에서 보호표장을 표시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공평한 국제인도주의단체가 인정하고 허가하는 구호단체에 의해 (...) 인도적 목적을 위해 충돌당사국이 공여하는 의무대 및 의무차량과(...) 그 요원”까지 확장했다.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가 공평한 국제인도주의단체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조직은 GC1 제27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보호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추가 의정서 해설서>는 이러한 “공평한 국제인도주의단체”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단체가 ‘순수하게 공평하다는 자격을 충족시킬’ 때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이 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서 차별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며, 제9조에서 명시한 대로 의료구호를 제공할 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배경, 빈부, 출생 및 기타 지위 또는 어떤 유사한 기준에 근거해서도 불리한 차별’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단체의 ‘인도주의적 성격’과 관련하여 먼저 무력충돌의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의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체 자체가 인도주의적 성격을 가진 경우, 해당 단체는 반드시 인도주의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한다.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단체는 이러한 제약에서 배제된다.”<sup>254</sup>

분명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동 해설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필요한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을 지정하거나” “해당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조직을 명확하게 지정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sup>255</sup>

어떠한 경우에도 이 원조는 충돌에의 개입이라고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제1단락에 기술한 요원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속하는 중립국을 떠나기 전에 제40조에 정하는 신원증명서를 정식으로 주어야 한다.” 연구절문 14도 참조.

254 <추가 의정서 해설> API 제9조(2), 439~440.

255 <추가 의정서 해설> API 제9조(2), 437과 440. 우리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표장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현장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엄격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조직의 공평성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표장사용이 허용된 다른 주체와 단체에게 있어서 표장에 대한 존중과 표장의 보호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 C. API(API 제18조)에서 정의하는 민간 의무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

API 제18조(3)과 (4)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점령지역 및 전투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 의무요원과 민간종교요원은 식별표장과 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대 및 의무차량은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 식별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API 제8조에서 정의하는데, API의 제8조(마)에 열거된 “의료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배속/조직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배치/조직된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API의 정의 안에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GC I 제44조와 API 제18조에 따라,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sup>256</sup> “의무대”,<sup>257</sup> “의무차량”<sup>258</sup>의 정의에 해당한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sup>259</sup>

256 API 제8조(다)에 정의된 의무요원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마)에 열거된 의료목적이나 의무대의 행정 또는 의료수송의 운영 또는 행정에 배속된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정은 영구적일 수도 일시적일 수도 있다.” <추가개정서 해설> API 제8조(다), 354에서 강조하고 있듯, “보호표장의 오용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충돌당사국은 의무요원의 보호를 책임질 담당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API 제15조는 민간 의무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57 API 제8조(마)는 의무대를 “병원 및 기타 유사한 시설[과 같이], 의료목적에 위해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 시설과 기타 부대”로 정의한다.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 의무대는 IHL에 따른 존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즉 “충돌당사국 관할당국의 인정과 승인을 받으려면” API 제12조(2)(나)에 자세히 규정된 “민간 의무대”에 맞는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58 API 제8조(사)에 정의된 의무차량은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상시적이든 일시적이든 충돌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통치하에 있고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의무차량은 API 제2편 제2장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IHL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259 API 제18조(3)과 (4) 참조. API가 “관할당국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API 제18조(3)에 정의된 의무요원의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당국이 발급할 때, 그러한 동의는 암묵적으로 주어진다. “충돌당사국”과 관련해, 추가의정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부대와 차량이 민간용이든 군용이든 간에, 부대와 차량의 사용은 이것이 속한 당사국의 통제하에 놓인다. 따라서 식별표장은 당사국(이 절문에 있어서 특히 점령지에서는 적국이 되기도 한다)의 관할당국의 동의 없이 부착할 수 없다.” (추가의정서 API 제18조(4) 766). 보호표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관할당국 및 이런 측면에서 NS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결문 6 참조.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해당 보호표장을 사용한다.<sup>260</sup>

###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sup>261</sup>

AP II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권한 있는 관계당국의 지도하에 흰 바탕에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은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료부대 및 의료수송수단에 의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식별표장”이라는 표현은 “보호표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추가 의정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양 추가의정서에서 사용된 ‘식별표장’이란 용어는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된 표장만을 지칭한다.

AP I 제8조(용어)(타): ‘식별표장’이란 함은 의무대 및 의무차량,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장비 또는 보급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될 경우의 백색바탕의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을 의미한다.

제12조는 제2의정서 초안에서 작성된 정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토대로 채택되었다.”<sup>262</sup>

AP II는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용어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사용되는 경우 AP I 제8조의 (다), (마), (사)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263</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의료 목적”을 위해 배속/조직원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요원, 부대, 수송수단은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60 AP I 제18조(8)은 관할당국에 의한 표장 사용에 관한 통제권을 다루면서 IHL상의 “식별표장의 사용에 관한 감독과 그 남용의 방지와 억제에 관한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의 규정”을 언급한다. 이를 상기시키듯, GC I 제54조는 국가가 상시 표장의 오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가 의정서 해설> AP I 제18조(8) 791과 794는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제네바협약 체계는 대부분 식별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표장의 사용을 감독하고 이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은 이 체계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

그러나 제약국(추가 의정서의 경우 이에 구속받는 충돌의 다른 당사국)에 부여되는 이들 국가에 속한 요원 및 물품에 사용되는 식별표장과 신호에 대한 감독 의무는 어느 상황에서도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를 존중하고 이러한 존중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261 본 분석은 부분적으로 앙투안 부비에가 IRRC에 발표한 논문에 근거한다. 해당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했다. 앙투안 부비에,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사용의 특별한 측면”, IRCC, No. 272, 1989년 9월~10월, pp. 438~458.

262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34.

263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9조, 4663~4664;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11~4712; <관습국제인도법연구>, 규칙 25, 28, 29, pp. 82~83, 93, 100.

여기서 고려하는 의무요원(부대와 수송수단)에 대해서, 즉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의무요원에 대해서는 국제인도법 관련 외교회의의 참가국들은 이런 점에서 현지 기관과 외국기관을 구분할 의향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추가 의정서 해설서>의 저자들이 공유하는 이런 해석에 따라, 현지(외국이 아닌) 구호단체만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sup>264</sup>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지의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sup>265</sup>
- “관할당국의 지시에 따라” 표장을 사용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정방당국(민간 또는 군)이든 무장단체(민간 또는 군)이든 간에,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에 의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sup>266</sup>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은 오용과 위반의 방지 및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GC I 제53조와 제54조에서 유추하여 적용) 표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면밀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체제 당국이 관련 규정 모두를 충실히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당국은 적어도 간략한 감독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해야 한다. 표장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자발적이든 아니면 당국의 비능률로 인한 것이든 그 원인을 불문하고 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에 따라 IHL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P II가 적용되지 않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아닌 민간단체가 보호목적의 표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관할당국에 청원할 경우, ICRC는 AP I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승인을 해줄 것을 당국에게 권장한다.

264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9조, 4667에서 인용한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주의법의 제확인과 개발에 대한 외교회의의 공식기록(제네바, 1974~1977)”, 제12권, p. 270, CDDH/I/SR. 80, 16단락 참조. 이런 해석의 근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9조(1) 4660, 4664~4667과 AP II 제12조 4739~4740 참조.

265 AP II 제9조는 의무요원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AP II 제11조는 의무대와 의무차량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266 <추가 의정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장을 효과적으로 존중하려면 표장의 사용에 대한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표장을 사용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식별표장을 통한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 관할당국의 식별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한 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각각의 책임있는 당국의 몫이다. 관할당국은 민간일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다. 법적인 정부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관할당국은 사실상 책임이 있는 당국이 될 것이다.”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46.

## 30

## 민간 군사 및 보안회사가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제1~4제네바협약 공동조항 제1조와 제3조

GCI 제18조 제3단락, 제24조~제27조, 제44조, 제53조, 제54조

AP I 제1조(1), 제8조(다), (마), (사),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편 제2장

AP II 제1조(1), 제9조, 제11조, 제12조

## 권고사항

1. 민간 군사 및 보안기업 (PMC/PSC)는 표장(보호표장과 표시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2. PMC/PSC의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제적 무력충돌과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보호표장을 사용한다.

## 분석

## 서론

지난 10년 동안 국가와 민간기업, 국제적 및 지역적 정부간 기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PMC/PSC의 서비스에 갈수록 더 의존해왔다. 이러한 회사들은 경제적 역동성을 계기로 전통적으로 국가의 특권이었던 다양한 보안 및 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sup>267</sup>

PMC/PSC는 병참(수송) 지원이라는 전통적인 서비스 외에도 군사작전의 핵심에 근접하게 만드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IHL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sup>268</sup>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모든 단계에서의 의료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sup>269</sup>

<무력충돌 시 민간 군사 및 보안기업의 작전과 연관된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법률적 의무와 모범관행에 대한 뫼티르 문서>는 PMC/PS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PMC는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상관없이 군사 및/또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체다. 군사 및 보안서비스는 특히 수송대, 건물 및 기타 장소 등 사람과 물자를 위한 무장 경호 및 보호, 무기체계의 유지 및 운영, 죄수 구금, 현지 병력 및 보안요원을 위한 자문과 훈련 등을 포함한다.<sup>270</sup>

따라서 PMC/PSC 요원, 부대, 차량이 특정한 환경에서 IHL의 보호를 받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들이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 질문에서, PMC/PSC를 고용하고 자신의 영토에서 PMC/PSC가 활동하는 중요한 두 개의 주체인 국가와 무장집단은 IHL<sup>271</sup>을 존중하고 존중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

## 민간 군사 또는 보안기업이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GC I 제44조, AP I의 제18조, AP II 제12조는 IHL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요원, 부대, 차량에게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요원, 부대, 차량은 IHL의 보호를 받고 이에 따라 표장을 사용하려면 “자발적 구호단체”(GC I 제26조와 제27조), “구호단체”(AP I 제9조(2)(나)),<sup>272</sup> “공평한 국제인도주의단체”(AP I의 제9조(2)(다)), 또는 “의무요원”, “의무부대” 및 “의무차량”(각각 AP I 제8조(다), (마), (사))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 국제적 무력충돌 시

#### A. PMC/PSC는 “독지구호단체”/“구호단체”의 자격이 있는가?

268 제30차 연례회의 ICRC 보고서 VI절, “국제인도법 및 현대 무장충돌의 과제”, 30IC/07/8.4, 제네바, 2007년 10월, pp. 24~28. <http://www.icrc.org>에서 열람 가능.

269 예를 들어 샌드라인사 <http://www.sandline.com>, 메디컬 서포트 솔루션(MSS) <http://medsupportolutions.com>, 탠지어스 인터내셔널 <http://tangiersinternational.com>, 글로벌 오퍼레이션널 리소스 그룹 <http://www.gorgrp.com>이 제공하는 서비스 참조.

270 <무력충돌 시 민간 군사 및 보안회사의 작전과 연관된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법률적 의무와 모범관행에 대한 뫼티르 문서>, 민간 군사 및 보안회사에 대한 ICRC와 스위스의 공동 이니셔티브, 뫼티르, 2008년 9월 17일, 제9단락, p. 3.

271 제1~4 제네바협약의 공통조항인 제1조와 제3조, AP I 제1조(1), AP II 제1조(1). <추가개정서 해설서> AP II 제1편, 4442.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 139, pp. 495~498도 참조.

272 AP I 제9(2)(나)에서 보호표장을 게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인정받고 허가받은 중립국의 구호단체는 GC I 제26조에서 언급한 “독지구호단체”로 해석해야 한다. <추가개정서 해설서>, AP I 제9조, 433.

“자발적 구호단체”(GCI 제26조와 제27조) 또는 “[그러한 국가가] 인정하고 허가하는 구호단체”(API 제9(2)(나)조)의 요원과 부대는 GCI 제24조에서 열거한 군대의 의무대와 동일한 보호를 받되, 이러한 단체의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위해 고용되고 군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sup>273</sup>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자발적 구호단체”라는 표현이 이러한 단체의 직원이 반드시 무급직원이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표현은 이 단체 직원의 업무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로 수락한 업무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의미한다.<sup>274</sup>

단체의 인도주의적 성격은 “독지구호단체” 또는 “구호단체”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단체의 직원은 유급직원일 수 있다. 하지만 단체 자체는 오로지 인도주의적(“구호”) 목적만을 추구해야 한다.

PMC/PSC 직원은 경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PMC/PSC는 그 성격상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상관없이 군사 및/또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체”로 이는 “구호단체”의 정의와 양립하지 않는다.<sup>275</sup> 따라서 이 자격에 따라 보호를 받고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B. PMC/PSC는 API 제9(2)(c)에 따라서 “공평한 국제인도주의단체”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공평한 국제인도주의 단체”를 다루는 <추가정의서 해설서>(API 제9(2)(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단체가 ‘순수하게 공평하다는 자격을 충족시킬’ 때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이 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서 차별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며, 제9조에서 명시한 대로 의료구호를 제공할 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배경, 빈부, 출생 및 기타 지위 또는 어떤 유사한 기준에 근거해서도 불리한 차별’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단체의 ‘인도주의적 성격’과 관련해서 먼저 무력충돌의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의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체 자체가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오로지 인도주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런 제한이 있어서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273 GCI 제26조 제1단락.

274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26조, pp. 224~225.

275 <무장충돌 시 민간 군사 및 보안회사의 작전과 연관된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법률적 의무와 모범관행에 대한 모티브 문서>, 민간 군사 및 보안회사에 대한 ICRC와 스위스의 공동 이니셔티브, 모티브, 2008년 9월 17일, 제9단락, p. 3.

성격을 지닌 단체는 배제된다.”<sup>276</sup>

PMC/PSC는 이익추구라는 경제적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평하다고 간주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체는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자격에 따라 보호를 받거나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 C. PMC/PSC는 AP I에서 정의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자격이 있는가?

AP I 제18조(3)과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점령지역 및 전투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인 의무요원과 민간종교요원은 식별표장과 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대 및 차량은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 식별표장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AP I 제8조에서는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을 본질적으로 AP I의 제8조(마)에 열거한 “의료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배정되거나 이를 위해 조직된 것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적으로 “의료목적”을 위해서 배속되거나 조직된 PMC/PSC 요원, 부대, 차량은 AP I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C I 제44조와 AP I 제18조에 따라서, PMC/PSC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sup>277</sup>, “의무대”<sup>278</sup>, “의무차량”<sup>279</sup>의 정의에 해당한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

280

276 <추가개정서 해설> AP I 제9조(2), 439~440.

277 AP I 제8조(다)에 정의된 의무요원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마)에 열거된 의료목적을 위해, 또는 의무대의 행정, 의무차량의 운영 또는 행정업무에 배속된 자”를 의미한다. 그 배속은 상시적 또는 일시적일 수 있다 <추가개정서 해설>. AP I 제8조(다), 제354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듯, “보호표장의 오용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충돌당사국은 의무요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본 절문에서 “의료목적”을 위하여 PMC/PSC 의무요원 배정을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해당 PMC/PSC를 고용하는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1추가개정서 제15조는 민간 의무요원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78 AP I 제8조(마)는 의무대를 “병원 및 기타 유사한 시설[과 같이], 의료목적을 위해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 시설과 기타 부대”로 정의한다. 본 절문에서 “의료목적”으로 PMC/PSC 의무대 조직을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해당 PMC/PSC를 고용하는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 해석해야 한다. PMC/PSC의 의무대가 IHL에 따른 존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즉 “충돌당사국 관할당국의 인정과 승인을 받으면” AP I 제12조(2)(나)에 자세히 규정된 “민간 의무대”에 맞는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79 AP I 제8조(사)에 정의된 의무차량은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상시적이든 일시적이든 충돌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통치하에 있고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의무차량 본 절문에서, “의료목적”을 위하여 PMC/PSC 의무차량 배정을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해당 PMC/PSC를 고용하는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 해석해야 한다.

의무차량은 AP I 제3편 제2장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IHL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280 AP I 제18조(3)과 (4) 참조. AP I가 “관할당국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AP I 제18조(3)에 정의된 의무요원의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당국이 발급할 때, 그러한 동의는 암묵적으로 주어진다.

본 절문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은 해당 PMC/PSC를 고용하는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 해석해야 한다. <추가개정서 해설> AP I 제18조(4), 766도 참조.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해당 보호표장을 사용한다.<sup>281</sup>

## 미국제적 무력충돌 시

AP II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권한 있는 관계당국의 지도하에 흰색 바탕에 적십자, 적신원, 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은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무대 및 의무차량에 의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AP II에는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에 대한 정의가 없다. 미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사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용어는 AP I의 제8조(다), (마), (사)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282</sup>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의료목적”을 위해서 배정되거나 조직된 PMC/PSC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MC/PSC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IHL의 보호를 받는다. 즉 AP I 제8조(다), (마), (사)에 포함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정의에 해당한다.<sup>283</sup>

- “충돌당사국의 지휘에 따라” 표장을 사용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보호수단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
-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의 관리 하에 해당 보호표장을 사용한다.<sup>284</sup>

281 AP I 제18조(8)은 관할당국에 의한 표장 사용에 관한 통제권을 다루면서 IHL상의 “식별표장의 사용에 관한 감독과 그 남용의 방지와 억제에 관한 제1항 및 본 의정서의 규정”을 언급한다. 이를 상기시키듯, GC I 제54조는 국가가 상시 표장의 오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가 의정서 해설> AP I 제18조(8) 791과 794는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제네바협약 체계는 대부분 식별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표장의 사용을 감독하고 이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은 이 체계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

그러나 계약국(추가 의정서의 경우)에 부여되는 충돌의 다른 당사국)에 부여되는 이들 국가에 속한 요원 및 물품에 사용되는 식별표장과 신호에 대한 감독 의무는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를 어느 상황에서도 존중하고 이러한 존중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요원요원

282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9조, 4663~4664;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11~4712; 관습국제인도법연구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 25, 28, 29, pp. 82~83, 95, 100 참조. 연구결론 23도 참조. AP I에 있는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에 대한 정의는 위의 “PMC/PSC: AP I에서 규정한 정의한 ‘의무요원, 의무대, 의무차량’의 자격이 있는가” 내용 참조.

283 AP II 제9조는 의무요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P II 제11조는 의무대와 의무차량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84 <추가 의정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장을 효과적으로 존중하려면 표장의 사용에 대한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표장을 사용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식별표장을 통한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 관할당국의 식별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한 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각각의 책임있는 당국의 몫이다. 관할당국은 민간일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다. 법적인 정부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관할당국은 사실상 책임이 있는 당국이 될 것이다.”

<추가 의정서 해설> AP II 제12조, 4746.

정부당국이든 반체제측이든 상관없이 PMC/PSC를 고용하는 충돌당사국의 관할당국은 표장 남용과 위반행위를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GC I 제53조와 제54조를 유추 적용), 표장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sup>285</sup>

---

285 반체제당국의 감독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질문 28 참조.

## 31

## 1949년 제1제네바협약의 제44조 4단락에 따른 제3자 구급차와 응급처치시설에서의 표장의 사용: 각국 적십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4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사용규칙 제22조와 제23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공평과 중립)

### 권고사항

1. GC I에 따라 제3자 구급차와 응급처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표장은 예외적인 조치로만 사용될 수 있다.
  - 표장의 사용은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
  - NS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응급처치시설이나 구급차는 환자와 부상자에게만 사용되며 구호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표장사용은 평시에만 허용된다.
2. 내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NS는 특히 NS 건물 및 자산과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 표장사용을 승인할 때 매우 신중할 것을 권한다.
3. NS가 표장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는 국내법은 GC I 제44조 제4단락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3자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 의한 표장사용에 관청의 동의나 감독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NS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국내법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구급차나 응급처치시설의 표장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NS가 표장사용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3자는 특히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 없이 구호를 제공한다.
  - 제3자와 그 직원은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 일반대중에게 구급차와 응급치료시설 등과 NS(그 차량, 의무대 등) 간에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무료진료” 등과 같은 설명문구를 표장 옆에 추가할 수 있다.
  - 해당 구급차 및 응급치료시설은 NS에 서면으로 표장사용을 요청하며 그러한 표장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존중하겠다는 서면 약속도 제출한다.
  - NS 중앙지도부의 허가를 받아 승인한다.
  - NS는 표장사용에 대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표장은 반드시 비교적 작은 크기여서 보호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5. NS는 국내 폭력사태 중 또는 무력충돌이 임박했을 때 제3자 구급차 및 응급치료시설에 신규 승인을 하지 않고 이미 사용을 승인한 것은 취소할 것을 권한다.

## 분석

### 서론

이 질문은 평시 제3자 구급차 및 응급치료시설이 표장을 표시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GC I 제44조 4단락에 따라, 단순히 표시적인 상징은 해당 NS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 구급차임을 표시하고 응급치료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구급차와 응급치료시설이 해당 NS와 전혀 무관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GC I 제44조 제4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예외적 조치로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표장은 국내법에 따라 또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또는 적사자 및 태양사)의 어느 하나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고 구급차로서 사용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또한 부상자 및 병자에 무상으로 치료를 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충당되는 구호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시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서 개괄하듯이 제3차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표장과 관련한 협약의 기본원칙에서 일부 벗어나는 것이다.”<sup>286</sup>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 조치로서 평시에만 엄격한 조건에 따라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 엄격한 조건과 각국 적십자사의 감독이 적용되는 예외적 사용

“표장이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유지해야 할 품위를 훼손”시키는 표장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을 규정한다.<sup>287</sup>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제44조 제4단락)는 제3차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a) 표장은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될 수 있다. 표장의 사용은 명시된 사례 외의 경우예까지 확장될 수 없다.
- b) 표지의 사용은 반드시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표장사용을 제한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경우 추가적인 보호장치(관청의 동의나 감독 등)를 적용할 수 있다.
- c) 표장을 사용하려면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암묵적 동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b)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이러한 승인은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태양사)만이 할 수 있다. 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단체에는 물론이고 국가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또한 적십자사가 이를 위임할 수도 없다.
- d) 구호소는 전적으로 병자와 부상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호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표장에 담긴 이상을 보존한다. 진료비를 받거나 약품을 판매하는 순간, 표장사용에 대한 허가는 철회된다.
- e) 이런 용도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평시에만 허용된다. 한 국가가 충돌당사국이 되는 동시에 이러한 표장은 해당국 영토 전역에서 사라져야 한다. 허가를 하는 목적이 전시에도 동일하게 유용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매우 확고하다. 적십자의 본질적 가치는 적십자가 면책의 상징이 되는 전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항도 이를 우선할 수 없다.”<sup>288</sup>

28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7.

287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8.

288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8. “무료진료” 조건에 관한 한, 1991년 적십자 표장사용규칙 제22조에 대한 해설이 GC I 제44조 제4단락 및 그 해설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둘 다 동일한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1협약 제44조 제4단락은 구급차 외에도 ‘전적으로 무료진료를 위해 배정된’ 응급처치시설의 표시를 허용한다. 경험에 의하면 무료진료에 대한 이런 규칙은 종종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관행은 진료가 진료비 지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제적십자운동의 자원봉사정신을 저킬 경우에만 허용되며 협약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국내법

국내법이 NS에게 제3자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게 표장사용을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법령은 GC I 제44조 4단락에 열거된 조건들 일체, 특히 표장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

국내법이 독자적으로 NS의 명시적 허가 없이 표장사용을 허가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사용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공식기관의 동의 또는 감독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NS의 역할

NS의 허가는 GC I 제44조 4단락에 의거한 제3자의 표장사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모든 사람에게 [표장]이 상징하는 원칙의 고귀한 도덕적 중요성”<sup>289</sup> 때문에 NS에게는 이러한 표장사용 권한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을 권한다. 특히 승인을 하기 전에 NS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과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서 도출한 다음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무상으로 구호를 제공한다.<sup>290</sup>
- 제3자와 그 직원은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sup>291</sup>
- 일반대중에게 구급차와 응급치료시설 등과 NS(그 차량, 부대 등) 간에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무료진료” 등과 같은 설명문구를 표장 옆에 추가할 수 있다.<sup>292</sup>
- 해당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서 표장을 사용하기 위해 표장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NS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승인은 NS 중앙지도부가 담당하며, NS 내부에서 표장사용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장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NS 지사가 아닌 본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sup>293</sup>

289 1929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Actes de la Conférence diplomatique de Genève de 1929(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1929년 7월 27일, 제네바) 관련 외교회의 회의록(1930년, 제네바, p. 619)에 기록된 사무총장의 발언, <제1 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9에서 인용.

290 ‘공평’이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함.

291 ‘중립’이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함.

292 1991년 적십자 표장사용규칙 제23조(3)(가)에서 유추.

293 1991년 적십자 표장사용규칙 제23조(3)(사)에서 유추.

- NS는 심사중인 표장사용에 대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94 표장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란 통제권을 행사하고 사용승인에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sup>295</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2조는 “각국 적십자사는 표장의 사용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만 허가를 해야 하며, 각국 적십자사는 언제나 즉각적인 효력으로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 이러한 구급차 또는 응급처치시설이 사용하는 표장은 크기가 비교적 작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 평시에만 사용 허용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적십자의 본질적 가치는 적십자가 면책의 상징이 되는 전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sup>296</sup> 따라서 이러한 보호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NS는 국내 폭력사태 중 또는 무력충돌이 임박했을 때 제3차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에 신규 승인을 하지 않고 이미 사용을 승인한 것은 취소할 것을 권한다.

### 혼동을 유발할 위험

특히 의료 및 관련 직종에 의한 표장 오용 건수가 매우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IHL에 따라 NS는 제3차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이 표장을 게시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승인 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표장사용은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고 NS의 활동과 현재 논의 중인 제3차의 활동 간의 구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94 이 조건은 각별히 구급차 서비스가 병원이나 민간부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991년 적십자 표장사용규칙 제23조(3)(나)에서 유추.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9도 참조.

295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8)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적십자사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표장이 유지해야 하는 품위를 훼손하는 남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허가 이후 사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적십자사는 신규 사용의 근거가 될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도 인해 어떤 편견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야 한다. 적십자사는 자신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신하지 않다면 심지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29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8.

## 제2부

표장 사용에 대한 상업적 및 기타 운영외적  
쟁점에 관한 권고사항



## 제2부

### A. 국가당국에 의한 사용

#### 32

1968년 11월 8일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유엔협약과 해당 협약을 보충하기 위한 1971년 5월 1일 유럽협정은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과 양립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4단락

GC IV 제18조

1968년 11월 8일 체결된 도로표지 및 신호체계에 관한 1968년 UN 도로표지협약의 전문, 제5조(1)(b)와 (c), 제1부속서 E.II 제11단락과 F.II 제1단락, 기호 F(13a, 13b)와 E(1a, 1b, 1c)

1971년 5월 1일 체결된 도로표지 및 신호체계협약 보충을 위한 유럽협정(1971년 유럽보충협정)

#### 권고사항

1. 1968년 도로표지협약의 병원 및 응급처치시설 표지 관련 규정은 표장 사용에 관한 규칙(특히 제네바협약)을 따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평시에 민간 병원에 표장을 표시하는 유일한 목적은 무력충돌의 시작할 경우 구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나 이러한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
  - 1968년 도로표지협약 규정을 적용할 경우 NS(와 그 건물)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2. 1968년 도로표지협약 규정은 (1971년 유럽보충협정과 더불어) 제네바협약의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응급처치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기호 F(1a, 1b, 1c)로 표시된 표장은 대체되어야 한다.
3. 병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바탕색에 쓰여진 백색 대문자 “H”만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4. 적십자사는 병원 표지(다른 바탕에 백색 대문자 “H”)와 응급처치시설의 대안 표지(예를 들어 녹색 바탕에 백색 십자가 표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당국이 도로표지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sup>297</sup>

## 분석

### 1968년 도로표지협약과 1971년 유럽보충협정은 국제인권법의 표장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가?

#### 문제점

1968년 도로표지협약은 민간 병원으로 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도로 표지판을 규정한다.

- 청색 바탕에 백색 대문자 “H”(기호 E, 13a)
- 청색 바탕에 백색 침대와 적색 십자가(기호 E, 13b)

동일한 협약에서는 응급처치시설을 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기호도 함께 제시한다.

- 백색 바탕에 적십자(기호 F, 1a)
- 백색 바탕에 적신월(기호 F, 1b)
- 백색 바탕에 적사자태양(기호 F, 1c)<sup>298</sup>

#### 제네바협약에 의거한 평시 민간 병원 표시에 대한 관찰 사항

민간 병원 표시와 관련한 일반규칙을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GC IV 제18조에 따르면 “민간 병원은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sup>299</sup> GCIV은 해당 표장의 사용이 평시에도 허용되는지 구체적

297 녹색 바탕에 백색 십자가는 많은 국가에서 공식 인정되었다. 해당 응급처치 표시 사용을 참고하려면, 연구절문 18, 27, 46 참조.

298 1971년 유럽보충협정은 민간 병원과 관련해 1968년 도로표지협약(기호 E, 13a과 13b)과 동일한 기호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처치시설에 대해서는 적십자(기호 F, 1a)만 사용가능하고 적신월(기호 F, 1b)이나 적사자태양(기호 F, 1c)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299 (평시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적십자 표장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 병원이 GC IV의 제18조에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민간 병원은 다음과 같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은 “부상자나 환자, 병약자, 입산부를 보살펴야 한다”(GC IV 제18조 제1단락). 민간 병원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며, 당국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GC IV 제18조 제2 단락).

- “허가된 민간 병원은 표장으로 구별될 것이나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GC IV 제18조 제3단락). 부상자와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하더라도 승인받은 민간 병원에 표장을 게시할 권한이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승인을 해야만 한다. 본 주제를 좀 더 살펴보면 연구절문 8 참조.

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이 같은 점에서 도움이 된다.

“민간 병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 표시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칙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평시에 민간 병원에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 평시에 적십자사에 귀속되지 않는 건물에 적십자를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대중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sup>300</sup>

따라서 국가가 평시에 민간 병원에 표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두 가지 상황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즉, 국가 승인을 받은 민간 병원이 무력충돌이 시작된 순간부터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중요성과 평시에 표장 표시 민간 병원이 너무 많을 경우 사람들에게 NS(과 그 건물)와 기타 시설 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그것이다. 이는 적십자사와 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평시에 민간 병원에 표장 표시가 되어있으면 대중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간 병원이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구별되도록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예를 들어 표장이 그려진 대형 깃발을 건물 정면에 걸게 할 수도 있다).<sup>301</sup>

이러한 제안은 민간 병원 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의 경우에 보다 타당성을 가진 듯하다. 이 경우, 주목적이 병원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병원이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확실히 구별되게 하는 일차적 관심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이차적 관심을 우선시해야 하며 표장을 도로표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네바협약에 의거한 응급처치시설 표시

GCI 제44조 제4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예외적 조치로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표장은 국내법에 따라 또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또는 적사자 및 태양사)의 어느 하나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고 구급차로서 사용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또한 부상자 및 병자에 무상으로 치료를 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총당되는 구호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시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300 <제4차제네바협약 해설> 제18조 p. 151

30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절문 8의 답변도 함께 참조.

이에 따라 응급처치시설에 합법적으로 표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예외적인 조치에 한하여 표장이 사용될 수 있다.
- 표장의 사용은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
- NS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응급처치시설이나 구급차는 환자와 부상자에게만 사용되며 구호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표장의 사용은 평시에만 허용된다.<sup>302</sup>

따라서 도로표지에 표장을 사용해서 응급처치시설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은 (1968년 도로표지협약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GCI 제44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기존에 정착된 응급처치표시인 녹색 배경색에 흰색 십자가 이미 존재하며 이는 유럽연합, 북미, 호주 및 기타 국가들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해당 표장은 “응급처치”<sup>303</sup>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시들이 보다 정확할 뿐 아니라 적십자/적신월사 표장이 응급처치를 상징하는 일반 표장이라는 흔한 오해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sup>304</sup> 해당 표장 (또는 다른 적절한 대안)이 적십자/적신월사 표장 대신 응급처치시설과 도로표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 1968년 도로표지협약

본 협약의 목적이 협약 서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제 도로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무력충돌이 시작된 순간 병원들을 구별되게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위의 “제네바협약에 의거한 평시의 민간 병원의 표시에 대한 관찰사항” 참조). 이는 평시에 (적십자/적신월사)표장을 사용해서 민간 병원을 표시하는 일에 대해 IHL에 의거해 타당함을 제시하는 유일한 조항이다.

1968년 도로표지협약에 의거해 분류되는 두 종류의 도로표지를 살펴보면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즉, 병원(또는 응급처치시설) 표지의 목적은 (위의 “제네바협약에 의거한 평시의 민간 병원 표시에 대한 관찰 사항”에 기술된) 표장을 사용해 병원을 표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302 응급처치시설(과 구급차)에 표장을 표시하는 것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절문 31 참조.

303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응급처치 활동과 응급처치 매뉴얼과 같은 물품에 표장과 이름뿐 아니라 백색-녹색 표지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표장의 고유한 의미를 중립성과 보호의 상징으로써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응급처치 기호의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18, 27, 46 참조.

304 일부 국가에서는 적색으로 쓴 “응급처치시설”이 응급처치시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a. (병원 표지를 위한) “특별규정기호”는 1968년 도로표지협약에 명기된 대로 “도로 이용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특별한 의무, 제약, 혹은 금지사항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1)(b) 및 협약의 제1부속서(E.II 제11단락)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협약, 제1부속서, E.II, 제11단락은, 청색 바탕 위의 백색 “H”에 관해 언급하며, 운전자에게 근처에 의료시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설명한다.

“[“병원” 표지는] 운전자에게 근처에 의료시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표시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지에는 기호 E에 기술된 13a와 13b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기호 E, 13b에 있는 적십자는 바.II항 1단락에 언급된 기호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b. (응급처치시설 표식을 위한) “정보전달 표지”는 1968년 도로표지협약에 정의된 대로 도로 이용자들에게 이동 중에 길을 안내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5조(1)(c)).

1968년 도로표지협약의 앞서 말한 규정은 제네바협약의 관련 규정과 상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968년 도로표지협약은 병원이나 응급처치시설을 표시하는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지만, 적십자/적신월사의 표장을 사용하는 도로 표지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룬다.
- 1968년 도로표지협약의 명시된 목적은 GC IV에 의거해 표장으로 병원을 표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카테고리에는 속하지 않는다.
- 1968년 도로표지협약에 의거해 도로표지판을 사용한다면 대중에게 NS와 그 건물들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1968년 도로표지협약과 1971년 유럽보충협정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쉽게도 그점이 두 협약에 포함된 규정이 제네바협약과 모순되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1980년대 초까지 적어도 서유럽 지역에서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는 데 청색 바탕에 백색 대문자 “H” 표지만 사용했다. 이로 인해 1968년

및 1971년 협약의 시정 활동이 미미했다.

## 1968년 도로표지협약 및 1971년 유럽보충협정 수정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접수된 수많은 요청과 특히 유럽적십자사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 표장을 사용한 도로 표지판의 사용은 확실하게 주요 쟁점이 되었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보호조치는 국제적십자운동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인 목적은 제네바협약 규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1968년 협약(1971년 유럽보충협정 뿐만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의 진행 방법 및 현재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의 정책들 안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실무회의와 접촉하는 것이다. 실무회의 업무 권한 중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 및 도로표지와 신호체계에 관한 협약과 1971년 이를 보충한 유럽협정을 심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sup>305</sup>하는 일이 포함된다. 일단 최초 접촉이 성사되면 이 쟁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병원과 응급처치 대안 표시의 보급

궁극적으로 이렇게 범규를 개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적십자/적신월사 표장이 아니라) 흰색 대문자 “H”와 응급처치 표지를 보고 병원과 응급처치시설을 연상시킬 수 있다면 크게 유용할 것이다.

일부 설문결과에 따르면 파란색 배경에 흰색 대문자 “H” 표시보다 적십자 표장이 병원을 나타내거나 응급처치시설을 상징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sup>306</sup>

이는 적십자, 적신월사, 적수정 표장 및 해당 표장의 중요성과 승인받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일 뿐 아니라 파란색 바탕색에 흰색 대문자 “H”(또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기타 표시) 표시의 존재와 유용성 및 응급처치 대안 표식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적십자사는 이러한 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도로표지에 표장 사용을 금하도록 당국에 권고<sup>307</sup>

적십자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때 도로표지의 사용과 관련해 당국에 조언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당국에서 도로표지에 표장을 추가할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또는 1968년 도로표지협약에 의거해 이미 추가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한다.

305 <도로교통안전공단 작업부회 47회기 보고서> 부록1 (2005년 12월 15일)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작업부회 참조용어 및 절차에 관한 규칙(2005년 10월 27일) p. 3.

306 ANWB, <교통 표지에 관한 연구(Onderzoek verkeersborden)>, 2005 참조.

307 표장 보호를 위해 적십자사의 공공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서 연구절문 46 참조.

당국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얻고자 적십자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적십자사는 향후 도로표지에 적십자 표장 사용을 미리 예방하고 기존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적십자사는 본 사안과 제네바협약 규정과 1968년 도로표지협약(및 1971년 유럽보충협정) 사이의 잠재하는 상충점에 대해 담당 부처에 브리핑을 해야 한다. 적십자사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본 질문, 특히 도로표지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배경색에 백색 대문자 “H”나 응급처치시설의 대안 표식 사용의 중요성에 입각해 분석을 실시한다.
- 두 가지 이해가 상충될 경우, 중요성이 보다 높은 목적, 즉 무력충돌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인명을 보호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 그러한 결정은 군 의무대를 비롯해 표장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주체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덧붙여, 본 사안이 문제가 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경우 적십자사는 당국이 어떤 도로교통법 개선안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삼아 사안을 해결할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 부처나 의회에 브리핑을 해야 한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분석 역시 당국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제2부

### B. 각국 적십자사에 의한 사용

#### 33

대중을 대상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적십자 표장 및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53조 제1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전문 제3조와 제23조 제1~2단락

#### 권고사항

1. 적십자사가 대중에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표장을 표시하는 행위(문구를 동반하지 않은 원래의 형태로 사용하는 보호표장으로서의 사용)는 금지되어 있다.
2. 홍보, 배포 및 기금마련 캠페인 (또는 행사) 중에는 다음 상황에 따라 적십자사가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로고(표시표장으로서의 사용)를 표시할 수 있다.
  -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품의 성격이 결코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장의 품위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그로 인해 표장의 위상이 떨어져서도 안된다.
  - NS 로고가 표시된 제품은 저장화되거나 소멸되는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IHL의 보호(NS 로고의 크기를 축소)나 결코 국제적십자운동의 회원임을 암시해서는 안된다(예를 들어 캠페인을 알리는 문구나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NS 로고를 배치한다).

#### 분석

##### 개요

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캠페인에 표장 및 NS 로고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적십자사가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용 제품을 배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서 배포, 홍보 및 기금조성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행사 중에 적십자사의 표장 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경우 표장은 보호표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표장 자체의 (원래 형태로서의) 사용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본 분석이 다루는 대상은 NS 로고에 국한된다.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활동의 홍보와 효율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홍보와 기금조성이 이들의 업무 달성 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전문에 승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1년에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개정한 목적 중 한가지는 각국 적십자사가 표장과 적십자사·적신월사의 명칭에 대한 존중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의 해석을 검토하기 전에 전문에 있는 구절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개정본에 허용된 범위는 제네바 협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넓은 해석이 허용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각국 적십자사가 원할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강조 추가)

## 적십자사가 대중에게 배포 및 판매하는 제품에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1단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각국 적십자사는 본 규칙의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 활동을 널리 알리고 국제인도법 및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하는데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활동에 한해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표장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표장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sup>308</sup> 이러한 조건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또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1단락 해설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해당 로고가 있는 제품을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단 “적십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적십자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인도적 사회적 활동보다 더 큰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배포나 판매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서는 안된다.<sup>309</sup>

308 예를 들어, 동물과 관련된 제품, 선거캠페인에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제품, 담배나 무기처럼 특히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표장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309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1) 해설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명칭과 표장은 물품판매를 통한 기금 모금이나 한시적 봉사일 때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장기적 봉사일 때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데, 특히 그 봉사활동의 내용이 적십자운동체의 전통적 활동과 별다른 연관이 없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의 유사한 활동과

또한, 판매된 제품은 “축소된 크기이거나 금방 폐기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sup>310</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2항에 포함된 주요 규정 사항은 적십자사가 배포하거나 판매한 제품에 표시된 표장이 “결코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적십자운동 회원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서는 안된다.” 즉, 보호표장 및 표시표장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표장의 보호적 사용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2)에 서는 판매된 제품이 “축소된 크기”일 것을 요구된다.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제23조 제2항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표시표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NS 로고에 캠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나 그래픽 디자인을 함께 배치할 것을 장려한다.<sup>311</sup> 판매된 제품은 “전단지, 간행물, 포스터, 기념 우표, 영화, 연필 등 각종 인쇄물과 물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sup>312</sup> NS로고를 (의류와 같은) 특정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제품 사용자와 적십자사 및/또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상관관계를 암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제품에 NS 로고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sup>313</sup>

---

경쟁하듯 수행되고 있다면, 표장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10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2).

311 직원, 회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적십자가 판매하고 배포하도록 되어있는 제품의 경우, 표장의 표시적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312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2). 해설.

313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2) 해설은 “의류, 깃발, 배너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해당 물건들에 보호표장이 사용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표장에 적십자사의 이름이나 문구, 그림 등이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34

각국 적십자사는 파트너 기업이 배포 및 판매하는 제품이나 광고에 표장 및 NS 로고를 표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1 제44조와 53조 1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전문 제23조(3)과(4)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적신월사 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 권고사항

1. 2005년 대표자회의에 의해 채택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은 적십자사가 기업부문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마다 따라야 한다.
2. NS는 제휴 업체가 표장(문구를 첨가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사용하는 보호표장으로서의 사용)을 표시하도록 승인할 권한이 없다.
3. NS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파트너 기업에게 NS가 판매 또는 배포하는 제품에 기부나 다른 방식의 기여를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가)와 (3)(다)~(아)—이를 표시할 때 NS 로고를 표기하지 않으며 그러한 언급이 신중하게 지속되고, NS와 파트너 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4. NS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 기업이 업체의 광고물에 NS 로고(표시표장으로 사용)를 표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NS 로고의 크기가 작고 적십자사를 지원한다는 분명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가)와 (3)(다)~(아)를 준수하고 표장의 표시는 특정 행사나 캠페인과 연관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 그러한 표시는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적십자사와 파트너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한다.

## 분석

### 개요

NS가 파트너 기업에게 적십자 표장 및 NS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승인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분석한다.

- 업체가 판매/배포하는 제품
- 업체의 광고물

이 경우 표장은 보호표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표장 자체의 (원래 형태로서의) 사용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본 분석이 다루는 대상은 NS 로고에 국한된다.

본 연구질문 3이 보여주듯,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활동의 홍보와 효율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홍보와 기금조성이 이들의 업무 달성 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전문에 승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개정할 목적 중 하나는 표장과 적십자사나 적신월사라는 이름 때문에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고 적십자사 수입원의 다각화 및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의 해설을 검토하기 전에 전문에 있는 구절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ICRC는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개정본에 허용된 범위는  
제네바협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넓은 해석이 허용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각국  
적십자사가 원할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강조 추가)**

마지막으로, 2005년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문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적십자사는 해당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적십자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선택 기준을 결정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되며,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파트너십 계약의 필수 및 권고 요건에도 적용된다.<sup>314</sup>

314 2005년 대표자회의의 결의 제10호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 제휴기업이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NS 로고를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기업에게 판매용 제품에 표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십자사가 그 사용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sup>315</sup>

포장이나 라벨은 판매용 제품의 일부이다. 따라서 적십자사는 제휴사가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에 표장을 표시하도록 허락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판매 수익금 전액 혹은 일부가 기부되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해 적십자사는 업체가 적십자사 작업에 기부나 기타 기여사항을 언급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 요구된 (가), (다), (라), (마), (바), (사), (아) 항목을 따라야 한다).<sup>316</sup> **업체는 포장이나 NS 로고를 표시하지 않고** 특정 제품의 금액 일부를 적십자사 (혹은 구체적인 적십자 프로그램)에 기부하겠다고 언급할 수 있다. 또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4)의 설명처럼 적십자사는 “그러한 언급이 신중하게 처리되고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317</sup>

## NS 로고를 파트너 기업의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로고를 표시하도록 승인을 허락하는 경우는 “[파트너 기업의] 광고물에 그 사용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포장의 크기가 작고 적십자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기할 때”로 한정한다. 이때 설명을 통해 대중이 적십자사와 파트너 기업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sup>318</sup>

“광고물”은 해당 기업이나 제품을 광고하거나 “지속성을 의도하지” 않은 제품(포스터, 전단, 방송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포함한다. 적십자사는 이 같은 광고물에 로고를 표시할 권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며, 특히 표시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된 특정 행사나 캠페인과 연계되어야 한다.

315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해설.

316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은 다음을 명시한다.

(가) 일반대중이 기업의 활동이나 제품의 품질을 포장이나 적십자사 자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나) (...)

(다) 캠페인은 특정 활동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

(라) 안된다 관련된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 및 원칙에 역행하거나 일반대중으로부터 문제시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마) 적십자사는 기업의 활동이 표장의 품격이나 명성에 해를 끼칠 경우 언제든지 짧은 고지 기간을 두고 해당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바) 안된다 각각 적십자사가 위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얻는 물질적 또는 재정적 이익이 상당하며, 각각 적십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사) 적십자사와 파트너 기업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아) 계약은 각각 적십자사 중앙지도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3단락 해설과 연구 질문 35 참조.

317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4) 해설.

318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4). 해설

## 35

## 각국 적십자사는

- 파트너 기업의 이름/로고를 적십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가?
- 각국 적십자사는 자사 표장과 로고를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와 제53조 제1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전문 제23조 제3~4단락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 정책의 실질적 조항”

## 권고사항

1. 2005년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은 적십자사가 기업부문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마다 따라야 한다.
2. 표장 사용에 대한 규칙, 특히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적십자사 로고를 사용할 때도 전적으로 적용된다.<sup>319</sup>
3. 적십자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적십자사의 주요 파트너 기업들의 로고를 (중요한 후원자임을 인정하는 목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단,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에 입각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로 한정한다.
  - 적십자사와 파트너 기업의 정체성과 관련해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기업의 이름/로고가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예를 들어, 파트너 기업의 로고와 “XYZ 기업은 적십자사의 홍역퇴치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롭습니다”와 같은 설명 문구가 함께 표기될 수 있다).
  - 적십자사는 파트너 기업의 로고 및 이름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에 관련해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의 로고와 이름을 게시하는 것은 한 가지 특정 활동과만 연계되어야 하며 제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파트너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역행하거나 일반대중으로부터 문제시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 적십자사가 후원으로 얻는 물질적 재정적 이익이 상당해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의 로고 및 이름을 게시하는 것은 적십자사와의 서면 계약/합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적십자사 중앙지도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적십자사는 후원자의 활동이 표장의 품격이나 명성에 해를 끼칠 경우 언제든지 짧은 고지 기간을 두고 계약이나 합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4. 적십자사의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NS 로고(표시표장으로 사용)는 후원자의 광고 목적을 위해 기재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로 한정한다.

- (적십자사 웹사이트의 경우) 앞서 언급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지만 적십자사가 보유한 직접적 통제권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권고사항 3번 참조).
-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기술된 문구는 적십자사가 받은 지원의 성격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NS 로고의 게시로 인해 적십자사가 파트너 기업, 제품, 서비스, 견해 또는 정치적 입장을 광고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적십자사와 파트너 기업 사이의 명문화된 계약/합의는 다음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은 NS 로고를 기업 웹사이트에 사용하기 전에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은 적십자사가 요청할 경우 NS 로고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5. 적십자사는 제3자의 웹사이트에 표장의 게시(문구 없이 원래의 형태로 사용하는 보호표장으로 사용)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로고와 이름을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할 때는 가장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해야 한다.

## 분석

### 개요

NS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NS 활동을 위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질문은 NS가 민간부와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광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5년 대표자회의가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를 채택했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NS가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마다 해당 정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특히 NS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선택 기준을 결정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되며,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파트너십 계약의 필수 및 권고 요건에도 적용된다.<sup>320</sup> 인터넷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적용된다.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표장 및 NS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매체의 파급효과 때문에 NS (와 국제적십자운동의 전체 구성원)는 대중이 국제적십자운동이나 NS의 활동과 원칙에 대해 혼란을 느끼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표장 사용에 대한 규칙의 웹사이트 적용

GC, API, II 뿐 아니라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이 채택되었을 당시에는 분명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용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 언급된 법적 장치에 정의된 규칙을 인터넷상의 표장 사용에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GC1 제53조 제1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이나 명칭, 또는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 일자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강조 추가)

마찬가지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전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규제법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NS가 수입원을 다원화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는 표장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NS가 임무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이 NS가 파트너 기업과 체결한 파트너십과 웹사이트에서의 로고 사용을 다룬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성립된다.

## 파트너 기업의 이름과 로고를 적십자 웹사이트에 게시

NS가 자사 로고를 파트너 기업의 이름/로고와 함께 자사 웹사이트나 다른 매체에 게시할 때에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3단락을 따라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기금을 조성하거나 활동을 전파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나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상표, 로고 및 이름을 적십자사 사용 물품이나 광고물, 판매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3단락 해설에서 언급되었듯이, NS는 파트너 기업에게 받은 지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후원자를 익명으로 둘 경우 기부자를 찾거나

320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S는 후원자의 이름과 로고의 남용이나 대중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원을 공개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23조 3단락에서 NS가 파트너 기업의 이름과 로고를 적십자 웹사이트에 게시할 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에 맞게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NS와 파트너 기업 (또는 후원자의 활동이나 제품)의 정체성 사이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파트너 기업의 이름과 로고가 NS 웹사이트에 기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예를 들어, 파트너 기업의 로고는 “XYZ 기업은 NS의 홍역퇴치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와 같은 설명 문구가 함께 표기될 수 있다). 파트너 기업의 이름 및 로고는 파트너 기업의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NS는 웹사이트에 파트너 기업의 로고와 이름을 기재할 때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특히 파트너 기업의 이름 및 로고는 합리적인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의 로고와 이름의 표시는 한 가지 특정 활동과만 연계가 되어야 하며 시간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역행하거나 일반대중으로부터 문제시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라)는 “기업부문 파트너십에 대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무기 및 탄약류의 제조 및 판매, 대중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비즈니스, 또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명성이나 이미지, 표장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sup>321</sup>
- NS가 후원으로 얻는 물질적 또는 재정적 이익이 상당하되, 파트너 기업으로부터 받는 지원으로 인해 NS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의 로고 및 이름을 게시하는 것은 NS와의 서면 계약/합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NS 중앙지도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NS는 후원자의 활동이 표장의 품격이나 명성에 해를 끼칠 경우 언제든지 짧은 고지 기간을 두고 계약이나 합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sup>322</sup>

321 특히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 3.5항에 정의된 범주 참조.

322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마)는 적십자사가 파트너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알지 못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같이 당혹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한다.

##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NS 로고를 사용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제4단락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NS는] 판매용 제품에 표장의 계시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지극히 제한적이고 표장의 크기를 축소하고 적십자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할 경우에 한해” 표시하도록 승인을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제23조는 파트너 기업의 광고물에는 NS 로고 표시를 승인할 수 있지만 파트너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NS 로고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sup>323</sup> 비록 웹사이트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이 광고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웹사이트 자체가 “광고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물론 제품의 온라인 판매 전용 웹페이지를 보고 여기서 다루는 목적에 입각해 “판매제품”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NS 로고를 표시하도록 승인하는 일은 (제품의 판매와 반대로) 후원자의 광고목적에 위한 것임을 분명히해야 하고, NS 웹사이트에 파트너 기업의 로고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앞서 언급된 거의 동일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유일한 예외사항은 두 번째 조건(즉, NS가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NS 로고와 이름을 표시하는 데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겠지만, 이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파트너 기업의 이름 및 로고 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의 문구는 NS가 받는 지원의 성격을 명시해서 NS 로고 표시가 파트너 기업, 제품, 서비스, 의견 또는 정치적 입장<sup>324</sup>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NS와 파트너 기업 간의 서면 계약/합의는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은 NS 로고를 기업 웹사이트에 사용하기 전에 N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파트너 기업은 NS가 요청할 경우 NS 로고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4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의 전 세계 파급효과와 “지나친 남용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NS가 파트너 기업의 웹사이트에 로고 및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승인해야 한다.

323 연구질문 33 참조.

324 해당 조건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의 파트너십 계약의 필수요소”에서 파생된다(2005년 대표자회의의 결의 제10호 부속서 5.3.6조).

## 36

각국 적십자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그 수익이나 기금이  
 각국 적십자사에 사용되는, 각국 적십자사의 무역회사나 기타 법인이  
 각국 적십자사의 표장/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44조와 제53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5조, 제23조, 제24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적신월사 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 권고사항

1. NS 무역회사(NS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는 표장(부수적인 단어 없이 기본형태로 사용하는 등의 보호수단)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2. NS는 무역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NS 로고(표시수단)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NS 무역회사 관련

- NS 무역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인도주의적, 사회적 활동보다 NS 업무를 더 대표해서는 안된다.

- NS 무역회사는 어떤 식으로도 다음에 역행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과 기본원칙

- IHL의 원칙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기준

- NS 무역회사의 NS 로고 사용 관련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제한을 준수하며, 특히 NS 로고는 크기가 작아야 하고 부적절한 물품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게시해서는 안된다.

- 대중이 볼 때 NS 무역회사의 활동이나 그 물품의 질과 표장이나 NS 자체 간에

- 어떠한 혼동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 NS는 로고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 NS는 회사와 서면계약을 맺어 NS 로고의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해야 한다.

## 분석

### 서론

이 질문은 NS 무역회사에 의한 NS 로고 사용을 다룬다. NS 무역회사는 NS와 별개로 존재하지만 NS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으로, 그 수익은 NS에 속한다. 주주와 관련하여 NS는 항상 무역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 문제의 범위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4조(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업적 이익의 추구없이 오로지 NS와 국제적십자운동의 활동을 알리고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만 갖는 독립적 법인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sup>325</sup>

### 법률 및 정책 체계

a.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1)에 따르면, NS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거나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표장과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NS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금모금 활동을 위해 NS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NS의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NS의 인도주의적, 사회적 활동보다 NS 업무를 더 대표해서는 안된다.<sup>326</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1)이 NS 자체의 표장 사용을 다루긴 하지만 이 요건은 NS 무역회사의 판매나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b.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과 (4)는 “상업적 회사나 기타 단체”를 다룬다. 이들 단체는 NS와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다.

또한 2005년 대표자회의는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을 채택했다. NS는 기업부문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마다 이 정책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NS가 파트너십을 체결할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운동 구성원의 파트너십 계약을 위한 필수 및 권장 조건과 관련해서도 적용된다.<sup>327</sup>

325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4조(3)에 따르면, NS는 상업적 목적을 갖지 않는 법인(예: 협회나 재단)의 로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를 통제해야 한다.

326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1) 해설, 연구질문 33 참조.

NS는 상업적 회사나 기타 단체(NS 무역회사 제외)가 NS의 로고를 광고물에 한해 게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가), (다)에서 (아)에 명시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표장의 크기가 작고 적십자사가 받은 지원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최대한 절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sup>328</sup>

c.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은 NS와 협력 관계에 있지만 별개로 존재하는 상업적 단체와 달리, NS가 설립한 상업적 회사가 NS 로고를 사용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상업적 회사나 기타 단체에 대한 제23조의 언급이 NS가 설립한 상업적 회사의 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NS와 법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NS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회사가 완전히 독립적인 단체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일 것이다.

따라서 유추에 의해 NS는 그 무역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NS 무역회사와 관련, 어떤 식으로도 다음에 역행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과 기본원칙<sup>329</sup>
- IHL의 원칙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기준으로서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98년 노동자기본권선언,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포함된 인권기준<sup>330</sup>

### NS 무역회사의 NS 로고 사용 관련

-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제한을 준수하며, 특히 NS 로고는 크기가 작아야 하고 부적절한 물품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게시해서는 안된다.<sup>331</sup>
- 대중이 볼 때 NS 무역회사의 활동이나 그 물품의 질과 표장이나 NS 자체 간에 어떠한 혼동도 발생해서는 안된다.<sup>332</sup>
- NS는 로고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sup>333</sup>

327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328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4). 연구질문 34와 35 참조.

329 예컨대 종교 의류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담배나 종교적, 정치적, 또는 논란이 되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약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표장과 NS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NS 무역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수하물을 판매하는 것은 수하물의 약용 가능성 때문에 부적절하다.

330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부속서 제3.3조에서 유추.

331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1)에서 유추.

332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가)에서 유추.

333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4)에서 유추.

- NS는 회사와 서면계약을 맺어 NS 로고의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해야 한다.

## 구체적 측면

### 무역회사의 활동에 대한 NS의 통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NS가 NS 명칭과 로고의 사용 등 무역회사의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NS는 NS 로고 사용에 적용되는 조건을 공식적으로 회사측에 통보해야 한다. 예컨대 NS 내부에서 NS 로고 사용을 위한 내부 추천과 승인절차가 있다면 무역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NS는 무역회사가 녹색 바탕에 백색 십자가가 그려진 구호표지 등 다른 표지 없이 구호물품에 유명한 NS 로고를 사용하는 반면 비슷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표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무역회사가 불공정경쟁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NS와 무역회사 간의 관계 설명

우선, 카드 및 선물 카탈로그나 영화 시사회 등의 활동이나 기금모금 행사는 NS를 돕기 위해 NS 로고를 사용하여 진행하고 무역회사는 수표나 우편환 수취인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회사의 상호를 NS 로고와 함께 게시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이유로 무역회사와 NS 간의 관계를 간단히 말로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NS 자선상점이나 헌옷 판매업무 등 NS의 무역회사가 NS 로고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활동이 있을 수 있다. NS 명칭은 “블루랜드 적십자사 상점”이나 “뉴랜드 적신월사의류 대리점”과 같이 사업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NS의 소형 로고는 NS 사업의 명칭 옆에 게시될 수도 있다. 사업과 NS의 연관성은 건물 내부의 계산대 근처에 놓는 표지 또는 송장이나 유사 문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설명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블루랜드 적십자사 상점(기업등록번호 1234)은 블루랜드 적십자사(자선단체 등록번호 6789)가 전적으로 소유하며 영업의 유일한 목적은 적십자사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 NS의 무역회사 파트너의 NS 로고 사용

NS의 무역회사는 NS의 무역회사의 파트너를 포함한 어떤 단체도 NS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그러한 기타 단체들은 NS의 허가를 받고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 명시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NS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sup>334</sup>

334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 명시된 조건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34 참조.

## NS의 지배권 상실

NS가 무역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면 무역회사는 더 이상 회사 상호에 NS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NS나 국제적십자운동 외부의 주주들이 사업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며, 그 결과사업도 일차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띠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고 표장이나 NS 로고 없이 문구나 기타 인쇄물 하단부에 작은 글씨로 인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NS가 얻을 수 있는 소수의 혜택도 언급할 수 있다.<sup>335</sup>

## 결론

NS의 무역회사의 NS 로고 사용을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표장과 NS 명칭의 존엄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표장의 일차적 목적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표장의 구명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335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 명시된 조건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34 참조.

## 37

후원: 스포츠팀/선수는 홍보 및/또는 기금모금 목적을 위해  
 각국 적십자사의 표장/로고를 어느 정도로 게시할 수 있는가?  
 어떤 계약이 가능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와 제53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전문, 제2조~5조, 제23조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 권고사항

1. NS는 기업부문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2005년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2. NS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스포츠팀/선수는 대형 표장(부수적인 단어 없이 기본형태로 사용하는 등의 보호수단)을 게시할 수 없다.
3. NS(와 국제적십자운동)의 대중적 이미지와 표장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NS가 스포츠팀/선수의 NS 로고(표시수단) 게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NS가 기금모금/홍보 목적으로 스포츠팀/선수의 로고 게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후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과 특히 스포츠팀/선수와의 협력을 지지하고,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NS와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원의 중립과 독립을 해칠 수 없다.
  - 스포츠팀/선수의 행위/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장의 권위를 손상시켜서도, 표장에 대한 존중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 스포츠팀의 상의에 게시되는 NS 로고는 크기가 작아야 하며 후원임을 설명하는 짧은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가능한 한 NS 로고는 스포츠팀의 상의에 게시되는 다른 로고들과 분명히 구별되

어서 다른 로고가 대표하는 회사와 NS를 혼동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로고는 선수들이 착용하는 상의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스포츠팀/클럽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의에는 사용될 수 없다.
- NS와 스포츠팀/선수 간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서면으로 작성한다.
  - 단기간(예: 1~3년) 동안만 유효하다.
  - NS 로고의 사용과 관련하여 전술된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 NS 로고의 사용조건이 준수되지 않거나 스포츠팀/선수의 활동이나 행위로 인해 표장의 권위가 손상되면 NS는 아무런 보상 의무 없이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 분석

### 서론

NS가 기금모금 및/또는 활동 홍보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NS는 때로 스포츠팀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왔다.<sup>336</sup> 그러나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이 2005년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부문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NS는 이 정책의 조항을 존중해야 한다. NS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의 파트너십 계약을 위한 필수 및 권고 사항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다.<sup>337</sup>

많은 NS는 주요 스포츠행사에 긴급구호팀을 운영하며, 긴급구호팀의 존재는 보통 서면계약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많은 NS는 수많은 스포츠팀과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NS 긴급구호팀은 스포츠행사에서의 활동을 통해 언론에 노출될 때도 있다.

동시에 주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스포츠팀은 NS의 기금모금 활동을 지원하거나 NS의 활동을 홍보한다. 기금모금/홍보 행사는 스포츠 경기의 형식을 띠거나 유명 운동선수가 기금모금 행사에 등장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때로는 NS와 스포츠팀, 그리고 오랫동안 스포츠팀을 후원해온 민간기업(재정이나 보험

336 이 절문의 분석에서 “스포츠팀”이라는 표현은 “스포츠 선수”도 포함한다.

337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등과 관련) 간에 파트너십이 형성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NS와 스포츠팀 모두를 후원하고자 나서기도 한다.

그러한 파트너십에 NS가 제공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 스포츠팀은 선수들의 상의에 표장/NS 로고를 게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 그러한 표장/NS 로고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NS와 스포츠팀 간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스포츠팀은 선수들의 상의에 표장/NS 로고를 게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은 NS가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전문의 3단락은 다음과 같다.

“1991년에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개정된 목적 중 한 가지는 각국 적십자사가 표장과 적십자사·적신월사의 명칭에 대한 존중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은 이미 제네바협약을 폭넓게 해석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전문에서 밝힌 바대로, ICRC는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이 허용하는 범위가 “최대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규칙의 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1)에 따르면 NS는 활동을 홍보하거나 IHL과 기본 원칙의 지식을 보급하거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조직한 캠페인과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표장의 사용은 반드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 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4조 제1단락에 따르면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다른 용도 간의 혼동을 피해야 한다.” 이 경우에 보호적 사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서문에서 언급한 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크기는 비교적 작아야” 한다.<sup>338</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2)는 “해당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IHL의 보호나 국제적십자운동의 회원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된다.”고 덧붙인다.<sup>339</sup> 후자에 대한 해설에서는 의류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스포츠팀은 크기가 작은 NS 로고를 가능하다면 설명 문구와 함께 게시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340</sup> 물론 스포츠팀이 큰 NS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팀이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팀”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의 직원들이 보호적 수단으로 표장을 게시하는 백넘버를 착용할 경우에는 이들과 팀 선수들이 혼동될 수도 있다.

**b.**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가 수립한 원칙에 맞는 활동에 대해서만 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표장의 권위나 표장에 대한 존중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은 대단히 일반적면서도 표장의 권위와 표장에 대한 존중이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sup>341</sup>

따라서 해당 스포츠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NS나 국제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적 활동이나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활동과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적 이미지와 평판이 긍정적인 스포츠팀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포츠팀의 대중적 이미지와 스포츠행사를 NS 후원과 연계함으로써(기금모금이나 홍보활동을 위함) NS는 평상시에 교류할 수 없는 단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NS는 그러한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위험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실제로 프로 스포츠는 마약, 이윤추구 정책, 폭력, 홀리건 사태, 인종차별 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때도 있으며, 이는 표장의 권위와 표장에 대한 존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소한 스포츠팀의 평판과 “치신”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장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팀의 상의에 들어갈 NS 로고의 위치 역시 고심해서 결정해야 한다. 가능한 한 대중이 NS 로고와 다른 로고를 혼동하지 않고 다른 로고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c.** 또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4)는 NS가 “판매용 제품에 표장의 게시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NS가 스포츠팀의 상의에 로고 게시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팀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상의에만** 로고를 사용하고 스포츠팀/클럽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의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9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3)은 “제3조의 한도 내에서, 각국 적십자사와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공공행사나 자료에 표장을 장식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경우, “디자인의 용통성이 허용된다.” 그러나 표장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야 한다는 점에는 예외가 없으며 표장의 권위도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와 (3) 해설 참조).

340 일반적으로 볼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팀의 상의에 NS 로고가 사용된 이유를 일반대중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41 관련된 주제에 대해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5)(라)는 NS가 상업적 회사나 기타 단체와 협력하는 경우 특히 “관련된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 및 원칙에 역행하거나 일반대중으로부터 문제시 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회사의 상표를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한 표장/NS 로고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NS와 스포츠팀 간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NS가 스포츠팀에 NS 로고 사용을 허가한다고 서명한 계약에는 여러 중요한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과 (4)의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NS와 파트너 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 계약은 단기간(예: 1~3년) 만 유효하며 NS는 표장의 권위와 표장에 대한 인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특히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4)에 따라 표장의 사용에 대한 조건은 계약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하고, 이 조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NS는 아무런 보상 없이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팀의 활동이나 행위로 인해 표장의 권위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NS는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갖는다.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NS의 법률전문가들이 서면계약을 검토 및 승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경고

그러한 양자간(혹은 3자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률적, 사업적 차원에서 어려운 작업이다. NS가 국제적십자운동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NS 로고의 지위를 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사업에 착수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NS는 파트너십에서의 역할과 스포츠팀의 상의에 로고를 게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후원관계를 형성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NS에 있어서도 매우 합당한 목표이다. 그러나 표장의 사용, NS 및 더 나아가 국제적십자운동의 대중적 이미지에 대한 존중과 관련해서는 어려움과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NS와의 파트너십 차원에서 스포츠팀이 NS 로고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8

## 각국 적십자사의 간행물 표지에는 어떤 표장과 로고를 어떤 방식으로 게시해야 하는가?

### 법령적 근거

GCI 제44조 제2단락

AP III 전문 제10단락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 제3단락

### 권고사항

1.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나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원으로서 NS는 간행물에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을 나란히 게시하고(국제적십자운동을 가리킴) 국제적십자사연맹 로고를 게시할 수 있다.
2. NS는 ICRC가 승인하지 않으면 간행물에 ICRC 로고를 게시할 수 없다.<sup>342</sup>
3. NS가 간행물 표지에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로고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원사”와 같은 설명 문구를 덧붙일 수 있다.
4. NS는 최근 국제법의 발전양상(제3추가외정서 채택 등)을 고려하여 직접 출판하는 간행물에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을 그 채택 순서에 따라 게시하도록 권장된다.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그 명칭이나 표장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표장을 게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국제적십자운동의 식별표장”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별표장”<sup>343</sup>

### 분석

#### 서론

NS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나 국제적십자사연맹의 회원사이기 때문에 간행물의 앞

342 ICRC의 ICRC 로고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25 참조.

343 이는 예시 문구이다. NS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다른 문구를 선택할 수 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NS는 ICRC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 사안에 관한 ICRC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40 참조.

뒷면 표지 등에 국제적십자사연맹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NS는 간행물에 ICRC 로고를 게시할 수는 없다.<sup>344</sup> ICRC와 NS는 별개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제3추가정서 전문 10단락에 언급된 대로 제3추가정서 채택당사국은 “(…)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국제적십자운동이 현재의 명칭과 표장을 유지한다는 결정”에 유의한다.

따라서 NS가 간행물의 앞뒷면 등에 국제적십자사연맹 및/또는 국제적십자운동을 그래픽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적십자와 적신월만 게시할 수 있다.

##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그래픽 표현

NS가 간행물 앞뒷면에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표현할 때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로고에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원사”와 같은 설명 문구를 덧붙일 수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로고는 적색 직사각형 속의 흰색 바탕에 적십자와 적신월이 나란히 배치되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진 형태이다.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장

제3추가정서 전문 10단락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은 그 명칭이나 표장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도록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는 NS에게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고 소속 정부가 보급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제3추가정서를 (간행물 등을 통해) 보급하고 특히 적수정의 중요성을 보급하는 것은 NS의 의무이다.

이 같은 맥락과 최근 국제법의 발전양상(제3추가정서 채택 등)에 비추어 NS는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을 그 채택 순서에 따라 게시하도록 권장된다. 표장을 게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국제적십자운동의 식별표장”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별표장”<sup>345</sup>

이는 예시 문구이다. NS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다른 문구를 선택할 수 있다. 의문이 드는 경우 NS는 ICRC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344 ICRC의 ICRC 로고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전문 25 참조.

345 이 사안에 관한 ICRC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전문 40 참조.

## 39

## 각국 적십자사는 레터헤드(공문서신)에 어떤 표장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2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1조와 제5조

제3추가개정서 전문 제10단락, 제2조, 제3조(1)과 (2)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

### 권고사항

1. 레터헤드(공문서신)에 사용할 경우, NS는 아무런 장식 없이 디자인(NS의 명칭이나 약자가 수반된 표장)을 엄격히 준수하는 로고(표시수단)를 로고에 대한 일반규칙의 적용으로 채택해야 한다.
2. 적수정의 채택과 관련하여, 표시적 목적으로 여러 표장의 조합(AP III 제3조(1)(가)), 또는 계약당사국이 사실상 사용해왔고 AP III 제3조(1)(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NS는 선택한 표장(들)을 레터헤드 및 국외로 발송할 문건의 적수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3. 국제적십자사연맹의 회원사로서 NS는 국제적십자사연맹 로고를 레터헤드(공문서신)에 삽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원사”와 같은 설명 문구를 덧붙여야 한다.
4. 레터헤드(공문서신)에 사용할 경우, 최근 국제법의 발전양상(AP III 채택 등)에 비추어 NS는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을 그 채택 순서에 따라 게시하도록 권장된다. 운동 구성원들이 운동의 명칭이나 표장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표장을 게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국제적십자운동의 식별표장”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별표장”<sup>346</sup>
5. 국제적십자운동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NS는 레터헤드(공문서신)에 ICRC 로고를 삽입해서는 안된다.

6. 레터헤드(공문서신)는 매우 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은 자신의 로고와 외부 파트너의 로고를 레터헤드(공문서신)에 같이 게시할 수 없다. 이는 파트너의 정체성을 취하지 않기 위함이다.<sup>347</sup>

## 분석

### 레터헤드(공문서신)의 로고: 표장의 표시적 사용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와 (3) 해설은 “사람이나 사물이 각국 적십자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적 사용으로서 디자인을 엄수해야 하는 경우”와 “각국 적십자사와 운동을 홍보하려는 목표를 지닌 표시적 사용으로서 표장의 권위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디자인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또한 해설은 레터헤드(공문서신)에 표장(들)을 사용하는 것은 표시적 사용의 전자를 나타낸다고 덧붙인다.<sup>348</sup>

#### 로고에 대한 최소 요건

“순전한” 표시적 사용으로서 NS가 레터헤드와 기타 공식문서(및 간행물)에 표장(들)을 사용하는 것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시적으로 쓰이는 표장은 언제나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약자와 더불어 사용되어야 한다. 표장에 있어 주된 요소가 되는 십자나 신월[또는 수정] 위에는 어떠한 그림이나 글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바탕은 언제나 백색이어야 한다.”

따라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NS가 로고에 전체 명칭(또는 약자)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sup>349</sup>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적십자와 적신월” 등은 NS의 명칭도 약자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적십자” 등만 사

346 이 사안에 관한 ICRC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0 참조.

347 이러한 “이중로고”의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22 참조.

348 이 점에서 해설의 프랑스어 버전의 구절은 영어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Il faut ici distinguer l'utilisation de l'emblème pour indiquer qu'une personne ou un bien est rattaché à la Société, utilisation pour laquelle la rigueur du graphisme s'impose, et l'utilisation à titre de promotion de la Société et du Mouvement, où une certaine souplesse est tolérable si elle ne porte pas atteinte au prestige de l'emblème. Dans ce dernier cas, c'est à la Société nationale de juger, en fonction de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de son contexte national, s'il est possible et opportun d'autoriser un tel usage. La souplesse du graphisme pourra consister par exemple en une croix rouge sertie d'or, un croissant dont la nuance du rouge contient des gradations, une croix découpée, un emblème recouvert d'un motif. **La Société n'utilisera pas d'un tel graphisme sur les bâtiments qu'elle utilise, ni sur son papier à lettres, puisqu'il s'agit là de l'évidence de cas d'usage indicatif.**” (“각국 적십자사와 연관된 사람이나 사물을 표시하기 위해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 디자인을 엄수해야 하는 경우, 각국 적십자사와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서 표장의 권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일정 수준의 융통성이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각국 법령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각국 적십자사는 그러한 용도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결정할 수 있다. 융통성 있는 디자인에는 금색 바탕의 적십자, 진하기가 다른 붉은색을 사용한 적신월, 오렌색 십자가, 무늬가 들어간 표장 등이 포함된다. **각국 적십자사는 사용하는 건물이나 레터헤드에 그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 (강조 추가)

349 전체 명칭이나 약자”이란 국가가 NS로 설립하고 ICRC가 인정한 명칭을 말한다. NS의 명칭이나 약자는 적십자/적신월/적수정의 좌측 또는 우측이나 표장 아래, 또는 다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용하는 것은 매우 모호하다.

대중들이 국제적십자운동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혼동할 심각하고도 분명한 위험도 있다. 모든 NS가 각국의 국명을 생략하고 로고에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또는 그 조합만을 사용한다면 서로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 로고에 대한 최대 요건

표시적 기능을 하는 표장(로고)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의 두 번째 문장<sup>350</sup>에 규정된 대로 NS의 명칭이나 약자가 표장에 더해지는 등 엄격한 디자인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디자인에 장식적 요소를 추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제적십자운동의 각 구성원(NS, 국제적십자사연맹, ICRC)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NS는 ICRC의 로고와 혼동되도록 표장을 1개나 2개의 원(“원형”)에 넣어서는 안된다.<sup>351</sup>

### 적수정의 사용

적수정을 표시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AP III 제3조(1)과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제3추가 의정서 표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계약당사국의 단체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 표시적 목적으로 이 표장 내에 다음 표장의 합체를 선택할 수 있다.
  - 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승인된 식별표장 또는 이 표장의 결합.
  - 나) 계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하게 사용되었고, 본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수탁국을 통하여 타방 계약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통보된 또 다른 표장.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3의정서 표장 내에 또 다른 표장의 합체를 선택하는 각국의 단체는 당해 국가의 입법에 따라 그 표장[또는 그 표장의 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역 내에서 이를 게시할 수 있다.”

따라서 NS가 적수정을 표장으로 채택하려면(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함) 표시적 목적을 위해 적수정 안에 기존 표장 하나 또는 표장의 조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50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 해설 참조.

351 ICRC가 원형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865년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퀴스타브 브와니에와 앙리 뒤낭의 <3차 제네바 회담: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국제상설위원회(3ème Circulaire: Le Comité International de Genève à Messieurs les Présidents et les Membres des Comités de Secours aux militaires blessés dans les divers Pays)>, 제네바, 1865년 7월 31일, 참조.

적수정을 택한 경우, NS는 “적수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적색 테두리 내부에 포함된 표장(또는 표장의 조합)의 이름을 채택할 수 있다. “적수정사”, “적십자사”, “적신월사”, “적십자사적신월사”는 AP III 제3조(1)과 (2)에 나온 대로 NS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이다.

레터헤드의 경우,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NS의 로고의 표장(들) 명칭과 인접한 위치에 국가명(또는 그 형용사)을 언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P III 해설(제3조(2))은 NS가 적수정에 포함된 표장(들)의 명칭을 항상 그 이름으로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두리가 없는 표장 조합(AP III 제3조(1)(가))이나 “계약당사국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의정서 채택 이전에 수탁국을 통하여 타방 계약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통보된 또 다른 표장”(AP III 제3조(1)(나))은 국경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352</sup>

예컨대 NS가 “적십자사적신월사”라는 명칭을 선택한다면 국경 밖에서 적수정 내에 포함되지 않은 적십자와 적신월을 표시적 수단으로 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표장의 조합을 사용하거나 계약당사국이 사실상 사용해왔고 AP III 제3조(1)(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NS는 적수정 내에 포함하지 않은 한 선택한 디자인이나 그림 배치를 레터헤드나 국외로 발송할 문건에 게시할 수 없다. 국외로 발송할 편지나 문건의 경우, NS는 선택한 표장(들)을 적수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각국 적십자사 레터헤드(공문서신)에 게시되는 다른 단체의 로고<sup>353</sup>

### ICRC 로고

전술한 대로, NS가 ICRC 로고와 비슷한 로고를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십자운동의 각 구성원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권고의 논리에 따라, NS는 ICRC 로고를 (“순전히” 표시적으로) 레터헤드(공문서신)에 추가할 수 없다.

NS와 ICRC 모두 동일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둘은 별개의 독립적 존재이다. ICRC 로고를 NS 레터헤드에 포함시키는 것(또는 ICRC가 NS 로고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경우)은 운동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에 불필요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352 <제3추가개정서 해설>, 제3조(2), p. 192.

353 NS 간행물이나 문서에 사용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그래픽 표현에 대한 분석은 연구절문 38 참조.

## 국제적십자자연맹 로고

국제적십자운동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NS는 국제적십자자연맹의 회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NS는 국제적십자자연맹의 로고를 레터헤드에 삽입할 수 있으며<sup>354</sup> 여기에는 “국제적십자자연맹 회원사” 등의 설명 문구가 수반된다.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장

AP III 전문 제10단락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은 국제적십자운동의 명칭이나 표장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도록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는 NS에게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고 소속 정부가 보급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제3추가과정서를 (간행물 등을 통해) 보급하고 특히 적수정의 중요성을 보급하는 것은 NS의 의무이다.

최근 국제법의 발전양상(AP III 채택 등)에 비추어 NS는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을 그 채택 순서에 따라 게시하도록 권장된다. 표장을 게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국제적십자운동의 식별표장” 또는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별표장”<sup>355</sup>

## 외부 파트너의 로고<sup>356</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서 설명된 것처럼, 레터헤드에 사용되는 로고는 표장을 표시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357</sup> 이는 로고가 NS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독립과 중립, 공평을 확보하고 국제적십자운동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한다는 대중과 전투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외부 파트너의 정체성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은 외부 파트너의 로고를 레터헤드에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354 상기할 사항: 국제적십자자연맹의 로고는 직사각형 안에 들어간 적십자 및 적신월과 “국제적십자자연맹”이라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355 이 사안에 관한 ICRC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40 참조.

356 이러한 “이중로고”의 사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은 연구절문 22 참조.

357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5조(2)와 (3) 해설.

## 제2부

### C. ICRC에 의한 사용

#### 40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 관련 간행물에 어떤 표장을 게시해야 하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3단락

AP III 전문 제10단락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5조(2)(사)

ICRC 정관 제4조(1)(사)

#### 권고사항

1. 원칙적으로 ICRC는 표장이나 기타 국제적십자운동 관련 사안에 관련된 모든 간행물에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을 게시해야 한다.
2. 표장의 게시는 채택의 시간적 순서를 반영해야 한다. 적십자가 가장 먼저 채택되었고, 그 후에 적신월이, 마지막으로 적수정이 채택되었다.
3.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국제적십자운동의 명칭이나 표장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도록 표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운동 사안에 관련된 ICRC 참고서류의 표지에 게시되는 세 가지 식별표장에는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ICRC는 다음 문구를 선택했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식별표장”<sup>358</sup>

#### 분석

#### 서문

AP III 전문 제10단락에서 계약당사국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국제적십자운동이 현재의 명칭과 표장을 유지한다는 결정”에 유의한다.

358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원들이 국제적십자운동과 관련된 문서/간행물에 표장을 게시하는 것과 관련된 권고사항은 연구절문 38과 39 참조.

국제적십자운동의 현 명칭이나 표장을 변경하려는 모든 공식 결정은 운동의 법률적 기구(추측컨대 국제적십자회의)만이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AP III 전문 10단락은 국제적십자운동 사안에 관련된 정보 인쇄물이나 기타 문서의 표지 등에 교호적 목적을 위해 세 가지 식별표장(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십자운동 핸드북 표지 등 ICRC **참고서류**에 표현된 표장에는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보급 목적의 ICRC 간행물에 식별표장 게시

보급 목적의 간행물에 **적수정**을 게시하려는 ICRC의 동기와 관련하여 다음 두 인용구는 매우 중요하다.

- 무력충돌 중 전투부대와 민간인들은 일반 민간인 전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보호수단으로서의 적수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표장은 적수정과 적신월과 마찬가지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5조(2)(사)와 ICRC 정관 제4조(1)(사) 모두 ICRC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IHL 지식의 이해와 확산을 위해 일하고 그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ICRC는 비교적 최근의 AP III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내용을 보급할 의무가 있다.

표장이 게시되는 순서와 관련하여, ICRC는 적십자(1863~1864년에 공식 인정), 적신월(1929년에 공식 인정), 적수정(2005년에 공식 인정)의 채택 순서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 ICRC 참고서류에 식별표장 게시

AP III 전문 10단락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이 새로운 그래픽 표현을 채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운동 사안에 관련된 ICRC **참고서류**에 게시되는 세 가지 식별표장에는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ICRC는 다음 문구를 선택했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식별표장”<sup>359</sup>

359 조사 ‘의(of)’는 광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설명 문구에 쓰인 표현은 세 표장이 더해져서 국제적십자운동의 그래픽 표현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 41

## ICRC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명칭과 로고,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3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 서문

여기서는 ICRC가 그 명칭과 로고, 이미지의 사용과 관련된 상업적 사안에 대하여 채택한 수단들을 제시하며, 그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재화와 서비스 공급자들의 ICRC 명칭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지침
- 기금 모금을 위한 적십자 표장 및 ICRC 명칭과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
- ICRC 기업지원단

ICRC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전문에 언급된 대로, ICRC는 “개정판에서 허용된 범위는 제네바협약의 체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넓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지침과 정책은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특히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에 정의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른 관련 법령적 기반은 GC I 제44조 제3단락과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의 실질적 조항”(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부속서)이다.

이 부분의 구조는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과 약간 다르다. 권고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대신 ICRC가 그 명칭과 로고, 이미지 사용에 관련된 상업적 사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었는지 제시되어 있다.

NS가 이 지침과 정책이 각자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ICRC는 NS가 비슷한 수단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 재화와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ICRC 명칭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지침

### 목적

2005년 9월에 채택된 현 지침은 ICRC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하 “공급자”)의 ICRC 명칭 및 이미지 사용<sup>360</sup>을 위한 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지침은 ICRC가 어떤 조건에 따라 공급자에게 홍보 목적의 명칭이나 이미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다.<sup>361</sup>

지침의 목적은 ICRC의 이미지, 명성,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또한 ICRC와의 파트너십이 매력력을 유지하고 파트너 기업에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 ICRC의 명칭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독점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일반원칙

공급자는 ICRC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sup>362</sup> 이 로고는 ICRC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파트너 기업만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 전에 ICRC는 이 공급자들의 활동과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sup>363</sup>

원칙적으로 공급자는 홍보 목적으로 ICRC를 언급할 수 없다. ICRC가 공급자들과 체결하는 계약은 사전 승인 없이 ICRC 또는 적십자나 적신월 표장<sup>364</sup>의 명칭, 이미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공급자가 “ICRC”(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명칭이나 ICRC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먼저 ICRC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ICRC는 판매물품에 그 명칭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조건

ICRC의 명칭이나 이미지 사용 허가와 그 허가를 확인하는 증명서<sup>365</sup>는 다음 조건에 따라 서면 공급자들에게 부여된다.

360 ICRC의 명칭은 “ICRC”라는 약자(또는 “CICR” 등)나 “국제적십자위원회”라는 전체 명칭(또는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ICRC의 이미지는 ICRC와 그 활동을 표현한 것이다(예: ICRC 배지를 착용한 대표, ICRC 깃발을 단 건물, ICRC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나 트럭).

361 홍보에는 홍보전략과 활동(언론과의 관계, 웹사이트, 마케팅 활동, 캠페인, 시청각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공급자가 직원이나 회사들과 갖는 내부 의사소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362 ICRC 로고는 CICR이라는 약자(또는 ICRC 등) 위에 위치한 두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심원 안에는 적십자와 “COMITE INTERNATIONAL GENEVE”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363 ICRC 본부의 기업파트너십 책임자가 윤리적 평가의 책임을 맡는다.

364 표장은 전시에 보호표장으로 사용된다. 표장의 오용이란 체내바혈약과 추가의정서가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모든 사용을 말한다.

365 허가가 주어진 이후 ICRC는 뒷면에 공급자의 ICRC 명칭 및/또는 이미지 사용 계획을 설명한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 ICRC의 명칭이나 이미지의 사용으로 인해 대중이 ICRC와 공급자의 활동 및/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 ICRC의 명칭과 이미지는 분명히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
- ICRC의 명칭과 이미지는 실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ICRC는 공급자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명칭 및 이미지 사용으로부터 물질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sup>366</sup>

공급자의 정책이나 활동이 기업부문 파트너십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면,<sup>367</sup> ICRC는 공급자가 ICRC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서는 안된다. ICRC는 공급자와의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 허가의 철회

ICRC는 공급자의 활동이 ICRC의 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 법적 근거

ICRC는 적십자/적신월 표장, 상표, 인격의 보호에 대하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 법률, 그리고 공급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이 최소한 스위스 법률 수준에서 보호를 제공한다면 공급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66 비윤리적인 관점(원가회수)에서 볼 때,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투자액을 예상 이익보다 훨씬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은 공급자가 부여하는 유리한 판매조건 등의 형태를 띌 수 있다.

367 이 정책은 200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정책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은 운동의 목적과 원칙에 역행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없다(무기 생산, 인권이나 IHL 및 노동법 침해,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 국제적십자운동의 운영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등).

ICRC 명칭이나 이미지 사용 허가를 확인하는 증명서<sup>368</sup>

ICRC 명칭 및 로고 사용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
	<b>XXX 기업</b>	스위스 제네바
	<b>주소</b>	avenue de la Paix 19
	<b>우편번호/도시</b>	(우편번호 1202)
	다음의 기간 동안 ICRC 명칭 및 로고를 사용 (조건은 뒷면에) 하도록 허가한다.	전화) +41 22 734 60 01 팩스) +41 22 733 20 57 www.icrc.org
<b>XXXX년 XX월 XX일부터 XXXX년 XX월 XX일까지</b>		
허가 주체		<b>ICRC</b>
XXXXX      XXXXX		
제네바, XXXX년 XX월 XX일		

## 기금모금 목적의 적십자 표장 및 ICRC 명칭과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

이 지침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표장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제공한다.

### 서문

흰색 바탕에 적십자가 있는 **적십자 표장**은 **보호의 상징**(보호적 사용)이며 국제적십자운동 소속임을 상징(표시적 사용)한다. 무력충돌 시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이 피해자 및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에게 부여한 시각적인 보호 표시이다. 평시에 적십자 표장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설립주체로 둔 국제적십자운동과 연관된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적십자 표장은 국제적십자운동의 7가지 기본원칙인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봉사, 단일, 보편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 ICRC 로고의 사용

국제적십자운동의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 따라 ICRC는 직접 조직하는 기금모금 행사나 캠페인에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다음 조건에 따라 그러한 행사나 캠페인에 연관될 수 있다.

<sup>368</sup> NS는 NS 이미지 사용 허가에 대하여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은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NS가 이러한 관행과 증명서 건본 활용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화와 서비스 공급자들의 ICRC 명칭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지침은 증명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

- 대중이 볼 때 기업의 활동이나 그 상품의 품질과 ICRC 로고나 ICRC 그 자체 간에 어떠한 혼동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 행사나 캠페인은 한 가지 특정활동과만 연계되어야 하며, 따라서 로고의 사용은 시간적으로 제한된다.
- 관련된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 및 원칙에 역행하거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문제시 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 ICRC는 기업의 활동이 표장이나 ICRC 로고에 대한 존중이나 그 특권을 훼손한다면, 언제라도 짧은 고지기간을 두고 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예고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ICRC가 행사나 캠페인을 통해 얻는 물질적 또는 재정적 이익이 상당해야 한다.
- ICRC는 판매용품에 ICRC 로고 게시를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판매용품에 동봉되는 별도의 리플렛과 기업의 광고물에는 로고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ICRC 로고가 들어간, 동봉되는 리플렛과 모든 종류의 광고물에는 행사나 캠페인, ICRC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익금 용처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ICRC 로고의 크기는 전체 크기를 고려할 때 합당한 비율이어야 한다.
- ICRC 로고를 게시하는 모든 광고는 인쇄나 제작 전에 ICR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CRC 명칭의 사용

위의 지침은 “국제적십자위원회”라는 명칭과 약자인 “ICRC”의 사용에도 적용된다. 정확한 명칭과 약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각각 다음과 같다.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CICR)
- Internationales Komitee vom Roten Kreuz (IKRK)
- Comité Internacional de la Cruz Roja (CICR)

다른 언어의 정확한 명칭과 약자는 요청 시 제공될 것이다.

## ICRC 기업지원그룹

수십 년 동안 ICRC는 민간 및 군 당국, 국제단체, NGO, 학술기관 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민간공급자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ICRC가 재계와 체계적인 계약을 맺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90년대 말, 여러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둔 ICRC는 전문지식과 노하우 등을 교환하고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를 느꼈다. 이때문에 ICRC는 최근 스위스에 기반을 둔 일단의 기업들과 접촉하여 **기업지원단(CSG)**을 창설했다.

CSG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철저한 윤리의식을 지니고 ICRC 원칙 및 가치와 양립가능한 정책과 활동을 수행
- 6년간 3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기부를 약속
-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에 정의된 조건을 충족<sup>369</sup>
- 아래 제시된 “파트너십을 위한 윤리원칙”을 충족<sup>370</sup>

### 파트너십을 위한 윤리원칙

ICRC의 기업 파트너십 윤리원칙은 ICRC 및 ICRC를 지원하는 기업들 간의 관계를 위한 체계를 세우며 국제적십자운동의 원칙, 국제적십자운동정관, ICRC 자체의 구체적인 임무와 조화를 이룬다.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결정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한 후에 사례별로 이루어진다.

- 절대우선순위 차원에서 ICRC는 ICRC의 임무 수행능력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다.
- ICRC는 해당 기업의 정책과 활동이 국제적십자운동정관과 ICRC의 구체적 임무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간부문의 지원을 받는다.
- ICRC는 파트너십이 ICRC의 대중적 이미지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한다.

이러한 결정을 돕기 위해 ICRC는 다음과 같은 윤리기준을 세웠다.

369 2005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10호 부속서 “기업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적십자운동 정책의 실질적 조항”

370 이 원칙은 기업 파트너와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반드시 부속서로 첨부되어야 한다.

- ICRC는 직접적인 무기 생산 및 판매에 연관되어 있거나 그러한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 ICRC는 전 세계 분쟁취약지역에 주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알게 된 IHL 위반에 연루된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 ICRC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과 기본적 노동기준,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기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과 노동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 ICRC는 건강에 유해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널리 인정되는 규칙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 ICRC는 해당 기업의 제품, 정책 또는 활동을 둘러싸고 대중 사이에 주요 논란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한다.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보고서와 평가서 및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얻은 기타 정보에 판단 근거를 둔다.

ICRC는 전술된 기준을 충족하기로 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원칙 및 환경자원의 생태적 관리를 중시하고 시행하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선호한다.

CSG 회원들은 기부금을 ICRC를 위한 재단의 자본이나 “기부기금”에 할당하거나 현장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직접 할당할 수 있다. CSG 회원들은 이를 조합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ICRC 직원의 지속적인 훈련을 위해 사용된다.

CSG 회원들은 ICRC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의 혜택을 받는다. CSG의 회원신분은 기업들에게 다음의 혜택을 부여한다.

### 진정한 전 세계적 인도주의 단체와의 특권적 관계

CSG 회원은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인도주의적 재난은 어떤 식으로든 이들 기업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ICRC는 인도주의적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몇 안 되는 전 세계적 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기업파트너에게 있어 CSG 회원이 된다는 것은 ICRC와 장기적, 독점적, 특권적 관계를 형성하여 양측 모두 긴급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

요청 시 ICRC는 기업파트너가 직원, 의뢰인, 특별 고객, 공급자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조직하고자 하는 특별행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ICRC 활동책임자는 현장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하기 위해 발표를 할 수 있다. ICRC 임원이나 전문가는 위기관리, 보건서비스, 물 처리 및 공급, 위험평가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CRC는 뉴스속보, 영상, 포스터, 간행물,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분쟁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독점적 회의, 정보 및 기술 교류

기업파트너는 ICRC와의 회의와 정보교류 측면에서 독점적인 혜택을 누린다.

ICRC는 CSG 회원들과 상호의 이해에 결부된 전략적 사안에 초점을 둔 연례 고위급 회의를 조직한다.

특정 사안(예: 지정학적 경향, 위기 시 의사소통 및 요원관리, 위험평가)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기업파트너와 ICRC 간에는 고위급 임원 차원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 이미지와 홍보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CSG 회원들에게 일정한 특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반드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CSG 회원신분에 따라 회원기업들은 ICRC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아래 제시된 것처럼 ICRC의 명칭, 이미지, 로고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예시와 같은 “ICRC 기업파트너”는 오직 CSG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



CSG 회원들은 이 예시를 기업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제품과 서비스를 광고, 마케팅,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또한 앞서 제시된 “기금모금 목적의 적십자 표장 및 ICRC 명칭과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p.204 참조)은 CSG 회원들과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항상 첨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ICRC는 ICRC의 기관 홍보물(예: 연례보고서)을 통해 기업파트너들의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 CSG 회원 목록은 ICRC 웹사이트 기업지원 항목에 게재된다.

## 제2부

### D. 다른 주체에 의한 사용

#### 42

이미 각국 적십자사가 공인된 국가에서 “적십자사”, “적신월사” 또는 “적수정사”로 등록된 NGO나 민간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38조, 제53조 제1단락, 제54조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조(3)과 (4), 제4조(2)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단일)

#### 권고사항<sup>371</sup>

1. 공인된 적십자사/적신월사가 있는 국가에서 “적십자사”나 “적신월사”(또는 “적수정사”)로 등록된 NGO나 민간기업은 명칭과 표장의 사용규칙 및 ‘단일’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는 금지된다.
2. 이 경우 공인된 NS는 관할 국가당국과의 협의 하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démarches)’에 착수해야 한다.
  - 원만한 개입(해당 NGO나 민간기업과 접촉)
  - 등기소에 해당 NGO나 민간기업의 “등록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
  - 해당 NGO나 민간기업에 대한 사법절차 착수
3. 표장 사용에 대한 규칙이 적절히 존중되도록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당국의 책임이며, NS는 당국에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조치(démarches)’는 NS 및/또는 당국이 취하되 반드시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이러한 차원에서 NS의 ‘조치(démarches)’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371 이 권고사항은 ICRC의 명칭 및/또는 표장을 사용하는 NGO나 민간기업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준용된다. NS 역시 동일한 논거를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유사한 해결방식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서 프랑스어 ‘démarches’는 표장사용 규칙 위반에 대응하여 취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 분석

### 서문

공인된 NS가 있는 국가에서 “적십자사”, “적신월사” 또는 “적수정사” 단체가 등록<sup>372</sup>되는 상황은 몇몇 국가에서 발생한 바 있다.

NGO나 민간기업이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으로 등록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사정이나 법률 체계에 따라 다양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등기소에 위탁사업체(trust)로 등록
- 단체등록소에 단체(society)로 등록
- 회사법에 따라 회사등록소에 자선단체(charitable company)로 등록
- 협회법에 따라 민간 법협회(law association)로 등록
- 해당 법률에 따라 NGO로 등록

### 무엇이 문제인가?

이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옹호할 수 없다.

#### 명칭과 표장의 오용

GCI 제53조 제1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이나 명칭, 또는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 일자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GCI 제54조는 “채약당사국은 그들의 국내법이 이미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면 제53조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의 명칭과 표장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며, 각 국가는 국가 제정법을 통해 그러한 보호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sup>373</sup> 이 국내법은 공인된 NS를 포함하여

372 “등록(registration)” 대신 “법인적 부여(incorporation)”란 단어가 사용될 때도 있다.

373 이 점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4와 45 참조.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의 명칭과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를 정의한다.<sup>374</sup>

따라서 그러한 명칭 및/또는 표장의 오용은 금지되며 관할당국에 의해 방지 및/또는 중단 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에 공인된 NS가 이미 존재할 때 어떠한 단체가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의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오용에 해당된다.

### 기본원칙의 “단일” 위반

‘단일’이라는 기본원칙(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전문에 포함됨)은 다음과 같다. “각 국가에는 단 하나의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만 존재한다.”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4조(2)는 “각국 적십자사나 적신월사로 공인되기 위해서는 (...)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고 (...) 해당 국가의 유일한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NS가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적십자사/적신월사로 공인된다. 이 공인은 보통 NS의 지위를 정의하는 국내법이나 법령에 포함된다.<sup>375</sup> 이 조항은 보통 NS의 규정에 포함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등기소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관청이 그러한 조항이 포함된 규정에 근거하여 NS를 등록하거나 법인격을 부여한다면, 표장을 사용하는 다른 단체에 대한 등록이나 법인격 부여는 논리적 오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영토에서 다른 적십자/적신월/적수정 단체에 대한 공인된 NS로서의 등록/법인격 부여는 공인된 NS뿐만 아니라 책임관청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조(3)과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 특히 그 영토 내에서 구성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로 공인한 국가는 가능한 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

국가는 모든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 의한 기본원칙 준수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국제적십자회의의 회원으로서 국가들은 국제적십자운동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인된 NS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는 최소한 국제적십자운동정관의 조항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374 법률적 전통과 체계에 따라 이 제정법은 제네바협약법, 표장의 사용 및 보호에 대한 특정법 등이 될 수 있다.

375 국제적십자운동은 1999년 국제적십자회의의 체계 내에서 NS 공인에 관한 모델법을 개발했다. 모델법 제1.3조는 그러한 제정법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요건 가운데 하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해당 국가)의 유일한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가 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NS가 ICRC의 공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의 일부이다.

## 사용할 논거

다음 논거는 NS(와 국가당국)가 논의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개발한 것이다.

- a.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의 표장과 명칭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며(특히 GCI 제38조와 제53조), 당국은 표장과 명칭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GCI 제54조).
- b. 이 표장과 명칭은 또한 권리 없이 표장/명칭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호된다.
- c. 표장의 오용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이는 국제적십자 운동에 대한 전투부대와 민간인들의 존중을 약화시키며, 따라서 운동의 인도주의적 사명 실현능력을 저해한다. 오용은 표장과 명칭의 중요성에 대한 혼동도 야기하며, 그 결과 무력충돌 시 표장과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자들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약화시킨다.
- d. 공인된 NS는 국내법(공인법이나 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공인되었다. 공인된 NS가 해당 국가의 유일한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그 법률조항은 ‘조치(démarches)’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e. 표장과 명칭을 오용하는 단체에 대한 등록/법인적 부여는 ‘단일’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한다. 기본원칙은 해당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십자회의가 1986년에 채택한 국제적십자운동정관에 포함되어 있다.
- f. 표장을 오용하는 단체에게 대안적 표장과 명칭이 제시되어야 한다(예: 적색 대신 녹색, 녹신월, 녹수정).<sup>376</sup>
- g. 원만한 개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국내법을 기반으로 소송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최소한 열려있어야 하며 표장을 오용하는 당사자에게 언급되어야 한다.

## 문제해결 단계

표장 오용의 모든 사례에서 오용을 중단시킬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당국에 있다. NS는 그러한 경우에 당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S와 관할 국가당국 간의 협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NS이기 때문에 NS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은 NS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당국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NS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démarches)’를 주도해야 한다.

376 다른 대안적 표장의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6 참조.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그러한 경우에 NS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sup>377</sup>

NS는 다음 순서에 따라 ‘조치(démarches)’를 취하도록 권고된다.

- a. 언제나 NS가 취해야 할 첫 단계는 관할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와 공식적으로 접촉(구두 또는 서면, p. 215의 서한 견본 참조)하여 명칭이나 표장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위에서 개발된 논거가 이 첫 ‘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용사례 대부분은 기존 규칙을 알지 못해 발생한다. 논의 중인 사안 역시 분명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
- b. 이후 NS는 관련당국에 서한을 보내 GC, 그 추가의정서, 국내법의 조항에 맞도록 해당 단체가 표장과 명칭을 변경하도록 서한을 발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당국은 IHL 시행이나 표장 보호를 책임져야 할 부처이거나 NS 사안이 업무에 포함되는 부처일 수 있다.
- c. 해당 단체가 표장과 명칭 변경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NS 및/또는 관련당국이 취할 다음 단계는 적절한 등기당국에 서한을 보내서 해당 단체를 등기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p. 217의 서한 견본 참조). 등록/법인적 부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단체에 대한 법적인 “등록/법인적 부여”는 가능하지만 다른 표장과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d. 표장과 명칭 변경을 거부할 시, NS 및/또는 관련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sup>378</sup> 그러면 법원은 해당 단체가 표장(과 명칭)을 오용했다고 판결하고 표장과 명칭의 변경(과 해당 법률에 정의된 벌금 부과)을 명령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소송절차의 복잡성과 승소 확률, 비용과 소송기간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소송에서도 NS는 관련당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당국이 직접 소송을 주도하지 않는 경우).

## 조력 요소

### 법률

IHL의 시행과 표장 보호를 위해 국가가 채택한 국내 법률의 질과 정확성이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법률이 명확하면, 표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당사자가 왜 표장과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377 표장 오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당국과 NS, ICRC의 역할의 구체적 설명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3부, Chapters A~D 참조.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경우, 당시 연맹 제19차 이사회(1946년 옥스포드에서 열림)의 결의 제9호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사회는 각국 적십자사와 동시에 다른 단체가 불법적으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리그가 이 상황에 개입하고 각국 정부가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각국 적십자사의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378 국가 사정에 따라 절차와 관할법원은 다른 유형의 법령에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 이유를 이해하고, NS는 논거를 개발하고 법원은 적절한 결정(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마찬가지로, NS의 법적 지위와 NS만이 해당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NS라는 사실이 NS에 관한 법률/법령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면 해당 단체와 필요 시 법원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

따라서 NS는 관련당국이 적절한 법률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ICRC는 NS와 국가들이 적절한 법률의 틀을 만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모델법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모델법
- 역시 ICRC 자문서비스가 작성한 제네바협약 모델법
- 제27차 국제적십자회의가 채택한 2000~2003 활동계획에 언급된 NS 공인에 관한 모델법<sup>379</sup>

## 보급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NS의 역할,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 표장 및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칙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장의 오용이 이러한 규칙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NS가 보급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는 것은 이러한 “이중 NS”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sup>380</sup>

379 결의 제1호 제2부속서 최종목록 3.3항 14(b)호.

380 물론 ICRC 대표단은 그러한 보급 활동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NS의 결정에 따라 전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 별첨 1

## 각국 적십자사가 NGO/민간기업/협회에 보내는 서한 견본

담당자 귀하

최근 귀 기관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명]의 유일하게 공인된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로서 귀 기관의 명칭과 표장을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의 표장과 명칭은 전쟁피해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특히 제1제네바협약 제38조와 제53조)과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호됩니다. 제네바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명]은 이 표장과 명칭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제1제네바협약 제54조).

이에 따라 [국가명]의 국내법을 역시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의 표장과 명칭을 보호하며 권리 없이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XXXX법/법률/법령 XXXX절 참조).

모든 경우에 표장이나 명칭의 오용은 국제적십자운동에 대한 전투부대와 민간인들의 존중을 약화시키며, 이에 따라 운동의 인도주의적 사명 실현능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표장과 명칭의 중요성에 대한 혼동도 야기하며, 그 결과 무력충돌 시 표장과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자들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약화시킵니다.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는 [연도]에 설립되었고 [공인 법/법률/법령명]에 따라 공인되었습니다. 이 [법/법률/법령]은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가 [국가명] 영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적십자/적신월/적수정의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명]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7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제네바협약 당사국이 참여하여 투표한 1986년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적십자운동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 중 하나인 ‘단일’이라는 기본원칙은 “모든 국가에는 오로지 하나의 적십자사 또는 적수정사만 존재할 수 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그 영토 내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추어 적십자/적신월/적수정 명칭과 표장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귀 기관의 명칭과 표장을 [“녹십자/녹신월/녹수정”]의 명칭과 표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길 권고합니다. 이는 귀 기관에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XXXXXXXXXX 드림

참조: [IHL 시행/표장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  
[업무에 NS가 포함되는] 부처  
ICRC 대표단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단

## 별첨 2

### 각국 적십자사가 등록/법인격 부여 관청에 보내는 서한 견본

담당자 귀하

최근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가 [XXXX 법률/법/법령]에 따라 NGO로 등록되었다는/기업으로서 법인격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는 [연도]에 설립되었고 [공인 법/법률/법령명]에 따라 공인되었습니다. 이 [법/법률/법령 XXXX조/절]에 따라,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는 [국가명] 영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입니다.

따라서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에 대한 등록/법인격 부여는 [국가명]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제네바협약법[정확한 법률/법/법령명, XXXX조/절]은 적십자/적신월/적수정 명칭과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승인 없이 그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형사상]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에 대한 등록/법인격 부여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국가명]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 각국 적십자사로 구성된 국제적십자운동은 7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제네바협약 당사국이 참여하여 투표한 1986년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적십자운동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 중 하나인 ‘단일’이라는 기본원칙은 “모든 국가에는 오로지 하나의 적십자사 또는 적수정사만 존재할 수 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그 영토 내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에 대한 등록/법인격 부여는 ‘단일’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추어 XXXX 적십자사/적신월사/적수정사에 대한 NGO/기업으로서의 등록/법인격 부여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명]에서 이 단체/기업에 대한 등록/법인격 부여의 취소나 철회를 요청합니다.

XXXXXXXXXX 드림

참조: [IHL 시행/표장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  
[업무에 NS가 포함되는] 부처  
ICRC 대표단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단

## 43

## “자발적 기금모금자”는 표장/각국 적십자사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53조 제1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조~5조와 제23조

## 권고사항

1. 일반적으로 GC I 제53조 제1단락에 따라, 제네바협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표장, 또는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을 위한 기금조성을 포함한 그 무엇이든 항상 금지한다.
2. 사전에 NS에 알리지 않고 기금모금을 수행하는 사법인이나 단체는 NS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3. NS는 식별표장(또는 그 모방)을 게시하지 않는 특별 로고를 만들어 요청이 있을 시 “자발적 기금모금자”가 게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 제한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 대중이 볼 때 기금모금자의 활동이나 그들의 상품의 질과 NS 자체 간에 어떠한 혼동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 로고의 게시는 한 가지 특정한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간과 지리적 범위를 제한하도록 권고된다.
  - 해당 기금모금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 및 원칙에 역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문제시 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 분석

### 서문

언론 보도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을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와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이는 공동체 내의 연대성 구축에 기여한다. 그러한 위기는 민간 개인이나 단체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을 위해 시행하는 자발적 기금모금 사업과 캠페인으로 이어질 때가 많으며,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이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을 갖지 못할 때도 있다.

국제적십자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목적의 제3자에 의한 자발적 기금모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나 활동에서 제3자는

- 단순히 NS로 직접 기부하도록 기부자들을 독려하거나(“a 유형”)
- “적십자사/적십원사”에 모인 수익금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은다(“b 유형”).

### 기금모금 목적을 위한 표장사용 규칙

GCI 제53조 1단락에 따르면

“헌 협정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표장이나(…)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 일자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반면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는 NS가 **이끄는** 기금모금 활동에서 NS 로고의 사용을 허가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NS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기금모금을 위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sup>381</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2)는 “그러한 캠페인의 인쇄물, 물건 또는 기타 광고물에 게시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표장에는 각국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글 또는 광고도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기금모금을 위해 또는 보급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상업적 기업이나 다른 단체와 협력하는 NS는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에 언급된 8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업의 상표나 로고, 명칭을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나 광고물, 또는 판매하는 물품

381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1). 이 측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연구질문 33 참조.

에 게시할 수 있다.<sup>382</sup>

이 조건은 NS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는 지원이 홍보되는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남용이나 일반 대중들이 혼동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확한 지침을 명시한다.<sup>383</sup>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NS는 제3자와 그의 활동이 기본원칙과 운동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국내법 역시 기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으로 규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발적 기금모금” 사안

민간 개인이나 단체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을 위해 기금모금을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사전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부자의 활동과 목적 및/또는 제3자와의 관계가 국제적십자운동 고유의 목표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예컨대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을 해치는 활동을 계획 중이거나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참여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 표장(또는 그 모방)이나 그 명칭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NS가 개인들의 기부금을 거부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 유형의 자발적 기금모금”은 민간 개인이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기금모금으로 NS는 기부자들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기부금이 자발적 기금모금 행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이러한 기부금은 세금 목적으로 수령된다. 기금모금과 기부금 간의 연계성이 밝혀지면 NS는 말하자면 사후에 기금모금을 검토해야 한다. 기금모금이 기본원칙 및 NS 자체의 목표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혀지면, NS는 기금모금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기금모금이 기본원칙과 NS 자체의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b 유형의 자발적 기금모금”의 경우, 기금모금 방법의 성격은 수익금이 NS에 기부될 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NS는 요구되는 양립성이 분명히 충족될 때에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부가 거부되면 기부자는 기부금을 개별 기부자들에게 반환하거나(실행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관련된 대의를 찾아 거기에 기부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적절한 제3자 기금모금 계약에 따라 NS

382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일반대중이 기업의 활동이나 제품의 품질을 표장이나 적십자사 자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각국 적십자사는 캠페인 전제를 주도해야 하며, 특히 그 기업의 상표, 로고, 명칭 등이 부착될 물품의 선정과 부착위치, 형태, 크기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캠페인은 한 가지 특정활동과만 연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

(라) 관련된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 및 원칙에 역행하거나 일반대중으로부터 문제시 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마) 각국 적십자사는 기업의 활동의 품격이나 명성에 해를 끼칠 경우 언제든지 짧은 고지기간을 두고 해당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바) 각국 적십자사가 캠페인을 통해 얻는 물질적 또는 재정적 이익이 상당하며, 각국 적십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사) 각국 적십자사와 파트너 기업 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아) 계약은 각국 적십자사의 중앙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조 추가)

NS 웹사이트가 기업파트너의 로고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절문 35 참조.

383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 해설.

의 승인 없이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기금모금 행사 조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 명칭과 표장의 오용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 표장의 사용

“a 유형”과 “b 유형”의 자발적 기금모금의 경우 모두, 사전에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고 기금모금을 실행한 민간 개인이나 단체는 제네바협약과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 따라 식별표장(들)을 사용할 수 없다.

NS는 “자발적 기금모금자”가 표장 및 명칭과 로고의 사용 금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NS는 기본원칙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확보된 기부금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NS는 잠재적 민간 기금모금자들을 위한 특별 로고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로고는 표장의 어떤 것도 게시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다음 단어로만 구성될 수 있다.

### “[NS의 명칭/약자]를 지원하며”

요청 시 NS는 “자발적 기금모금자”가 자신의 진단, 광고물, 판매계획이 있는 물품 등에 그러한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일반대중이 기금모금자의 활동이나 그 제품의 품질과 NS 자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sup>384</sup>
- 로고의 게시는 한 가지 특정활동과만 연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sup>385</sup>
- 해당 기금모금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목적 및 원칙에 역행하거나 일반대중으로부터 문제시 되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sup>386</sup>

384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가)에서 유추.

385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다)에서 유추.

386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23조(3)(라)에서 유추.

## 제3부

표장 오남용 방지와 중단을 위한 권고사항



## 제3부

### A. 국가의 의무

#### 44

국가는 어떤 법률적, 규제적, 실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1조, 제38~44조, 제47조, 제49조, 제53조, 제54조

GC II 제1조, 제41-45조, 제48조

GC IV 제1조, 제18조, 3단락과 4단락, 제20조 3단락, 제144조

AP I 제1조, 제18조, 제23조, 제37~38조, 제83조, 제85조(3)(바), 제87조(2)

AP II 제12조와 제19조

AP III 제1(1)조, 제6조, 제7조

1949년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5호

1977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23차 국제적십자회의의 “적십자 표장 오용”에 대한 결의 제4호

#### 권고사항

1. 국가는 국내에서 다음 예시와 같은 법률적, 규제적, 실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에서 인정되고 보호받는 표장을 규정한다.
- 표장의 공인된 사용을 규정한다.<sup>387</sup>
- 표장의 정식사용자를 규정한다.<sup>388</sup>
- 표장 사용의 규제와 감독을 위임 받는 국가당국(들)을 설립한다.
- 표장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표장(군대 의무대에 속하는 것발, 완장, 장비에 식별 표장 게시 등)과 여기에 귀속되는 공인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387 본 연구 서론의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388 본 연구 서론의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 군대, 공무원, 시민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표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sup>389</sup>
2. 국가는 국내법에서 전시와 평시에 표장 오용의 모든 사례를 방지, 억제, 처벌할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상 제재, 행정조치, 징계조치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3. 국내법과 관행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한 규칙을 통합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사용과 오남용 제재 사례를 규정할 수 있는 단독 특별법으로 충분할 것이다.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국내의 다양한 법률적 도구(형법, 군사법 또는 행정법, NS의 공인과 지위에 대한 국내법, 또는 상표법)에 접목시켜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표장 사용 및 보호에 대한 규정을 군관계 법령 및 지침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4. ICRC 국제인도법 자문단은 종합적인 “적십자 표장, 적신월 표장, 적수정 표장 사용과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모델법”뿐 아니라 오용을 처벌하기 위한 취지의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모델 “제네바협약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델법은 각각 민법이나 보편법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분석

### 서론

제1~4제네바협약 공동조항인 제1조에 따라 제네바협약 체결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AP I과 AP III에도 규정된<sup>390</sup> 이 의무는 국제법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에 속하며 국가 관행에 의해서 국제적 무력충돌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관습적 국제법의 규범으로 정착하였다.<sup>391</sup>

존중할 것과 존중을 보장할 것이라는 “양면적 의무”<sup>392</sup>는 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해당 규칙이 국가의 조직뿐 아니라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주체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 모든 이들이 규칙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389 표장 사용에 관한 규칙의 보급에 대하여는 연구질문 45 참조.

390 AP I 제1조(1)과 AP III 제1조(1).

391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규칙 139, p. 495.

392 로랑스 부외송 드 사주론, 루이지 콘도렐리, “수정된 제네바협약의 공통조항 제1조”, IRRC, No.837, 2000, pp. 67~87.

## 국제인도법의 규칙에 따른 국가의 의무

GC I 제54조는 GC 당사국에게 GC I 제53조에서 언급하는 표장의 오남용을 항상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국의 국내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sup>393</sup>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할당국이 언제나 취해야 할 행정적 성격의 조치 외에, 각국은 집단과 개인에 의한 남용을 금지하고 처벌할 명령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시에 보호적 상징에 대한 위반에는 당연히 전쟁관련 법과 관습에 대한 위반행위를 다룬 형사법이 적용된다. 다른 종류의 오남용은 일반적으로 제네바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범이나 행정법의 일부로서 이러한 특별법에는 처벌조항이 포함된다.”<sup>394</sup>

GC I 제53조 제1단락과 제4단락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확고한 입장을 보인다.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이나 명칭, 또는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 일자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 본조 제1단락에서 정하는 금지는, 제38조 제2단락에서 말하는 표장 및 기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종전부터의 사용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up>395</sup>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적 상징의 오용과 표시적 상징의 오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시에는 보호적 상징이 인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의무요원이 아니면서도 선의로 적십자 완장을 착용한 의사의 경솔한 행동에서부터 적군을 호도하기 위해서 탄약고에

393 GC I 제54조는 “계약국은 자국의 법령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3조에서 말하는 남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해전과 관련하여 GC II 제45조 역시 국가에게 GC II 제44조에서 언급하는 표장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1949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의 결의 제5호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적십자] 표장뿐 아니라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서 언급하는 기타 표장의 권위를 지키고 숭고한 의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표장들이 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394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4조, p. 392.

395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는 “GC I 제53조는 협약의 다양한 기타 금지조항과 같은 입장이다(부상자, 의무대 등에 대해)”라고 명시한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33조, p. 383.

대형 표장을 부착하는 등의 배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온갖 다양한 정도의 오남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시용 표지의 전형적인 오남용 사례는 적십자사 배지의 무단 사용 또는 약국의 표장 사용 또는 상표에서의 표장 사용 등을 들 수 있다.”<sup>396</sup>

GC I 제54조가 의무조항이며 따라서 당사국은 스스로 제네바협약을 인준함과 동시에 제네바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수용한 것이다. 국내법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내법은 수정해야 한다.<sup>397</sup>

## IHL 규칙 실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

### 입법적 조치

제23차 국제적십자총회(부카레스트, 1977년)의 결의 제11호는 제네바협약의 당사국 정부에게 표장의 오용을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해 “기존 국내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을 제정하고, 위반자에게 충분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문하였다.<sup>398</sup>

국가 입법기관이 고려해야 할 전형적인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보호적 수단으로서의 표장 이용과 표시적 수단으로서의 표장 이용에 대한 구분을 강조한다.<sup>399</sup>
- 보호 범위를 규정한다.<sup>400</sup>
- 국내법에서 보호되는 식별표장과 명칭을 규정한다.

39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 p. 381. 동 해설은 또한 “해당 표시가 모방에 해당하는지는 각국 관할당국이 판단한다. 때로 이런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해당 표시와 적십자 표장이 일반인에게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혼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한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 p. 385.

397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4조, p. 393.

398 결의 제11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23차 국제적십자총회는,

승인을 받지 않는 여러 개인, 민간기업, 조직이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 표장을 남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안하고**, 1949년 8월 12일 제1제네바협약에 표장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본 협약의 체결국은 항상 표장의 오남용을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을 **상기하며**,

제네바협약의 계약국 정부에게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 표장의 오남용을 억제하는 기존 국내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현재 이런 법령이 없을 경우는 새로 제정하며, 위반자에게 합당한 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처벌을 규정할 것을 **권하며**, 각국 적십자사와 함께 이 분야에서 ICRC가 취한 조치를 존중하게 생각하며 ICRC에게 필요 시 해당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며,

이런 점에 있어서 각국 정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ICRC의 노력을 지지하도록 각국 적십자사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399 GC I 제38~44조; GC II 제41조와 제42조, GC IV 제18조와 제20조, AP I 제18조, AP II 제12조, AP III 제3조 참조. 본 연구 서문의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400 AP I 제18조에 따라 국가는 법률적인 보호를 제1부속서의 제1부속서에 의거하여 의무대와 의무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신호로 확대해야 한다.

- 표장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기구, 개인, 요원, 부대 및 차량과 이러한 사용을 위한 상황과 조건을 규정한다.
- NS 및 국제적십자운동에 참여하는 국제적 행위자에 의한 표장 사용 조건을 규정한다.
- 특히 오남용에 대한 적절한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기만적 사용을 전쟁범죄로 유죄선고하는<sup>401</sup> 등 표장의 오남용을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군대를 대상으로 한 보급 조치를 규정한다.<sup>402</sup>
- 물품과 물자의 압수 및/또는 파괴 등과 같이 오남용 사건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다.
- 표장이나 명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협회, 상호, 상표의 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 표장 사용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당국(들)을 규정하고 이 분야에서 NS의 역할과 NS가 기여할 바를 규정한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ICRC는 모델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이 국내법 초안을 작성하는 입법자들이 방지 및 억제를 위해 국내법 초안을 작성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선하는 데 있어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였다.<sup>403</sup>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 입법은 단독법률을 제정하거나 다양한 국내법규(형법 또는 군형법, 상표법, NS의 공인과 지위에 대한 법률, 군규정 등)에 접목시키는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사용 및 보호에 대한 모델법”은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및 2005년의 추가의정서를 바탕으로 한다.<sup>404</sup> 이 모델법은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의 요건에 따라 표장의 사용 및 보호를 규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규정을 제시한다.

이 모델법의 취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실히 보여주는 기본적인 도구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특정 국가의 법률체계와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모델법을 조정,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보편법 체계가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제네바협약법의 한 장에서 표장의 보호를 규

401 특히 AP I 제85(3)(바)와 ICC 정관 제8조(b)(vii) 참조.

402 특히 GC I 제47조, GC II 제48조, GC IV 제144조, AP I 제83조와 제87조(2), AP II 제19조, AP III 제7조 참조. 표장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의 보급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5 참조.

403 장 필립 라부아에, “적십자 또는 적신월의 표장 사용 및 보호에 대한 국내법”, IRRC, No. 313, 1996, pp. 482~485.

404 ICRC는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최종선언문’(제네바, 1993년 8월 30일~9월 1일)과 정부간 전문가집단의 권고사항(제네바, 1995년 1월 23일~27일)의 시행을 위해 이 모델법을 제안하고 있다. AP III 채택 이후에 수정된 수정 모델법은 <http://www.icr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한다. 이런 국가가 AP III 당사국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제네바협약법을 확대하여 적십자와 적신월에 대한 보호체계를 추가 표장, 즉 적수정 표장에까지 적용해야 하고 AP III의 본문을 별첨으로 추가해야 한다.

ICRC 국제인도법 자문단은 제네바협약 모델법을 개발하였고 요청 시 AP III 규정 실행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sup>405</sup>

또한 IHL 실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국에게는 관련 국가당국 전체로 이루어진 국가위원회 설립을 권한다. 국가위원회는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대한 법률 초안 작성을 담당할 수 있다.<sup>406</sup>

### 추가 조치

또한 국가는 특히 모든 관련당사자 즉, 군대와 공무원과 전문가집단이 표장을 규제하는 규칙을 숙지하고 있으며, 식별과 표시를 위한 예비조치(군대 의무대에 속하는 것발, 완장, 장비에 식별표장 게시 등)를 취하도록 일련의 규제적 또는 실제적 조치의 추가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 결론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은 IHL의 인정과 보호를 받는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이 나타내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과 연관된 공평과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장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훨씬 더 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표장의 오용이 발생하며 표장에 부여된 존중과 신뢰를 퇴색시킬 수 있다. 또한 평화시에 오용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무력충돌 중 오용이 발생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오용은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훼손하고,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며, 시민뿐만 아니라 부상자이거나 환자인 전투원에게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405 <http://www.icrc.org> 참조.

406 장 필립 라부아에, “적십자 또는 적신월의 표장 사용 및 보호에 대한 국내법”, IRRC, No. 313, 1996년 7월-8월, pp. 482-485.

## 45

##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 보급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가?

## 법령적 근거

1907년 헤이그법 제1조

GC I 제47조

GC II제48조

GC III 제127조

GC IV 제144조

AP I 제80조, 제83조(2), 제87조(2)

AP II 제19조

AP III 제7조

## 권고사항

1. 다른 IHL 규칙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무기소지자/의사결정자 및 일반대중에게 표장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최대한 널리 보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표장사용 관련 규칙을 군대에 보급할 경우, 해당 규칙을 정규교육 및 훈련에 포함하고 일상화해야 한다. 특히 지휘관은 표장의 오남용(기만적 사용 포함)에 대해 정해진 대처방식을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정의 실행에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고등교육기관에서 규칙을 보급할 경우,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법과대학 및 국제관계학과의 공식 표준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IHL(따라서 표장사용 관련 핵심규칙도 포함)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국가에게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IHL(따라서 표장사용 관련 핵심규칙도 포함)을 보급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 분석

### 서론

IHL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는 것은 IHL 규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단계다. IHL 규칙의 내용을 최대한 널리 보급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또 다른 핵심요소다. IHL 규칙은 우선적으로 군대,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급해야 한다.

### 군대를 대상으로 한 보급<sup>407</sup>

a. 국가는 1907년 헤이그협약을 인준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할 자국 군대에게 본 협약에 부속된 육전에 관한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라는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sup>408</sup>

마찬가지로 제네바협약을 인준함으로써 국가는 “전문을 보급하고” 또한 “전문 연구를 군(…) 교육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 것이다.<sup>409</sup>

API은 이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계약당사국은 “자국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체없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령과 지시를 내려야 하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며”(API 제80조), “무력충돌 시에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군 또는 민간당국은 그것의 본문에 정통하여야 하며”(API 제83조(2)), “군지휘관들이 그들의 책임수준에 상응하게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구성원들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거한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API 제87조(2))”고 규정한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한 AP II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의무, 즉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AP II의 내용을 보급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군과 무력충돌에 참여하는 모든 무장집단에 적용된다.

b. 군사적인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군대는 이미 평시에 가능한 모든 충돌의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군 작전 중 IHL 준수는 대체적으로 기존에 군생활의 세부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IHL 규칙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사교리, 교육, 훈련 및 훈육 조치를 통해 관련 법률을 군대문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410</sup>

407 ICRC의 군대 및 보안군 관계부서(ICRC Unit for the Relations with Armed and Security Forces)가 작성한 문서 참조: “군대: IHL의 통합”, <http://www.icrc.org>에서 열람 가능.

408 1907년 헤이그협약 제1조.

409 GC I 제47조, GC II 제48조, GC III 제127조, GC IV 제144조.

410 ICRC 소책자, <법적 통합>, ICRC, 제네바, 2007 참조. 연구절문 47도 참조.

IHL 문서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조치이긴 하지만, 표장과 관련해서는 군인들에게 표장 존중의 필요성이나 표장사용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력충돌 중 표장사용에 적용되는 핵심규칙은 다른 IHL 핵심규칙처럼 정규 교육 및 훈련에 접목하여 습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휘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하직원들에 의한 표장 오용(특히 기만적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숙지해야 한다. 지휘관은 이런 지식을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정의 실행에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급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GC와 AP의 내용을 보급할 의무가 있다. IHL을 군사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IHL이 보호해야 할 대상, 즉 민간 인뿐 아니라 현재 IHL을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해야 할 사람들, 즉 공무원, 판사, 변호사, 외교관, 언론인, 학생들의 IHL 지식 함양도 중요하다. 이것은 무력충돌 시 IHL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sup>411</sup>

따라서 고등교육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법과대학 및 국제관계학과의 공식적인 표준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IHL이 포함되어야 한다.<sup>412</sup>

나아가 IHL 분야에 대한 연구와 출판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법률, 국제관계, 인권 등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위해서 IHL 관련 문서기록센터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모의재판, 에세이 대회, 대학간 교류 등 홍보행사를 통해서 IHL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과 관심을 제고할 수도 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급

IHL에 대한 지식은 청소년에게도 타당성과 의미와 유용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주제는 무력충돌이나 기타 폭력상황에 대한 특정 국가의 경험과 무관하게 어디서나 시의 적절하다.

- 오늘날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청소년들은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상황의 영향을 점차 더 많이 받고 있다.
-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폭력을 다루는 언론뿐 아니라 폭력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연예 및 오락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많다.

411 마르코 사솔리, 앙투안 부비에, <권시에 법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1권, ICRC, 2판, 제네바, 2006, p. 274. 우메시 카담“국제인도법 교육: ICRC 보급 프로그램 개관”, IRRIC, No. 841, 2001, pp. 167~169.

412 스테판 한킨스, “독립국가연합 국가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에서의 국제인도법 홍보”, IRRIC, No. 319, 1997, pp. 451~454. 루이 사 비에루치, “대학에서의 국제인도법 교육 제고: 중앙아시아에서 ICRC의 경험”, IRRIC, No. 841, 2001, pp. 155~165.

- 충돌 이후 상황이나 사회 재건 시기 등과 같이 사회적 및 정치적 긴장이 급속하게 고조되는 시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이 간접적인 진정효과를 가질 수 있다.

ICRC는 교육개발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도법연구라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전 세계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존중과 보호에 대한 생각을 무력충돌과 기타 실제 폭력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IHL의 기본원칙을 소개하는 것이다.<sup>413</sup>

국가와 NS가 이 유용한 교육적 도구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표장사용에 대한 규칙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본 연구의 서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

413 교육자료, 수업계획, 토론활동, 동영상자료 등은 <http://www.ehl.icrc.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3부

### B. 각국 적십자사의 역할

#### 46

#### 표장사용과 관련하여 각국 적십자사의 임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 법령적 근거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1)과 (2), 제5조(2)(바)와 (4)(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서론 제3단락, 제7조

### 권고사항

1. NS는 언제나, 특히 표장/NS 로고를 사용할 때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 각국 적십자사 자체 규정,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및 국내법을 준수하여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한다.
2. 또한 NS에게는 조직 내에서 표장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채택할 것을 권한다.
3. 국가적 차원에서 NS는 자국의 국가당국이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를 인준하며 표장 관련 국내법을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더불어 NS는 표장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오용 방지 및 중단) 국가당국과 협조해야 한다. 특히 NS에게는 표장 오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권한다.
  - 표장을 오용하는 자에게(이메일이나 서신을 통해) 연락하여 표장이 누리는 보호 및 오용에 따른 위험에 대해 설명하며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제시한다.
  - 이 최초 연락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예: 전화통화).
  - 이러한 노력이 성과가 없으면 해당 사건을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5. NS는 특히 소속 직원, 자원봉사자, 무기 소지자(예: 경찰과 군대), 학생과 대중을 대상으로 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보급하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NS에게는 이 모든 사안에 있어 추가 도움 또는 자문을 받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ICRC 대표단 및/또는 본부에 연락할 것을 권한다. 표장보호 경험이 있는 타 NS를 통해서도 유용한 자문과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분석

### 서론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NS의 권리에는 두 가지 책임이 따른다. 즉 NS는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그 사용을 감시함에 있어 국가당국과 협력해야 한다.<sup>414</sup>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임무는 마이클 메이어가 말한 대로 “국제적십자운동이 자신의 독특한 위상에 대해 치르는 대가의 일부”<sup>415</sup>로 인식되어야 한다.

### 각국 적십자사에 의한 표장사용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1)은 NS가 “국제적십자운동의 사명과 기본원칙에 따라 자체 정관 및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표장과 관련해서 NS는 언제나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물론 NS는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sup>416</sup>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과 제네바협약의 연관성에 대해 동 규칙의 서문에서는 이 규칙이 “제1협약 중 표장사용에 대한 NS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제44조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sup>417</sup> 또한 추가의정서와 관련해서 “제1의정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본 규칙의 일부 조항들은 제1의정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적십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광의의 의미를 내포한다. 본 규정은 제1의정서의 비가입국 적십자사에 대하여는 해당 당국의 동의가 없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sup>418</sup>

NS는 분명히 항상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와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을 준수하여 표장을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NS는 조직 내에서 표장 존중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내부

414 마이클 메이어, “평시 표장보호: 영국적십자사의 경험”, IRRC, No. 272, 1989, pp. 459~464.

415 마이클 메이어, “평화 시 표장보호: 영국적십자사의 경험”, IRRC, No. 272, 1989, pp. 459.

416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서문 제3단락. 1991년 적십자 표장사용규칙 전문 제4단락도 참조.

417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서문 제3단락.

418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서문 제3단락.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적십자사는 규정이나 내부지침 내에 표장의 사용에 관련한 제조건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나 내부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표장의 보호적 사용 관련

- 본 주제에 관한 국내 법률 및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언급.
- 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관련 당국의 표시.
- 분쟁의 초기에 표장의 표시적 기능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의 목록.
- 적십자사의 요원 및 물자에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조건.

#### B. 표장의 표시적 사용 관련

- 본 주제에 관한 국내 법률 및 본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관련.
- 적십자사의 회원이나 청소년 적십자·적신원 단원에 의한 표장의 사용을 규정하는 제조건.
- 적십자사의 회원은 아니지만 적십자사에 의해 훈련받고 표장을 착용하도록 허가된 사람들에 대한 언급.
- 표장의 사용이 허가된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응급처치소 및 구급차의 목록
- 표장의 크기와 비율.
- 기금모금이나 보급 목적, 메달이나 기타 감사표시의 기념품을 위해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
- 표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문서 및 표장이 사용된 물건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

## 각국 적십자사는 자국정부의 표장보호를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자국정부로 하여금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국내법에서 실행하도록 권함**

국가가 제네바협약을 인준하고 이를 국내법에 접목하면 표장의 오남용을 중단시키기가 더 쉬워진다. 이 경우 표장 오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NS의 노력은 제네바협약(그리고 추가의정서가 인준되고 실행되었다면 이를 포함)과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

NS는 자국 정부당국에게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를 인준하고 표장에 대한 국내법령을 채택하도록 설득함으로써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sup>419</sup>

### 표장과 그 중요성의 보급활동

표장의 의미에 대한 보급활동은 일반대중 및/또는 특정한 인구집단에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적십자운동정관에 따라 NS에게는 표장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포함한 IHL을 보급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동 정관 제3조(2)는 NS가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고 자국정부가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정관 제5조(2)(f)와 (4)(a)는 ICRC와 NS가 IHL 보급, 의무요원 훈련, 의료장비 준비 등에서 협력할 것을 규정한다.

다음은 이 점과 관련해서 각국 적십자가 펼치는 몇 가지 캠페인의 예다.

- 포스터(예: “350개 국어로 ‘나를 쓰지 마세요’를 어떻게 말하는가?”, 영국 적십자사).
- 소책자(예: “이 상징을 아시나요(Herkent u dit teken)?”, 네덜란드 적십자사).
- 웹사이트(예: 표장 오용을 신고하기 위해서 캐나다 적십자사가 만든 온라인 양식).<sup>420</sup>
- 벨기에 적십자사 웹사이트의 표장 관련 퀴즈(플라망어 코너 또는 벨기에 적십자사-플랑드르).
- 등록상표가 표장이나 명칭을 오용/모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연락처와 정보 제공(노르웨이 적십자사).
- 디자인기관, 병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소책자 및 기타 문서 정기발송(예: 캐나다 적십자사가 컴퓨터게임 개발자에게 발송하는 공개서한). 표장 오용은 대부분 의료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 및 치과전문협회뿐 아니라 보건관련 부처나 부서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해당 부처와 부서는 이 정보를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대학의 의학관련 학부나 학과의 교육과정에 IHL을 포함시키도록 지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sup>421</sup>

419 국가 차원에서 국가당국에 의한 법률적, 규제적, 실제적 조치의 채택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4 참조.

420 “표장 오용 신고서” 참조. <http://www.redcross.ca>

421 이러한 것들은 표장사용과 관련해서 각국 적십자사가 개발한 매우 중요한 조치의 몇 가지 예다.

## 표장 오용 사례의 감시와 처리

각국 적십자사는 표장 사용을 감시하고 그 오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NS에게는 다음의 단계별 조치를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

### A. 표장과 그 명칭의 오용에 대한 보고

표장 및 그 명칭의 무단 사용 또는 오용이 의심될 경우, 개인뿐 아니라 NS 회원이 이를 NS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오용 사례는 반드시 일관성있게 처리해야 한다.

### B. 이메일/편지 발송

NS 직원은 정중하면서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메일/편지를 작성하여 IHL에 따른 표장사용의 제한과 오남용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대안으로 사용할 상징도 제안해야 한다(서한 견본은 p. 241 참조).

편지는 또한 표장사용 감시와 오남용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에 있어서 NS가 담당하는 특별한 역할을 설명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표장을 보호하는 국내법/제정법의 해당 부분 사본과, 대안적 상징에 대한 제안을 편지에 동봉하거나 이메일 첨부파일로 발송해야 한다.

표장에 대한 근거는 신중하게 설명해야 하고 표장의 제한된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편지/이메일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편지에서 지나치게 법률적인 어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주로 강조하는 편지는 국제적십자운동과의 공감대를 저해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편지와 이메일 모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편지는 좀 더 공식적인 의사전달수단이라는 점 외에도 NS가 IHL, NS, 국제적십자운동, 표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록한 소책자를 동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안적 상징 사용을 제안할 경우 다음을 예로 제시할 수 있다.



1. 긴급구호 표지: 녹색 바탕에 백색 십자가



2. 구급차



3. 병원: 청색 바탕에 백색 대문자 'H'



4. 약국



5. 약국: 백색 바탕에 녹색 십자가



6. 진료

### C. 전화통화

최초의 연락으로서 편지나 이메일보다는 부적절하지만, 전화통화는 후속조치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D. 법적 조치

문제의 당사자가 표장 오남용의 중단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법적 조치는 국가당국 또는 NS가 개시할 수 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주로 NS가 법적 조치를 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NS는 기소당국을 설득하여 문제의 당사자를 기소하게 할 수도 있다.

법적절차는 정부기구의 소관이나, NS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는 금전적 및 시간적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주의: 이러한 사안에 대해 NS가 요청할 경우 ICRC는 현장과 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 NS를 지원해야 한다.<sup>422</sup> 마찬가지로 표장보호 경험이 있는 타 NS를 통해서도 유용한 자문과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22 표장 오용의 방지와 억제와 관련한 ICRC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7 참조.

## 별첨

### 표장 오용에 관한 서한 견본

담당자 귀하

연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은 적십자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표장은 우리의 업무와 국제적십자운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귀하께 다음의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적십자 표장과 기타 보호대상 표장(적신월 및 적수정)의 사용은 1949년 제네바협약과 이에 대한 3개의 추가의정서에 의해 언제나(즉, 무력충돌 시와 평화 시) 규제됩니다.

제1제네바협약 제44조의 1, 2, 3단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다음 단락에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색 바탕의 적십자 표장 및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라는 말은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유사한 사항을 정하는 다른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는 의무대 및 기관, 요원 및 물자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제2단락에 말하는 표장에 관해서도 그것들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국 적십자사 및 제26조에서 지정하는 기타의 단체는 이 협약의 보호를 부여하는 식별표장을 본 단락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또는 적사자 및 태양사)는 평시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하는 원칙에 합치하는 자신의 기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활동이 전시에 행하여질 때에는, 표장은 그 사용에 의하여 이 협약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인정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 표장은 비교적 작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완장 또는 건물의 지붕에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적십자국제기관 및 적법한 승인을 받은 직원은 언제든지 백색 바탕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2. 아시는바아같이 적십자 표장(또는 기타 보호대상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1949년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군 의무대
-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 즉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각국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
- 민간병원과 의무대(특정 조건 적용)

3.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에게는 표장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이자 엄격한 조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전적으로 부상자나 환자에게 무상진료를 제공하는 임무에 배정된 구급차 및 응급처치시설입니다(1949년 제1제네바협정 제44조 제4단락).

4. 1949년 제네바협약에 따라 공인된 적십자 표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귀하가 고려해달라고 제출하신/귀하가 사용하고 계신 로고[청색 십자가 뒤에 있는 적색 십자가]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는 표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 적십자 표장에 대한 금지된 모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1949년 제1제네바협약 제53조 제1단락에 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이나 명칭, 또는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 일자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강조 추가)

조금 수정했다 하더라도 백색 바탕에 적색 십자가는 금지된 모방에 해당합니다. 이 견해는 1949년 제1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설에서도 인정합니다(1949년 8월 12일 제1제네바협약 해설, 1권, 제53조, ICRC, 제네바, 1952, p. 385). 사실 로고를 표장의 모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대중이 해당 로고와 적십자 표장을 혼동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조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혼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악의가 없다고 해도 다른 로고로 대체해야 합니다.

5. 나아가 1949년 제네바협약 계약국은 표장의 모방을 포함한 표장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할 법령을 채택할 의무가 있습니다(1949년 제1제네바협약 제54조).

6.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약자]는 제출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적십자 표장의 오용에 해당된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약자]는 귀하에게 이 로고를 사용하지 말 것과 귀사의 로고로 다른 그래픽 디자인[예: 뒤에 적색 십자가가 없는 청색 십자가]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칙이 엄격해 보일 수도 있으나(특히 무력충돌) 희생자의 권익과 인도주의적 사명에 최대한 이바지하기 위해서 1949년 제네바협약 체약국이 채택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적십자 표장을 보호하는 일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표장 오남용은 대중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XXXXXXXXXX 드림



## 제3부

### C. ICRC의 역할

#### 47

#### 표장사용과 관련하여 ICRC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44조 제3단락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5조(2)(다)와 (사)

ICRC 정관 제4조(1)(다)와 (사)

세비아합의서 제6.1.2.조(A)(d)

1993년 대표자회의 결의 제8호 “표장사용” 제4단락

### 권고사항

1. ICRC는 어떤 상황에서도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2. “IHL의 수호자”로서 ICRC는 특히 무력충돌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표장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이 최대한 이해, 수용, 보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ICRC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 국가가 IHL 문서에 가입하고 인준하며 특히 표장의 사용 및 보호에 대하여 IHL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을 무기소지자(특히 국군), 대학 또는 청소년 등 적절한 대상에게 보급한다.
  - 표장 오용을 방지 및/또는 중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문과 조치를 담당한다.
  - 표장보호(오용 방지 및 중단)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당국과 협조할 수 있는 NS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sup>423</sup>
  - 필요 시 표장사용과 관련하여 접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와 법률개정을 수반하든 그렇지 않든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분석

### 서론

ICRC는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저서에서 앙리 뒤낭이 내놓은 두 가지 제안의 실행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1863년에 창립되었다. 그 두 가지 제안 중 하나는 전시에 군의 무대 부속기관으로 활약할 평시 독지구호단체를 조직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장에서 부상자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협약에 국가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제안이 국제적십자운동의 모태가 되었고 두 번째 제안은 IHL의 원천이 되었다.<sup>424</sup>

군 의무대와 독지구호단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일 식별기장으로 채택하는 것은 첫 번째 회의 이래 ICRC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sup>425</sup>

적십자 표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ICRC는 국제적인 체계 안에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표장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포함하여 IHL의 충실한 적용, 보급, 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

### ICRC의 표장 사용

GC I 제44조 제3단락은 “적십자국제기관 및 적절한 승인을 받은 직원은 언제든지 백색 바탕에 적십자의 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ICRC(및 국제적십자사연맹)는 무조건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sup>426</sup> 이 권리는 물론 이에 상응하여 표장사용에 대한 규칙을 철저히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암시한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서 강조하듯이 “국제기관은 각국 적십자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부여된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sup>427</sup>

나아가 1993년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결의 제8호 제4단락은 ICRC(및 국제적십자사연맹)에게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표장의 표시적 및 장식적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이 GC I “제44조를 발전”<sup>428</sup> 시킨 것이기 때문에, ICRC(및 국제적십자사연맹)가 동 규칙의 조항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

423 표장보호와 관련하여 NS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질문 46 참조.

424 프랑수아 뷔농,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제네바, ICRC, 2007년 5월, pp. 4~5. 이브스 산도즈, <국제인도법의 수호자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제네바, 1998, 32 pp.도 참조.

425 장 락테(안), “적십자 창립에 대한 미발표 문서, 5인 위원회 회의록”, IRR, 영어부록, 제2권, No. 3, 1949년 3월, p. 127.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의록(Procès-verbaux des séances du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1863년 2월 17일~1914년 8월 28일, 장 프랑수아 피델루, 캐롤라인 반즈 및 프랑수아즈 뒤보송과 공동편집, 제네바, ICRC와 앙리뒤낭학회, 1999, p. 18, 프랑수아 뷔농,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제네바, ICRC, 2007년 5월, p. 5에서 인용.

42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에서 명시하듯이 “이 승인은 무조건적이다. 따라서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 표지는 상황과 업무의 성격이 요구할 때 보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6(각주 생략).

427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44조, p. 336.

428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서문 제3단락.

위와 같은 관점에서 ICRC는 모든 활동과 모든 상황에서 표장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ICRC는 특히 표장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 “국제인도법의 수호자”로서의 ICRC

국제적십자운동장관 제5조(2)(다)와 (사)는 ICRC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 제네바협약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며, 무력충돌에 해당되는 국제인도법의 성실한 적용을 위해 노력하며, 위반혐의와 관련된 민원을 인지한다.

(…)

(사)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며 인도법 개발을 추진한다.”<sup>429</sup>

표장에 관한 한 세비아합의서도 ICRC에게 구체적인 기능을 부여한다. 세비아합의서 제 6.1.2조(A)(d)에 따르면 ICRC가 주관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ICRC는 “보호목적으로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의 사용과 관련해서 유효한 규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

세비아합의서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표장사용과 관련된 ICRC의 구체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세비아합의서는 IHL에 대한 다른 모든 위반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서 표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ICRC의 전반적인 책임을 대체하거나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IHL의 수호자” 역할이라는 틀 안에서, 또한 표장과 관련해서 ICRC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였다.

- 기존의 규칙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알려지고 이해되고 적용되도록 한다.
- 국가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표장의 사용을 촉진하고 오남용으로부터 표장을 보호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규칙을 수정한다.

429 ICRC장관 제4조(1)(다)와 (사)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 ICRC의 구체적인 활동

### 국가의 IHL 조약 참여와 국가차원의 시행조치

IHL를 촉진하기 위해 ICRC는 국가에게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를 인준하도록 권한다. 사실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당사국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CRC 지원서비스는 국가가 IHL 문서(예: 수락서 또는 인준서 견본)의 당사국이 되고 해당 문서의 인준과 실행에 필요한 입법적, 사법적, 규제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당국에 법률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sup>430</sup>

이 서비스는 또한 민법이나 보편법 체계가 있는 국가를 위해 각각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모델]법”과 “제네바협약 [모델]법”을 개발하였으며, 표장의 사용 및 보호를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 체계 안에 해당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sup>431</sup>

###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의 통합과 보급

앞서 말했듯이 국가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IHL을 보급할 의무가 있다.<sup>432</sup> ICRC는 국가가 이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원했으며, 광범위한 활동 및 관련 홍보도구를 개발하였다.

군대, 보안요원 및 경찰, 그리고 기타 무기소지자에 대한 보급과 관련해서 ICRC는 법률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구축하였다.<sup>433</sup> 그 의미는 군사작전을 IHL(또한 따라서 표장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에 부합하게 수행하려면 IHL은 군사교리,<sup>434</sup> 교육,<sup>435</sup> 훈련/장비,<sup>436</sup> 제재 조치<sup>437</sup> 등 4개 요소의 필수적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CRC는 무기소지자에게 실질적인 기술훈련을 제공하지 않고, 무기소지자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법률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작전의 의미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430 AP III 수락서 및 인준서 견본은 <http://www.icrc.or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431 국가가 IHL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44 참조.

432 연구절문 45 참조.

433 ICRC 소책자 <법적 통합>, ICRC 간행물, 참조번호 0900, 2007, p. 17 참조.

434 “교리는 그 원칙의 형식에 관계없이, 전략적, 군사작전적 및 전술 단계의 무력보유자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모든 기준 원칙을 의미한다.” ICRC 소책자 <법적 통합>, ICRC 간행물, 참조번호 0900, 2007, p. 23 참조.

435 “교육이란 요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ICRC 소책자 <법적 통합>, ICRC 간행물, 참조번호 0900, 2007, p. 26 참조.

436 “무력보유자들에 대한 훈련은 요원들에게 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장비는 군요원이 법에 알맞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제공해야 한다.” ICRC 소책자 <법적 통합>, ICRC 간행물, 참조번호 0900, 2007, pp. 29와 32 참조.

437 “제재조치는 반드시 명백하고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ICRC 소책자 <법적 통합>, ICRC 간행물, 참조번호 0900, 2007, p. 35 참조.

청소년과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IHL 홍보와 관련하여 ICRC는 일반교육과정의 일환으로 IHL 규칙을 가르쳐야 한다고 확신한다.<sup>438</sup> 이를 위해 ICRC 교육행동부서는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IHL 보급을 위해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며,<sup>439</sup> 교육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sup>440</sup> IHL과 관련된 대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sup>441</sup> NS와 공동으로 매년 하계 IHL 강좌를 진행하며,<sup>442</sup> 모의법정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후원한다.<sup>443</sup>

### 표장 오용을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조언과 조치(démarches)

ICRC는 표장/로고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가, NS, NGO, 기업 및 일반인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표장 오용 사례가 있을 경우 ICRC는 위반자에게 연락하고, 이러한 오용이 ICRC의 활동과 국제적십자운동 전체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며, 관련당사자에게 표장사용에 관한 관련규칙(표장의 존재이유와 법적 근거)을 상기시켜주고, 대안 표장 등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며, 오남용이 중단될 때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ICRC 대표단은 필요 시 ICRC 본부의 기술지원을 받아 자문을 제공하고 조치(démarches)를 취한다.

ICRC는 특히 문제와 필요에 대한 평가 공유와 실천계획 수립을 통한 “표장보호 캠페인”의 기획과 실행을 위해 대표단을 통해 NS를 지원한다.<sup>444</sup>

### NS 역량강화 지원

본 연구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S는 공공당국과 협력하여 표장보호를 보장할 임무가 있다.<sup>445</sup>

ICRC는 이 점에 있어서 NS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지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표장 오남용을 중단(또는 방지)하기 위해 ICRC와 NS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치(“자문과 조치(démarches)…” 제하의 동페이지 상단 참조)는 ICRC뿐만 아니라 NS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준다.

438 연구질문 45 참조.

439 예를 들어 ICRC는 청소년(13~18세)에게 국제인도법(IHL)의 기본 규칙과 원칙 및 관련 이슈를 소개하기 위해서 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 EHL)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표장의 중요성과 표장사용에 대한 기본규칙이 포함된다.

440 스테판 한킨스, “독립국가연합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국제인도법 홍보”; IRRC, No. 319, 1997, pp. 451~454; 이브스 산도즈, <국제인도법의 수호자로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Geneva, 1998, 32 pp.; 루이사 비에루치, “대학에서 국제인도법 교육 제고: 중앙아시아에서 ICRC의 경험”, IRRC, No. 841, 2001, pp.155~165.

441 예를 들어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도법 및 인권 아카데미”는 무장충돌 및 비상사태와 관련된 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442 ICRC 매년 하계 IHL 강좌는 강연과 사례연구를 통해 이 주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443 장벽대 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실시하는 교육행사로, 시뮬레이션과 롤플레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회 심사위원단은 IHL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팀을 평가하게 된다.

444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우간다 등에서 실시한 캠페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연구질문 51 참조).

445 표장과 관련하여 NS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6과 51 참조.

- ICRC는 NS(및 기타 관계당사자)를 위해 자료와 도구를 개발하며, 그 예로는 “세 가지 표장, 하나의 운동, 인간애를 위하여” 소책자(국제적십자사연맹과 공동 제작), 포스터, 파워포인트 자료 등이 있다.
- ICRC는 기금모금이나 기술지원을 통해서 NS의 “법과 기본원칙” 프로그램도 지원하는데, 지원 방법으로는 표장의 중요성과 표장사용에 대한 규칙의 보급 등이 있다.

### 새로운 법률문서 개발

ICRC는 IHL 전반에 걸쳐 새로운 법률문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며, 표장에 대한 새로운 문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작업은 AP III과 같은 새로운 국제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의 채택 및 개정,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본 연구도 이 문제에 대한 ICRC의 작업을 통해 탄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문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 48

ICRC는 주관기관으로 활약할 때 세비아합의서에 따라 표장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맡는가?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법령적 근거

국제적십자운동장관 제5조

세비아합의서 제6.1.2조(A)(c)와 (d)

## 권고사항

1. 주관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 ICRC는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의 존중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ICRC가 주요 파트너인 ONS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체계에 통합된다. 보안체계의 목표는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십자운동 방식 내에서 활동하는 요원의 신변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표장의 적절한 사용은 보안체계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2. “국제인도법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게 위해서 ICRC는 표장의 적절한 (보호적 및 표시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세비아합의서에서도 재차 언급하듯이 ICRC가 주관기관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sup>446</sup>
3.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게는 특히 무력충돌 상황에서 표장사용에 대해 ICRC와 협의하고 ICRC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권한다.

## 분석

### 세비아합의서에 따른 ICRC의 책임

세비아합의서 제6.1.2조(A)(d)는 ICRC가 주관기관으로 활약할 때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의 보호목적 사용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sup>447</sup>

세비아합의서 제6.1.2조(A)(c)는 또한 ICRC가 주관기관으로 활약할 때 “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요원의 신변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446 표장사용과 관련된 ICRC의 전반적인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7 참조.

447 국제적십자사연맹이나 NS가 주관기관으로 활약할 때 이 기관들은 표장사용과 관련해서 유효한 규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유사한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라.

이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분명 이 두 규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시성과 명확한 식별은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에 속하는 운영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동시에 표장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과 단체가 표장 사용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비아합의서의 제6.1.2조(A)(d)조항은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대한 존중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sup>448</sup> 표장의 표시적 기능의 오용은 표장 전반에 부여되는 존중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표장의 보호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ICRC는 영구적인 임무와 주관기관으로서의 일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세비아합의서에 따라 표장사용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처리할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수행

주관기관으로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ICRC는 다음을 실시한다.

- 표장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국제적십자운동 보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 체계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이 무장출동 상황에서 각자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일반적 틀이다.
- 필요 시 ICRC 대표단은 특정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한다. 이러한 지침은 파악된 특별한 문제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된 특수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수립된다. 이런 지침은 매우 구체적인 주제에 집중하여 상당히 세부적일 수도 있고,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 규칙을 단순히 반복할 수도 있다. 지침에 관해서는 ICRC의 일차 파트너인 ONS(또는 이 건에 관여할 수 있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모든 구성원)와 협의하고(ONS의 승인을 받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광범위하게 지침을 보급해야 한다. ONS는 배경에 대해, 표장사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ONS와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 ICRC는 표장사용 관련 제반문제에 대해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ICRC는 표장사용에 대해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거나 구성원이 보고한 오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재조치를 취한다.
- 관계당국(및 여타 개인이나 단체)이 표장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에게 필요한 항의나 요청을 제기할 준비를 한다.

448 본 연구의 “서론”과 제3부 참조.

## 주관기관으로서 ICRC 역할에 대한 기대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 보안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며 유지하고,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운동 범위 안에서 표장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ICRC는 오랜 경험과 모범사례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일정한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표장을 사용하는 방식과,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방식은 현장에서 벌이는 활동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관성과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ICRC는 이 점에 있어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다. 동시에 ICRC는 무력충돌 상황에 연루된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원에게 ICRC와 협의하고 ICRC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 “국제인도법 수호자”로서의 ICRC

ICRC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에 대한 존중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다.<sup>449</sup> “국제인도법 수호자”로서 ICRC는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표장의 오용을 방지하고 중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항의와 요청을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ICRC는 주관기관으로 활동할 때 표장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역할을 하는 한편, 국제적십자사의 각 구성원은 항상 표장을 적절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449 국제적십자운동장관 제5조(2)(다)에 따라 ICRC는 “국제인도법의 성실한 적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연구절문 47 참조.



## 제3부

### D. 특수한 사안

#### 49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표장이나 그 명칭에 대한 “모방”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53조와 제54조

AP III 제6조(1)

#### 권고사항

1. 모방은 표장이나 명칭에 대한 오용의 한 형태이다. 즉 그 형태 및/또는 색상이나 제묵으로 인해 표장이나 그 명칭과 혼동될 수 있는 표지 또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2. 특정한 표장이 모방에 해당하는지는 일반대중이 그 표식과 표장 및 명칭을 혼동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검증은 제네바협약과 표장(및/또는 명칭)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3. 특정한 조건에 입각해서 표장사용을 허가 받은 단체나 개인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표장의 모방을 사용할 수 없다.

#### 분석

#### 서론

표장(및/또는 명칭)의 오용은 1864년 제네바협약<sup>450</sup> 채택 이래 계속 존재했다. 표장이 최초로 공인된 즈음부터, 상표에서의 표장 사용을 포함한 오용은 문제를 초래하였고 국제법에 따라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했으나, 1864년 제네바협약에는 이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1906년 제네바협약의 제23조와 제27조는 표장 오용의 명백한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450 1864년 8월 22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상세한 설명은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 pp. 381~38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절문에서 표장의 오용(모방)은 또한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명칭의 오용(모방)을 가리킨다.

는 점을 반영하였다.<sup>451</sup> 하지만 이런 명백한 금지의 채택 이후 영리기업들은 발 빠르게 적십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십자라는 인상을 주는 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업은 이렇게 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도 표장에 부여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452</sup>

## 표장의 모방금지

위에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9년 제네바협약 제24조와 제28조는 원래 표장의 사용뿐 아니라 표장과 명칭의 모방에 해당하는 모든 표지 또는 명칭의 무단사용을 금지한다.<sup>453</sup> 이런 혁신은 GC I 제53조 제1, 2, 4단락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이나 명칭, 또는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 일자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스위스 연방의 국기의 배색을 반대로 작성한 문장의 채용에 의하여 동국에 대하여 주어지는 정의와 더불어 스위스의 문장 및 본협약의 특수 표장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고려하여 상표이전 또는 그 일부이전을 불문하고 상업상의 도덕에 반대되는 목적 또는 스위스인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서 사인, 단체 또는 상사가 스위스 연방의 문장 또는 이것을 모방한 기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본조 제1단락에 정하는 금지는, 제38조 제2단락에 말하는

451 1906년 7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1906년 제네바협약 제23조와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3조. 백색 바탕에 있는 적십자 표장과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가”라는 단어는 평시든 전시든 병원 및 관련 의료시설과 본 협약의 보호대상인 요원과 “물자”를 보호하거나 지정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27조. 현재 충분한 법령이 없는 가맹국(은 본 협약에서 권리를 부여한 자 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상표나 상업적 라벨을 이용하여 적십자나 제네바 십자가의 표장이나 명칭을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법부에게 이를 권장한다.

이런 표장이나 명칭 사용의 금지는 각 법령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늦어도 본 협약이 발표되고 5년 후에는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이 효력을 발휘한 다음에는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며 상표나 상업적 라벨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452 예를 들어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 pp. 385~386 참조.

453 1929년 7월 27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1929년 제네바협약 제24조와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4조. 백색 바탕에 있는 적십자 표장과 “적십자”나 “제네바 십자가”라는 단어는 평화시나 전시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단, 병원 및 관련 의료시설과 본 협약이 보호 대상인 요원과 물자를 보호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목적은 예외다.

(...)

제28조. 이 목적에 합당한 법령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계약국 정부는 항상 다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사법부에 제안해야 한다.

(a) 본 협약에 따라 사용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다른 개인이나 단체, 상사 또는 회사가 “적십자”나 “제네바 십자가” 뿐만 아니라 상업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모방에 해당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

(b) 연방 국기 색상을 전도로 채택한 이유로 스위스 정부에 경의를 표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 상사 또는 회사가 상표나 이러한 표지의 일부로 상도의에 어긋나는 표지를 위하여 또는 스위스 국민정서를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위스 연방의 문장이나 모방에 해당하는 표식을 사용하는 것.

(a)항의 표장 또는 “적십자”나 “제네바 십자가”라는 명칭의 모방에 해당하는 기장이나 명칭의 사용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b)항의 스위스 연방의 문장이나 모방에 해당하는 표식의 사용에 대한 금지는 각 법령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그리고 늦어도 본 협약의 발효 후 5년 후에는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발표일 이후에는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상표를 채택하는 것이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강조 추가)

표장 및 기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종전부터의 사용에 의하여 취득되어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up>454</sup> (강조 추가)

## “모방”에 대한 정의

본 연구의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방은 표장 오용의 한 형태다. 즉 기장이나 명칭의 사용이 그 형태 및/또는 색상이나 제목으로 인해 표장이나 그 명칭과 혼동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GC I 제54조에 따르면 국가당국은 특정 표식이 모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sup>455</sup>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제53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대중이 해당 표식이나 명칭을 표장이나 그 명칭과 혼동할 위험이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sup>456</sup>

표식에 관한 한 해당 표식의 형태와 색상은 표식과 흡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대중에게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적색 말이나 황색 십자기는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데, 말 디자인과 노란색은 표장의 디자인 및 적색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면 형태에 따라서 황색 십자거나 자색 초승달은 표장의 모방에 해당할 수 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제53조)는 적십자 표장 모방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어떤 모양이나 다른 십자가가 중첩된 [하나의] 적색 십자가, 윤곽이나 일부만 적색인 십자가, 다양한 색상의 배경, 절반은 적색이고 절반은 백색으로 된 십자가가 두 색상이 역전된 배경 위에 있는 형태, 원거리에서 십자가처럼 보이는 적색 별”<sup>457</sup>

다음 표지들은 또 다른 모방의 예를 보여준다.



앞서 말한 일반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위험에 대한 기준은 표장의 명칭에 대한 모방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bed cross”나 “rex crystal”은 IHL이 금지하는 표장 명칭의 모방에 해당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표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표장의 모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는 감안하지 않는다. 즉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과 표장의 모방은 불법이다.<sup>458</sup> 하지만 표식이 모방

454 적수정에 대한 모방 금지에 대해서는 AP III 제6조(1)에서 규정한다.

455 “국가당국”은 행정당국뿐 아니라 법원 또는 표장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기타 정부 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

45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 p. 385 참조.

457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 p. 385 참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대중을 현혹하거나 표장의 권위를 활용하려는 실제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제53조)의 관점에서, 이런 검증은 제네바협약과 표장(및/또는 명칭)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악의가 없다면 왜 적십자(또는 적신월이나 적수정)과 유사한 표식을 선택하는가? 전적으로 다른 상징으로 대체하는 것에 타당하게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 없다.”<sup>459</sup>

이는 어떤 표식이나 표지를 표장으로 잘못 볼 수 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다면, 해당 표식이나 표장은 모방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상표로 등록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조건에 따라 표장 사용을 승인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표장사용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표장의 모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458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과 표장의 모방의 구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 서론의 “일반원칙과 개념” 참조.

459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 p. 386. <제1제네바협약 해설서>, 제53조의 프랑스어판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표장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선의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강조한다. “[N]’y a-t-il aucune idée de fraude, aucune arrière-pensée de profiter de la notoriété de l’emblème?(표장의 평판을 이용하려는 사기성이나 숨은 동기가 있는가?)” <La Convention de Genève pour l’amélioration du sort des blessés et des malades dans les forces armées en champagne. Commentaire(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해설)>, 장 S 락테(편), 제네바, CICR, 1952, p. 434 참조.

## 50

## 인터넷 상에서의 표장과 명칭 오용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법령적 근거

GC I 제53조와 제54조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2조(3), 제3조(2), 제5조(2)(다)와 (사), 제6조(4)(차)

## 권고사항

1. 국가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과 협력하여 다른 형태의 오용(GC I 제53조와 제54조에서 규정함)에 대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표장(및 명칭)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할 책임이 있다.<sup>460</sup> 특히 표장(및 명칭)의 부정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 오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는 조치를 담당할 당국을 파악하여 NS에게 알린다.
  - 국가의 인터넷 규제당국은 표장이나 그 명칭을 오용하는 이메일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버파악을 지원하고 적절한 조치절차를 제안한다.
  - NS는 다른 형태의 표장(또는 명칭) 오용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단계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해당 웹사이트의 소유자나 제공자에게 연락하고, 표장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오용의 중단을 요청하며, 필요 시 해당 건을 국가 관계당국에 보고한다.<sup>461</sup>
  - NS에게는 CCTLD를 확보하여 타인의 개입 및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것을 권한다.
  - NS에게는 자국 인터넷 규제당국으로부터 도메인의 소유권과 관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입수하여 이를 익힐 것을 권한다.
3.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오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단 표장이나 명칭의 오용에 연루된 GTLD 웹사이트의 소유권이 판명되면, 관련 웹사이트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속한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 다음 위에서 설명한 CCTLD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개국 이상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당국뿐 아니라 관련 NS는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에도 통보해야 한다.
- 여러 국가가 관련된 GTLD 웹사이트에서 표장이나 명칭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심각한 경우(예: 여러 국가의 경찰 사이에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폴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4. 국제적십자사연맹과 ICRC는 인터넷 상에서 표장 및 그 명칭의 오용에 대처하려는 NS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 분석

### 서론

오늘날 인터넷은 수많은 기업에게 중요한 수단이며, 뉴스, 정보, 연예오락의 주공급원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인터넷에 자료를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온갖 상표권 위반사례가 양산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소지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전파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기업이나 집단의 로고, 상표, 또는 기타 식별표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도 비교적 쉽다. 때로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또는 독자를 호도하거나 심지어 기만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시하기 위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례의 발생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와 각국에서 웹을 규제하는 “도메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도메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민간부문 비영리회사인 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ICANN)를 통해 관리된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은 인터넷 주소(URL)가 “.com”, “.net” 등으로 끝나는 도메인이다.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은 각국 코드 끝난다(ch=스위스, eg=이집트 등). 일반적으로 CCTLD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자료는 해당 국가에서 게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표장 오용은 다른 어떤 매체의 경우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하여 신고하기가 쉽다. 사기행위를 찾아주는 상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일부 NS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오용 사례는 우연히 이를 발견한 NS 회원이나 사기를 당한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460 표장 오용의 방지 및 억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44 참조.

461 표장(또는 그 명칭)의 오용을 접했을 때 NS가 반드시 취해야 할 단계와 조치에 대해서는 연구절문 44 참조.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지만,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은 저자의 정체에 대한 단서뿐 아니라 그 전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 표장사용에 관한 규칙을 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규칙 실행에 따른 책임

제네바협약, 제1, 2 추가의정서, 심지어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도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던(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던) 시절에 채택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언급된 문서가 규정한 규칙이 인터넷 상에서의 표장 사용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GC I 제53조 1단락과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단체를 제외한 개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회사나 기업이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이나 명칭, 또는 그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 일자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 협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제53조에서 언급한 남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국가는 다른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에서 표장(및 명칭)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sup>462</sup> 따라서 국가는 IHL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야 하는 전반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이런 형태의 오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한 법령이나 기타 문서를 마련해야 한다.

NS의 경우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에서 공인된 식별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 정부와 협력해야” 할 임무(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에서 규정함)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장 오용에 관해서도 변함이 없다.<sup>463</sup> 따라서 NS는 “기존의” 표장 오용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공공당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NS의 책임과 의무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장(또는 그 명칭) 오용에 분명히 적용이 되며, 현재 모든 국가가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표장과 그 명칭에 수반되는 보호는 보편적임을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ICRC와 국제적십자자연맹은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당국과 NS가 이런 오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야 한다.<sup>464</sup> ICRC와 국제적십

462 표장 오용의 방지와 억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4와 45 참조.

463 표장 오용의 방지와 억제에 있어서 NS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4 참조.

464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5조(2)(c)와 (g) 참조. 표장 오용의 방지와 억제에 있어서 ICRC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7 참

자사연맹 모두 인터넷 상에서의 표장과 그 명칭 오용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NS와 국가당국에게 자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표장이나 그 명칭의 오용을 중단시키는 과정이 복잡하다. 오용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이런 인터넷의 고유한 속성을 감안해야 한다.

##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표장과 그 명칭의 오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CCTLD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오용

어떤 언어든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수정”의 명칭이나 표장의 오용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마다,<sup>465</sup> 인터넷 상에서 즉각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국가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

- 국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치를 담당할 당국을 파악해야 한다. NS와 정부 관계자에게 관계당국을 안내하여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의 사기행위는 도메인명이 아닌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행이다. 국가의 인터넷 규제당국은 이메일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버 파악을 지원하고 적절한 조치절차를 제안 한다.

또한 A국에서 발생하여 B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오용(예: B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오용)도 금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금지는 A국 당국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

표장이나 그 명칭의 오용이 CCTLD 웹사이트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NS는 관련국의 인쇄물에서 오용이 발생했을 때처럼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용에 대한 처리방식은 도메인과 인터넷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표장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NS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자국 인터넷 규제당국으로부터 도메인의 소유권과 관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입수 하여 이를 익힐 것을 권한다. 이것은 무단 남용된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전략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조. 국제적십자운동장관 제6조(4)(차)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기능 중에는 “국제인도법의 홍보와 개발에 있어서 ICRC를 지원할” 책임도 포함된다.

465 사기의 표적이 “주제” NS가 아닌 다른 국가의 NS나 ICRC 또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인 경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 취해야만 한다.

- 다른 형태의 표장 오용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단계와 절차를 따른다. 즉 해당 웹사이트 소유자나 제공자에게 연락하고, 표장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오용의 중단을 요청하며, 필요 시 해당 건을 국가 관계당국에 보고한다.<sup>466</sup>
- 오용에 대처하는 것 외에도 선제적 조치를 고려한다. 즉 NS는 CCTLD를 따로 확보하여 타인의 개입 및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현재는 보편적인 모범사례임을 기억해야 한다.

### GTLD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오용

GTLD 웹사이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오용을 처리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도메인 소유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 그 정보에서 시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GTLD는 CCTLD(.us)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비교적 드문 미국에 본부를 둘 가능성이 있다.

오용 사례를 적발했을 경우 취해야 할 첫 단계는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실린 GTLD 웹사이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해당 웹페이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련된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2개국 이상이 관련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계당국은 불법자료를 되도록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당해 NS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표장이나 그 명칭의 오용을 관할당국에 신고하고 이러한 오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NS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S도 발생한 오용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에 통지해야 한다. 사례가 복잡할 경우, 특히 여러 국가가 관련된 사례라면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TLD 웹사이트가 국제적십자운동 명칭과 표장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경찰의 조치가 필요한 오용에 연루되었거나 그런 자료가 게시된 사례였다. 여러 국가 사이에서 경찰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폴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466 표장(또는 명칭)의 오용을 접했을 때 NS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6 참조.

## 51

표장 오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용의 방지/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표장보호 캠페인”의 교훈은?

## 법령적 근거

국제적십자운동정관 제3조(2), 제5조(2)(바)와 (4)(가)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대한 관련 국내법

## 권고사항

1. 표장오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NS는 표장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임무에 따라 표장의 존중과 보호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2. 표장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NS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캠페인 기간 중에 최대한 이런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특히 구심점이나 집단에게 캠페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표장 오용을 근절하기 위한 개인과 단체의 헌신적인 참여의식과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 모든 관계자는 표장의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그 체계의 장단점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캠페인의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 NS가 캠페인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일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표장사용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 NS는 특히 관계부처(들)의 약정서 형태로 주요 정부(국가 및 지역 차원)와 기타 이해당사자(의학협회 등)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한다. 또한 NS는 규제기관을 설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캠페인을 지지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 NS 자원봉사자 인맥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 NS는 지역사회 내 입지와 신용을 이용하여 표장을 오용하는 자를 모두 설득하여 오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NS는 캠페인을 활용하여 이미지와 정체성을 제고해야 한다.

- NS는 또한 기존의 지식을 심분 활용하여야 한다. 즉 캠페인 출범은 표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표장을 오용하는 이들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캠페인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호적인 방식으로 실시하여 로고를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은 이들이 새로운 로고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기존에 표장을 오용한 이들이 이룬 성과를 인정(및 이에 대해 보상)한다.
  - NS는 필요 시 다른 국제적십자운동 파트너를 참여시키고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적십자운동의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ICRC 대표단은 역량과 자원이 허락하는 한 표장보호 캠페인의 기획이나 실행을 도울 준비가 되어야 한다.
3. NS는 앞서 말한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오용의 근본 원인에 대한 평가, 적절한 예산, 모든 관계자들에게 분명한 역할과 책임 배정, 표장을 오용하는 자들과 일반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적절한 전략(예: 편지, 직접방문 캠페인 등), 명확한 시간계획, 필요한 자료 제작, “오용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각오, 실천계획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 장기적인 유지 전략 등이 그것이다.

## 분석

### 서론

NS가 IHL을 보급하고 표장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sup>467</sup>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표장오용 관행이 고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표장의 실제 의미와 표장사용 조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표장을 오용하는 개인과 단체의 범위는 매우 넓다(광고기관, 영화제작자, 슈퍼마켓 체인, 다양한 규모와 영역의 영리기업 등). 하지만 광범위한 오용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보건 및 의약분야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 직종(약사, 의사, 약국, 준의료집단이나 조직 등)에 있다.

NS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오용 패턴을 줄이고, 억제하며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표장의 오용을 최소화하고 그 보호적 및 표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표장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사례연구<sup>468</sup>에서 도출한 결론을 기반으로 다음 내용은 “표장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아래 제시한 조건 중 일부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캠페인이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캠페인 기획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성공적인 “표장보호 캠페인”의 조건

캠페인의 성공에 기여하는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표장오용을 근절하려는 개인과 조직의 의지

조직의 의지는 공동목표를 성취하려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개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종합적인 표장보호 캠페인 수행에 대한 몇몇 핵심 지도급 인사들의 열정을 통해 NS가 조직차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주로 인식제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천에 대한 촉구”가 없이 산발적이면서 무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보급교육에서 표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배웠지만 표장 오용에 대해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NS 자원봉사자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지나치게 과격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NS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NS 지도부가 (가능하면 ICRC의 지원을 받아) 이 점을 인식하여 좀 더 집중적이면서 포괄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NS 지도부의 각 계층에서 표장보호 캠페인에 대한 주인의식과 열의를 북돋워야 한다. 예를 들어 NS 총회에서는 캠페인의 방향과 확실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결의문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NS 운영진은 신중한 계획과 충분한 자금이 뒷받침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캠페인을 지원해야 한다.

집단이나 개인을 캠페인을 책임지는 위치, 즉 “구심점”에 배치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심점”을 선정할 때는 법적 배경 등과 같이 이런 임무에 적절한 자격요건 및 열정, 상상력, 추진력, 캠페인의 목표에 대한 헌신 등과 같은 자질을 고려해야 한다.<sup>469</sup> “구심점”은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캠페인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직원과 자원봉사자 전원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NS 내에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구심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468 이 절문은 2007년부터 레슬리 리치가 작성한 다음 두 가지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네팔 적십자사: 표장보호 캠페인 검토>, 네팔 적십자사 및 ICRC와 공동 연구, 2007년 2월 및 <방글라데시 적십자사: 표장보호 캠페인 검토>, 방글라데시 적십자사 및 ICRC와 공동 연구, 2007년 3월.

이 절문의 초안 작성 시 고려한 다른 표장보호 캠페인에는 특히 1992년 9월과 1993년 3월 사이에 우간다에서 실시된 캠페인도 포함된다.

469 예를 들어 네팔의 경우에는 정보보급부서의 장이 “구심점”으로 임명되었다. 레슬리 리치, <네팔 적십자사: 표장보호 캠페인 검토>, 네팔 적십자사 및 ICRC와 공동 연구, 2007년 2월, p. 8 참조.

NS 본부는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단계별 실행계획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sup>470</sup> 여기에는 의사결정과 캠페인 진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표장보호를 위한 법적 틀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대해 제대로 수립하여 실행한 법령은 표장보호 캠페인 성공의 열쇠다.<sup>471</sup> 표장사용 권한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및 오용에 대한 처벌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법령이 있으면 강력한 방지효과를 볼 수 있으며 오용 중단을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네팔의 경우에는 표장보호법이나, 표장보호 규정을 포함한 제네바협약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팔 적십자사가 표장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지해야 한다. 네팔 적십자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주된 요인은 보건부 및 전문규제단체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들이 쓴 편지였다. 이 사례에서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설득”을 강조하는 동시에, 무력충돌 시에 진정으로 중립적이고 공평하며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더 많은 능력을 갖춘 NS가 있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적절한 법령 및 성명이나 규제를 통한 당국의 강력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캠페인의 성공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sup>472</sup>

N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서 표장의 사용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법적 체계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측면뿐 아니라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 1991년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에서 규정한 표장사용에 대한 규칙이 포함된다.

### 표장사용에 대한 내부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항상 표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는 NS가 표장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할 때 훨씬 중요해진다.

NS의 일원이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표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NS의 노력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내부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NS 요원(직원, 자원봉사자, 일원의 복장과 신원파악수단)과 그 자산(인쇄물, 구급차, 시판제품 등)에 의한 식별 및 보호표장 사용에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47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S 전반에 걸쳐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NS 내에서 표장사용에 대한 제반 문제는 중앙본부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471 이러한 법령을 채택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그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질문 45 참조.

472 세계 각지에서 법과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사람 및 법과 권위 간의 관계 역시 법적인 틀이 표장 캠페인의 성공에서 갖는 중요성에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지

캠페인 초기에 지도자와 최고위층의 유력한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요소다. 이런 점에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설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캠페인 전이나 도중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급적 초기에 자리 잡아야 한다.

사전에 핵심 정부부처와 규제기구/단체의 지원을 확보하면 캠페인의 신뢰성과 권위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어 '대민' 관련 부분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규제기구가 산하기관에 서한을 통해 표장 사용을 중단하고 기관 자체의 로고를 사용할 것을 일찍 권장할수록 캠페인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 NS의 직접방문 캠페인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표장을 오용하는 자들과 처음 접촉하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적절한 부처의 지원 역시 캠페인의 성공을 좌우한다. NS(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는 주요 정부관계자와 돈독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관리들이 사전에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네팔의 예를 살펴보자. 보건부는 신문에 공익광고를 내고 관계기관 전체에 서한을 보내 표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유도하였고, 표장을 무단사용한 차량의 구내 진입을 금지하였다.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브로셔는 관계기관의 지지를 부각시켰다. 인터뷰를 했던 네팔 적십자 지사들은 한결같이 브로셔에 게재된 보건부의 성명문이 표장 오용자들로 하여금 관행을 고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문은 약국, 의사, 구급의료대원/구급차 서비스와 연결된 다양한 의료협회의 열의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sup>473</sup>

지역 또는 지방 관리는 캠페인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가령 이들은 표장 오용자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나 유력한 인사들이 처음 지역/지방 단위로 모임을 가질 때 참석하여 지지 발언을 하거나 때로는 변경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캠페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 튼튼하고 폭넓은 NS 네트워크

표장오용이 보편적이고 고질적이며 광범위하며 국가 전역에 걸쳐 오지에까지 확산된 경우라면, 열성적인 자원봉사자와 직원의 다양하고도 폭넓은 인맥이 존재하는 것이 캠페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NS는 과감하게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표장이 오용되는 전 지역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네팔에서 실시한 표장보호 캠페인을 통해 NS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각지, 심지어

473 레슬리 리치, <네팔 적십자사: 표장보호 캠페인 검토>, 네팔 적십자사 및 ICRC와 공동 연구, 2007년 2월, p. 9 참조.

오지에서도 모집되어 교육을 받았으며, 가가호호 방문하는 캠페인에 큰 도움이 되었다.<sup>474</sup>

### 지역사회 안에서 NS의 신뢰도

지역사회에서 NS의 입지가 튼튼할수록 표장을 오용하는 자들에게 표장보호 캠페인 지지를 호소하기가 쉬울 것이다.

NS가 국가 전체와 모든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졌다면 당연히 신뢰도에 도움이 된다. 캠페인의 신뢰도에도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NS와 그 서비스가 국민에게 친숙하다면 캠페인 참여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NS는 자신의 이미지, 임무, 활동을 캠페인 기획에 접목해야 한다. 이는 NS의 정체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핵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급의 역사

지방 또는 지역 관리와 의료계를 포함한 핵심 이해관계자 및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은 조직 내외에서의 캠페인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아마도 이러한 관리와 표장 오용자들은 이미 표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알고 있겠지만 “행동을 촉구”하지 않거나 행동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행동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캠페인 출범이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NS는 이들이 이미 적절한 표장사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NS의 일원이 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원이 되고 나면 캠페인의 목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협조적 방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S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캠페인 중에 표장을 오용하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캠페인의 전반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팔의 경우에서처럼 표장을 오용하는 자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우호적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다가가야 한다. 결국 목표는 더 이상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75</sup>

협조적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 로고를 변경해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로고를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474 레슬리 리치, <네팔 적십자사: 표장보호 캠페인 검토>, 네팔 적십자사 및 ICRC와 공동 연구, 2007년 2월, p. 10 참조.

475 레슬리 리치, <네팔 적십자사: 표장보호 캠페인 검토>, 네팔 적십자사 및 ICRC와 공동 연구, 2007년 2월, pp. 7-8, 15-16, 24-25 참조.

- 적십자/적신월 위에 페인트를 도색할 때 요원을 지원하며, 새로운 로고의 스티커를 제공한다.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새로운 로고를 홍보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의료계(또는 다른 집단)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 NS, 주요 관계자(정부 및 규제기구) 그리고 기존에 표장을 오용했던 사람들이 이룬 성과를 인식하고 인정한다.
  - NS 안팎에서 성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표장 오용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킨다.
  - 기존에 표장을 오용한 사람들에게 NS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표장보호 캠페인”에서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접근법을 사용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NS와 국제적십자운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원들의 지원

ICRC는 몇몇 NS가 “표장보호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도움을 주었다.<sup>476</sup> 이러한 캠페인과 긍정적인 결과는 결과적으로 ICRC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운동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이 허락하는 한 ICRC 대표단은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자 하는 ONS를 지원하여 특히 기존의 문제와 필요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실천계획을 설계하는 일에 조력할 것이다.

ICRC 대표단 외에 NS는 캠페인이 시작될 국가에 있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다양한 구성원(국제적십자자연맹과 PNS)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NS는 이들에게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캠페인의 성공을 위한 기여 방안(자문이나 기금조성 등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을 논의해야 한다.

### 상황평가 및 전략과 실천계획 수립

캠페인은 신중하게 기획해야 한다. 표장 오용자와 대중의 관심을 끌고, 파악된 여러 오용 형태에 대처하며, 캠페인 기금을 모금하고, 적절한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천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 상황을 평가하고 환경을 이해하며 분석한다. 특히 표장을 오용하는 자와 그 이유를 파악

476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우간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다(범위와 문제 분석). 오용의 근본원인과 표장 오용자(의료계, 간판제작자, 제조업체, 언론, 대사관/후원기관 등)에 대응한다.

-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명확한 역할, 책임, 전략/활동과 함께 대상(표장 오용자)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한다.
- 적절한 전략을 다채롭게 선택한다. 설명회, 언론을 통한 캠페인, 직접방문 캠페인, 서한 발송, 특정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인정 등이 그 전략이 될 수 있다.
- 정확한 캠페인 일정을 수립한다.
- NS 내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적절한 표장 사용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 표장을 오용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뿐 아니라 일반대중 역시 계획에 포함시켜 이들로 하여금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획은 약국, 구급차, 의사/의원, 병원 등을 위한 대안적 표장도 포함해야 한다.
- 필요한 마케팅 자료를 작성, 인쇄, 배포하고, 언론 캠페인 자료를 개발하며, 청소년을 비롯하여 구역/지역 요원을 훈련하고, 기금을 확보한다.
- 해당 연도 중에 표장 오용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예: NS 소식지와 규제기구 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기사를 실는다. NS 고위층의 모든 주요 연설에, 그리고 필요 시 모든 보도자료에 슬로건으로 이 주제를 포함시킨다. 이 주제를 모든 연설과 연례보고서 등의 외부 문서에서 언급한다. 모든 NS 프로그램뿐 아니라 정보보급활동에서 이 주제를 강조한다. 세계적집사의 날과 관련해서 이 주제에 대한 기념행사를 주최한다. 표장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주간을 계획한다.)
-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필요 시 계획을 수정한다.
- 앞으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환경: 무력충돌의 존재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표장보호 캠페인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네팔의 경우처럼). 물론 무력충돌이 이러한 캠페인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무력충돌 상황이 NS 내부와 외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NS가 국가 및 지사 차원에서 성공적인 캠페인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 강력한 계기가 된다. 무력충돌 상황과 이에 수

반되는 불행한 결과 역시 표장을 오용하는 사람, 언론, 관계당국에게 이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NS가 무력충돌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려고 할 때 표장을 오용하는 사람 때문에 난관이 발생하면 NS 지도부가 표장보호 캠페인의 필요성을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으며 NS는 캠페인 기간 중에 지역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NS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안전과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만연한 표장 오용으로 인해 NS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체성과 인식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권한다. 네팔의 사례에서처럼,<sup>477</sup> 이런 평가는 ICRC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무력충돌의 존재는 정부당국에게 성공적인 표장보호 캠페인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력충돌은 표장 오용으로 인해 군 의무대가 겪게 될 위험, 표장의 권위에 대한 일반대중과 전투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분명히 무력충돌 상황은 표장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장을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NS가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필요한 이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표장의 오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후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477 레슬리 리치, <네팔 적십자사: 표장보호 캠페인 검토>, 네팔 적십자사 및 ICRC와 공동 연구, 2007년 2월, p. 7 참조.

##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쟁과 기타 폭력 상황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CRC는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의 보급 및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ICRC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모체이다. ICRC는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상황에서 국제적십자 운동의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 번역발간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www.redcross.or.kr/ihl](http://www.redcross.or.kr/ihl))
- 초판발행 : 2013. 12. 1 (국문본)



ICRC

번역발간 : **대한적십자사**



비매품

